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016-11호 2016년 3월 10일 (목)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목 차

◆ 조 례

전라남도 조례 제4017호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18호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19호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20호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21호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22호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23호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24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25호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26호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27호	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28호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29호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30호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31호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32호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33호	전라남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34호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35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36호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37호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38호	전라남도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

◆ 훈 령

전라남도 훈령 제1353호	전라남도 남도예술은행 운영규정 폐지규정
----------------	-----------------------

◆ 고 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65호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71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72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73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74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75호	수산물위판장 지정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76호	수산물위판장 변경지정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77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78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공 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22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230호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234호	발굴 매장문화재 소유자 유·무 확인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244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 공고

◆ 시군행정

목포시 고시 제2016-31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8호)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목포시 공고 제2016-215호	목포 도시계획시설(목포해양대학교/창고)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여수시 공고 제2016-416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 열람 공고
순천시 고시 제2016-30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순천시 공고 제2016-331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나주시 고시 제2016-23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나주시 고시 제2016-24호	나주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나주시 고시 제2016-25호	나주 도시계획시설(시장,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나주시 고시 제2016-26호	나주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나주시 고시 제2016-28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나주시 공고 제2016-262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서류 열람 공고
구례군 고시 제2016-6호	구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화순군 고시 제2016-26호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장흥군 고시 제2016-18호	장흥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해남군 고시 제2016-43호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소2-27, 소2-26, 소3-13, 소1-50, 소2-2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무안군 고시 제2016-26호	무안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무안군 공고 제2016-162호	무안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무안군 공고 제2016-172호	무안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장성군 고시 제2016-11호	장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도군 고시 제2016-13호	군내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2. 2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17호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일자리 창출과” 를 “전라남도민의 일자리 창출 및” 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를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및 취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을 삭제하고, “29세” 를 “39세” 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를 “취약계층이란” 으로, “말한다” 를 “말하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창출계획” 을 “연도별 일자리 창출 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네트워크 및 인프라” 를 “인프라 및 연계망”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정보 불일치 해소
4. 청년 직업능력 개발과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5. 특성화 고등학교·대학교·기업 간 일자리 창출 연계
6. 주력산업, 특화산업 일자리 창출 연계
7. 취약계층 일자리 안전망 구축
8. 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제5조의 제목 “(일자리 창출 사업)” 을 “(경비의 지원)” 으로 하고,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추진” 을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업훈련, 인력양성 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지원
2.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일자리 연계망 지원
3. 취업지원서비스 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지원
4. 기업현장 일자리 불일치 해소 지원
5. 특성화 고등학교·대학교·기업 연계 취업 지원
6. 인력양성기관 교육환경 및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
7. 중소기업 청년인턴, 전문인력 및 근속장려금 지원
8. 지역·특화산업 관련 맞춤형 일자리 지원
9. 투자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육성 및 지원
10.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체사업 일자리 육성 및 지원
11.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12. 창업 육성체계 구축 및 창업 관련 기업·기관·단체 지원
13. 창업 관련 기술지주회사 지원
1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지원

제6조의 제목 “(취업지원 사업)” 을 “(일자리 영향평가)”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일자리창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일자리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중전의 제8조)제5항 중 “두고, 간사는” 을 “두며, 간사는 도 일자리정책실”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수당” 을 “수당,”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 기능)” 을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도지사는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2. 2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18호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사항
2.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의 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의 육성과 취업,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 사항
5. 법령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공공기관 등에 위임한 사항
6. 지역인재 채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방대학 총장
 2.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3. 기업체, 연구원, 공공기관의 장
 4. 전라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5.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직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④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라남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원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협의회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협의·조정,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대학 특성화 등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 사업
2. 취업능력 개발 등 지역인재 육성 사업
3.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4.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2조(사업의 공동추진)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문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연구개발 업무
-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와 관련된 성별구분통계 조사 업무
- 3.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검사·감독) ① 도지사는 지방대학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사·감독할 수 있다.

② 경비보조 및 지원, 사업의 공동추진,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2. 2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19호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 중 “사용료는”을 “사용료와 실내사격장 전자표적 사용료는”으로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의 명칭·위치 등 (제3조, 제4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비 고
전라남도 국제사격장	나주시 사격장길 82	공기총, 화약총, 클레이사격장, 선수합숙소	
전라남도 사이클경기장	나주시 건재로 130-13	벨로드롬경기장, 선수합숙소	
전라남도 종합체육관	나주시 건재로 130-13	펜싱, 체조, 레슬링, 훈련장	
전라남도 체육회관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41	도 체육·가맹 경기단체 사무실, 다목적강당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제1항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전라남도 사이클경기장	주 간	30,000	40,000	40,000	50,000	
전라남도 국제사격장	스키트(주간)	30,000	40,000	40,000	50,000	
	트랩 아메리칸(주간)	20,000	30,000	30,000	40,000	
	실 내	공기총	10,000	20,000	20,000	30,000
		화약총	20,000	30,000	30,000	40,000
전라남도 종합체육관	주 간	20,000	30,000	60,000	70,000	
	야 간	30,000	45,000	90,000	105,000	

※ 1일 사용 기준 : 8시간

※ 조기 시간시부터 사용시는 : 5,000원 추가 징수

2. 일시사용료

○ 전라남도 사이클경기장·종합체육관·체육회관

(단위 : 원)

구분	사용구분	기준	1인당 사용료						비 고
			개 인			단 체			
			일반	학생 군인	어린이	일반	학생 군인	어린이	
전라남도 사이클경기장	경기장	1회 2시간	1,000	700	500	700	500	300	※ 단체는 동일 소속팀 10명 이상
전라남도 종합체육관	체조, 레슬링, 펜싱	1회 2시간	1,000	700	500	700	500	300	
전라남도 체육회관	실내종목	1회 4시간	3,000	2,000	1,500	2,000	1,500	700	

○ 전라남도 국제사격장

① 클레이사격장(트랩, 스킵트, 아메리칸트랩)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금액	비 고
개 인	1라운드	22,000	
단 체	1라운드	18,000	
선 수	1라운드	7,000	연습 사용
	1라운드	6,000	대회 사용

• 개인 및 단체는 실탄 25발, 접시 25장, 조끼대여 포함 금액
 • 단체는 동일소속팀 10명 이상
 • 선수는 접시만 제공하는 금액이며,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② 실내사격장 전자표적 사용료

(단위 : 원)

종 목	전자표적사용료	사대사용료				비고		
		개인		선수단체				
		2시간	4시간	2시간	4시간			
10m	공기소총	1,500	3,000	1,300	2,000	1,000	1,500	
	공기권총	1,800	3,600	1,300	2,000	1,000	1,500	
10m	런닝타겟	4,000	8,000	2,000	2,500	1,500	1,800	
25m	권총, 스탠다드 센터파이어	5,000	10,000	2,000	2,500	1,500	1,800	
	속 사 (0.5조 5사대)	8,000	16,000	3,500	6,000	2,500	4,000	
50m	소총, 권총	5,000	10,000	2,000	2,500	1,500	1,800	

• 단체는 동일소속팀 10명 이상으로 한다.
 • 선수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 전자표적사용시 전자표적사용료와 사대사용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단,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소속 선수는 사대사용료를 면제한다.)
 • 전자표적 소모품 구입 시세(환율)에 따라 사용료를 가감할 수 있다.

3. 방송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TV		라디오		비 고
			국 제	국 내	국 제	국 내	
중 계 방 송	체육 경기	전라남도 종합체육관 전라남도 국제사격장 전라남도 사이클경기장 전라남도 체육회관	30,000	15,000	20,000	1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체육외 행사		40,000	20,000	20,000	10,000	
녹화 및 촬영	녹화 또는 녹음		중계방송액의 50/100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 중계방송과 동일				

4. 상업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1. 시설을 이용한 영화 등의 촬영 행위	주 간	20,000
	야 간	30,000
2. 애드벌룬 등의 계양에 의한 광고 행위	1일 1개	2,000
3. 프로그램 등의 판매 행위		판매총액×20/100
4. 기타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	대형(30미터×1.3미터)미만 1년간	300,000
	중형(20미터×1.3미터)미만 1년간	300,000
	소형(10미터×1.3미터)미만 1년간	100,000
	플래카드, 현수막 제곱미터당 (1일 기준)	1,000

5.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방송시설	확성기 1조 1일 1회	5,000	
	마이크(개당) 1일 1회	5,000	
	전부사용(앰프포함)	50,000	
전 기	킬로와트당	관허요금	
전 광 관	1일 1회	10,000+전기사용료	
식당/매점			별도 계약에 의함
기타시설물			도지사가 따로 정함

6.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일 반	학생·군인	어린이	
입장료	1인1회	400	200	100	단체는 기준액의 50% 징수

※ 단체는 동일소속팀 10명 이상

7. 사격장의 숙소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일 반	1일1인당	10,000	
학생, 군인, 어린이	1일1인당	5,000	
• 냉난방 사용료는 사용자가 실비부담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2. 2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20호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전라남도통합방위협의회와 전라남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전라남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2. 을중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3.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5.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 이라 한다) 선정 또는 해제
6. 통제구역 설정
7.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34조 규정 사항
8.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 규정 사항

9.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의회의장
2. 제31보병사단장
3. 전라남도교육감
4.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5. 국가정보원광주지부장
6.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7. 국군제610기무부대장
8. 제11공수특전여단장
9. 해군제3함대사령관
10. 공군제1전투비행단장
11.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12. 광주지방교정청장
13. 광주지방보훈청장
14.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15. 한국전력공사전남본부장
16. 케이티(KT)전남본부장
17. 광주전남재향군인회장
18. 전라남도소방본부장
19.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협의회총괄 간사: 전라남도통합방위협의회 담당 실·국장
2. 심리전담당 간사: 전라남도 대변인
3.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1989부대 작전참모
4.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광주지부 대공수사처장
5. 경찰담당 간사: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6. 예비군담당 간사: 제31보병사단 동원참모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단, 통합방위사태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2(협의회) (통합·운영)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민방위협의회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전라남도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하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간부급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전라남도지사 소속하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본부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6.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종합상황실은 실장과 15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⑤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실장과 6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육군 제1989부대 교훈참모가 된다.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인 내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⑦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한 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간부급으로 한다.
- ⑧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 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2. 2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21호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국제경제협력 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투자가“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일자리정책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또는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3.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는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⑧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협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①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전라남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상담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5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입지 지원)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

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를 신축하는 경우
2.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 분할납부, 임대할 때의 임대료 감면율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컨설팅비용 지원) 도지사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외국인투자의 지원대상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투자기업의 총 지원금액은 해당 투자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은 해당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의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6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① 도지사는 도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과 관광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에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기업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때
2.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제조업체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토지·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42조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8조(수도권기업 등의 도내 이전비 지원) 도지사는 수도권 기업 등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게 도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지원한도) 이 조례에 의하여 도내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기업당 50억원 이내로 한다.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제22조(시·군의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일부를 해당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시·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

담비율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등) ① 도내 투자기업이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지원을 요청할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의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또는 가동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내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원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투자기업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내 투자기업의 사기 양양을 위하여 해당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해당 기업의 날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투자 사업장내 공장 신·증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일 또는 창립기념일
3. 지역사회 공헌 활동일
4. 대규모 투자 등 기업 홍보가 필요한 날
5. 그 밖에 해당 기업이 지정 신청하는 날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
3. 공장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을 하지 않은 경우
4.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뚜렷하게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 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 또는 휴·폐업 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6.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 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8.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도내 투자기업은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는 지원한 보조금 중 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처분할 때에는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도지사에게 임대료를 지원받은 도내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한 토지를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가운데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도내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 및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 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과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환수해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5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도지사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 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무처리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라남도투자유치협의회 및

투자유치자문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2. 2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22호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하고 남도국악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하여 전라남도립국악단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임단원“이란 전라남도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상근하며 상시공연을 연구·지도·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이란 국악단 활동 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습에 참가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개전형“이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실기와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전형을 말한다.
4. “특별전형“이란 서류심사로 실시하는 전형을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과 실기를 병행할 수 있다.
5. “정기공연“이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연을 말한다.
6. “수시공연“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 행사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승인하여 시행하는 정기공연 외의 모든 공연을 말한다.

제2장 도립국악단 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① 국악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20명 이내로 비상임 단원을 둘 수 있다.

- ② 국악단에 단장 소속으로 예술감독 1명, 부감독 1명, 부별 수석단원 1명과 부수석 단원 1명, 사무장 1명을 둔다.
- ③ 단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예술감독은 공개전형을 거쳐 국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④ 예술감독을 제외한 단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⑤ 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연단에는 창악부, 기악부, 사물부, 무용부를 두고, 사무 관리팀에는 사무장, 일반사무담당, 홍보기획·마케팅담당, 악기의상담당, 음향조명담당을 두며, 분야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임무) ① 단장은 도지사의 지휘를 받아 국악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예술감독은 단장을 보좌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수석단원은 예술감독의 지휘를 받아 소속단원을 교육 및 지도한다.
- ④ 사무장은 국악단의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업무) 국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도국악의 보존 및 육성
2. 남도국악에 대한 연구 및 교육
3. 도민을 위한 국악의 공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각종 공연

제6조(단원 모집) ① 단원의 모집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전형에 따른다.

- ② 특별전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모집한다.
 1.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2. 전국 규모의 예술경연대회에서 부문별 1등으로 입상한 사람
- ③ 실기전형을 위해 각 부별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형위원을 위촉하되, 외부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며, 면접전형위원은 예술감독과 문화예술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실기전형을 면제할 수 있다.
- ④ 전형위원은 국악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국악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두루 갖춘 유능한 사람을 단장이 위촉한다.

제7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의 위촉 나이는 18세 이상 58세 이하로 한다.

- ②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재위촉할 수 있다.
- ③ 사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 ④ 수석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 ⑤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적용제외) 예술감독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결격자는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단원해촉) ①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를 통하여,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악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사람
 2.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3. 단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4. 국악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6. 그 밖에 신체나 정신장애 등으로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②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개인사정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3. 자연재해 또는 전시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었을 때

제11조(단원의 복무) ① 단원은 국악인으로서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 맡은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단원은 단장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단원은 단장의 승낙 없이는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연) ① 국악단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수시공연에 따른 차량, 단원숙식 등 소요경비는 공연을 요청한 기관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 및 초청료 징수) ① 국악단의 관람료는 일반인 기준 최대 1만원, 초청료는 최대 6백만원의 범위에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어린이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
- ② 국악단의 유료공연 시 관람권을 발행하되 10퍼센트 범위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관람권은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판매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

는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관람권 판매 수입금과 공연료는 국악단 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⑤ 다른 기관단체에서 국악단을 초청하여 공연하려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연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① 국악단은 국악의 진흥과 국악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도민에 대한 국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일정, 장소, 교육과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술감독이 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교육을 받는 사람은 교육실시에 따른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단원 보수 및 여비)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여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예산) 단원의 보수 등 국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전라남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악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국악계, 문화예술계, 관련 학계 등에서 국악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 임무) 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단 업무 기획과 운영에 대한 자문
2. 국악단의 공연과 교육활동 등에 대한 자문
3. 단원의 해촉 요구
4. 국악단원 기량심사에 관한 사항
5. 국악단육성기금 사용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악단 운영 등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어린이국악단 설치

제20조(어린이국악단 설치) 남도국악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의 인재 발

굴·육성을 위하여 국악단에 전라남도어린이국악단(이하 “어린이국악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21조(어린이국악단 구성) ① 어린이국악단의 단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어린이국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객원 예술감독을 둘 수 있다.

② 객원 예술감독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객원 예술감독과 단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2조(어린이국악단원 및 명예단원 선발·운영) ① 어린이국악단원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 및 특별전형을 거쳐 단장이 선발하되, 60명 이내로 한다.

② 어린이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를 둘 수 있다.

③ 어린이국악단원은 어린이국악단의 정기 및 수시 연수지도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기량연마를 꾀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어린이국악단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어린이국악단 명예단원으로 재위촉하여 필요하면 공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어린이국악단 공연) 어린이국악단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고, 국악단 상설 공연 시 공연할 수 있다.

제24조(직무수행) ① 단장은 어린이국악단을 대표하고, 어린이국악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객원 예술감독은 공연기획 등 공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소속 단원을 지도한다.

제25조(지도교사) ① 어린이국악단원의 지도를 위하여 기량이 우수한 도립국악단원 중에서 지도교사를 위촉한다. 다만, 작품의 성격에 따라 객원 예술감독이 추천한 전문 예술인을 지도교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도교사는 단원의 실기지도와 공연활동 교육을 담당한다.

제26조(객원 예술감독·단원의 해촉) 객원 예술감독과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어린이국악단 설치·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국악단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제27조(수당의 지급) 객원 예술감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도교사의 경우 단원의 지도에 따른 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8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단장의 사무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원의 정원 책정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술감독의 모집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의 보수 지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형심사 위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원의 구분 및 정원

구분		정원	비고	
총 계		100		
국악 단원	계	80		
	단장	1		
	예술감독	1		
	공연단	소 계	73	
		부감독	(1)	상임단원중 선임
		창악부	21	
		기악부	22	
		사물부	12	
		무용부	18	
	사무 관리팀	소 계	5	
		사무장	1	
		일반사무담당 (총무회계)	1	
		홍보기획 마케팅담당	1	
		약기의상담당	1	
		음향조명담당	1	
비상임 단원		20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2. 2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23호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관광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사업

- 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활동의 지원
- 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의 지원
- 라. 문화예술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 마. 지역문화예술·유산의 발굴·보존 및 재현·전승 활동
- 바. 예술단의 설립 및 운영
- 사. 남도예술은행 등 주요 문화예술 시책 운영
- 아. 문화예술상품 개발 및 활용화 추진

2. 관광진흥사업

- 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나. 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화 추진
- 다.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자원의 조사 및 정책개발
- 라. 관광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4. 문화예술·관광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목적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연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 ② 그 밖에 임원의 종류, 임원의 임면, 직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무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산출연·보조)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다.

제9조(기본재산 등)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결의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에 의한 적립금

- ② 제1항 이외의 재단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0조(재단의 기금)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문화예술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 ② 제1항의 기금은 200억원을 목표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 출연금을 세출예산서에 반영한다.
- ③ 제1항의 기금 일부를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으로 조성할 수 있다.
-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관리위탁, 사용허가, 대부와 물품 소관의 전환을 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겸임)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의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검사결과 또는 평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위탁사무(시설포함)의 처리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전남문화예술재단 지원”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으로 한다.

제6장(제30조부터 제40조까지)을 모두 삭제한다.

②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를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남문화예술재단”을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2. 2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24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단서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휴가로 한다.” 를 “여성보건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2. 2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25호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도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독서문화” 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독서교육 기회 제공)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독서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지역·직장·지식소외계층 등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장인 및 도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과 직장 등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7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매년 1회 이상 직접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독서문화 진흥 활동 지원)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
2. 독서동아리 및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 지원 사업
3. 다문화 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 사업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조) 도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2. 25.)에서 의결된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26호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연구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시·도 의회가 돌아가며 차례대로 실시하되 필요시 시·도 의회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2. 2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27호

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및 예방활동
2.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4.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절차관련 지침 개발·보급
5.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
8. 각종 안전문화운동 진흥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비 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부결정 취소) 도지사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2. 2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28호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자원 조달 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전라남도 건축조례」 제3조의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도 산하 공사·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도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개축하는 건축물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3.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 4.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5.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 녹색건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지원
-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 7.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의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도지사는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주민·민간단체·공무원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시·군,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도보 또는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2. 2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29호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및 동법시행규칙”을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을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으로,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이란 법 제4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지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현지개발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2호”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7조제1항”으로,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을 “또는 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환지방식사업“이라 함은”을 ““환지방식사업“이란”으로,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효용지수“라 함은”을 ““효용지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연장”을 “총길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호가목 중 “계상”을 “반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영 제2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선”을 “보수”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의 규정”을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50이상인”을 “50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4미터이상”을 “4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57조의 규정”을 “제57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한됨으로써”를 “제한되어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4미터이상”을 “4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40이상인”을 “40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토지등소유자” 를 “토지 등 소유자” 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토지등소유자” 를 “토지 등 소유자”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4조제3항제3호” 를 “법 제4조제4항제3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이상” 을 “1 이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토지등소유자” 를 “토지 등 소유자” 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의 규정” 을 “제14조”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3조제1항제3호 규정” 을 “영 제13조제1항제3호” 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전단 중 “정비기반 시설” 을 “정비기반시설” 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4호의 규정” 을 “영 제27조제4호” 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

② 영 제27조의3제2항의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장·군수는 제11조의3에 따른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다.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3. 시장·군수는 제2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제2항가목 및 나목)을 들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는 제3호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5. 대표자는 제4호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2호제 다목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6. 시장·군수는 제5호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지급통장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제11조의3(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② 산정위원회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요구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④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⑤ 산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고,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⑧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1이상” 을 “1 이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이상” 을 “2 이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전단 중 “토지등소유자” 를 “토지 등 소유자” 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8조제12호의 규정” 을 “영 제38조제12호” 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호 중 “따라서” 를 “따른”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영 제41조제1항제11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3호 중 “토지등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영 제47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법 제48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영 제52조제1항제3호”로, “법 제46조의 규정”을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7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제57조제1항제1호”로, “제19조 규정”을 “제19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조제1호 규정”을 “제2조제1호”로, “여럿필지”를 “여러 필지”로, “여럿개의”를 “여러 개의”로, “해당가액”을 “해당가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2조제4호 규정”을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제1호 가목”을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후부터 법 제52조제3항 규정”을 “후 부터 법 제52조제3항”으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제6조제3항”으로, “제4항 규정”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1호 가목”을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여럿의”를 “여러 명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3호 규정”을 “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호 규정에”를 “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포함한다)의 규정”을 “포함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50퍼센트”를 각각 “50 퍼센트”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를 “제57조에 따른 해당”으로 한다.

제23조 중 “제1호 다목(2)의 규정”을 “제1호다목(2)”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68조제1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토지 : 당해”를 “토지: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토지 : 당해”를 “토지: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를 “제57조에 따른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68조제5항의 규정”을 “법 제68조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75조제1항”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9조의 규정”을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6조의 규정”을 “법 제16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8조의 규정”을 “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9조의 규정”을 “제49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8조 규정”을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52조의 규정”을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따라”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5조2항 규정”을 “법 제75조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6조의 규정”을 “법 제76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77조 규정”을 “법 제77조”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토지등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수립한”을 “수립 하였을”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본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한”을 “아니 하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야기 한”을 “야기 하였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드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81조제4항”으로, “법 제54조의 규정”을 “법 제54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법 제82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법 제82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영 제60조의 규정”을 “영 제6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0조제2항 규정”을 “법 제6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6조의 규정”을 “법 제3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2. 2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30호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함은” 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익성” 을 ““수익성”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서류” 를 “붙임서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②여객자동차” 를 “② 여객자동차”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③여객자동차” 를 “③ 여객자동차” 로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을 “붙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①도지사는” 을 “① 도지사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③제5조제2항에” 를 “③ 제5조제2항에” 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조금 배분기준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배분기준 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2명, 위촉직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도로교통과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그 밖에 운수사업자 등 관련 업계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

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교통기획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배분기준을 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⑩ 도 공무원 및 도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호 중 “운행한 때”를 “운행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지원받은 때”를 “지원받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①도지사”를 “① 도지사”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도지사”를 “② 도지사”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제1항과”를 “③ 제1항과”로 한다.

제11조 중 “당해연”을 “해당연”으로 하고, “계상”을 “반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14조 중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2. 2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31호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4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54조의 규정에 따른”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으로, “다음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을 “공휴일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7월 1일”을 “6월 첫 번째 화요일”로, “11월 7일”을 “11월 첫 번째 화요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를 “법 제134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7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의사등에”를 “의사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2. 2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32호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가목부터 마목을 나목부터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국제협력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중 “F1대회지원담당관” 을 “F1대회지원담당관, 국제협력관” 으로 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조례 제4033호

전라남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전남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을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교부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남교육 구성원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전남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남교육 구성원의 이해증진을 위한 공익 목적의 언론 캠페인
2. 언론을 통한 학생 교육활동 행사
3. 언론을 통한 교육특강 및 학술·문화·예술·체육 행사
4. 언론을 통한 독서·토론·디어·진로·현장체험 교육
5. 언론을 통한 교육 정보 제공
6. 그 밖에 교육감이 언론을 통한 전남교육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공모·신청절차, 교부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조례 제4034호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율과 배려의 인성역량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의 인성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인성교육 운영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교육기관 및 전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남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

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조례 제4035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내실 운영과 교육적인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 독서 교육을 통해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독서교육 습관화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의 정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② “독서 문화”, “독서 자료”의 정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③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④ “학교 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독서교육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각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학교도서관 발전 및 운영

제5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한 경우에는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급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 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 (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
2. 전라남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

③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제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의 장,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제작·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비)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장서 확충, 사서의 배치 및 예산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신설학교의 도서관 정상화를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다 해야 한다.

제10조(전담부서) 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배치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자료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시설과 자료를 구비한다.

② 학교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보고 등)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제11조 및 제12조, 제22조 사항의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정
2.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3.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운영계획의 수정과 보완

제3장 학교 독서교육 진흥

제14조(학교의 독서진흥) 교육감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글쓰기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 과정 전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등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후감 쓰기, 책 쓰기, 편지 쓰기, 일기 쓰기 등과 같은 글쓰기 활동을 지도한다.

제16조(학교독서교육위원회) ① 독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소속으로 학교독서 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독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독서 자료 확보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동체의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독서활동 지도)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등 독서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한다.

- ②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독서교육 연구 지원)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독서 행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할 수 있다.

-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교육감은 독서교육진흥을 위해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도서관과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홈페이지 연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연계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자원봉사)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23조(학교도서관 평가)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학교 독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조례 제4036호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61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전라남도 무지개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민주적 소통 및 협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지개학교”란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자율무지개학교”란 무지개학교 운영을 준비하는 학교로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무지개학교는 학교교육의 수준과 환경을 향상시켜 교육기회와 가능성을 보편적으로 향유하도록 한다.

- ② 무지개학교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한 창의인성교육을 실천한다.
- ③ 무지개학교는 민주적 자치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의 참여문화를 실현하고 권리의식과 책무성을 자각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 ④ 무지개학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집단 지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역량을 계발한다.
- ⑤ 무지개학교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학교교육을 실현한다.
- ⑥ 무지개학교는 평화와 소통·협력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세계인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추구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 등)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 각급 학교에 무지개학교 및 자율무지개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무지개학교의 운영기간은 4년으로 하며,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교는 재지정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무지개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무지개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제13조의 평가결과 운영이 미흡한 학교는 제6조에 따른 무지개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자율무지개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무지개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지개학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무지개학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2.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3. 연차별 무지개학교 지정 계획
4. 무지개학교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
5. 그 밖에 무지개학교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무지개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무지개학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무지개학교 기본계획 수립
2. 무지개학교의 지정 및 취소
3. 무지개학교의 운영, 평가 및 지원
4. 그 밖에 무지개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교육국장, 교육진흥과장, 예산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 의원
2. 전라남도 소재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3.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무지개학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무지개학교 담당장학관이 된다.

제12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평가) ① 무지개학교의 장은 1년마다 무지개학교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교육감은 무지개학교 지정기간 만료 전에 무지개학교 운영에 관하여 2년차에 중간평가를 4년차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제2항의 종합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지개학교 및 자율무지개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무지개학교 및 자율무지개학교의 운영과 일반학교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무지개학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연수) 교육감은 무지개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을 비롯한 무지개학교 업무담당자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협력사업) 교육감은 무지개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시·군, 대학, 기업 및 연구소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조례 제4037호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사업”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
3.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교육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등)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관련 기관과 자매결연을 하거나 업무협약 등을 체결(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조(자매결연등 사전검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신뢰성
2.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3.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의 교류여건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등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매결연등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매결연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교 단절 등으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경우
2. 장기간 교류 중단으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류를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3. 10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조례 제4038호

전라남도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교복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이를 교환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복나눔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민간단체의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복의 수거, 전시 및 교환 등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단체의 관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위탁받은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위탁단체”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위탁단체는 매 연도 말 지원금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정보제공)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위탁단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남도예술은행 운영규정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훈령 제1353호

전라남도 남도예술은행 운영규정 폐지규정

전라남도 남도예술은행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6-65호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1. 수립목적 :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이용·보전을 위하여 장래 하천개수에 대한 제방축조 및 하천시설물 등 시설 기준제시
2. 하 천 명 : 조성천 등 16개 하천
3. 연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 부족량 현황 : 다음
4.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다음
5.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 다음
6.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 현황 : 다음
7. 하천기본계획도서는 전라남도 건설방재국 방재과 및 해당 시·군에 비치

□ 하천기본계획 수립구간

하천명	구 간		연 장 (km)	비 고
	시 점	종 점		
조성천	전남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산 1-1	전남 보성군 조성면 용전리 2400-3	5.73	수립
봉덕천	전남 순천시 황전면 봉덕리 752번지선	전남 순천시 황전면 황전천(지방)합류점	2.69	수립
무신천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32번지선	전남 구례군 간전면 섬진강(국가)합류점	1.05	수립
가영천	전남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1329번지선	전남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가화해안	1.07	수립
미산천	전남 곡성군 옥곡면 미산리 산99-2번지선	전남 곡성군 옥곡면 옥곡천(지방) 합류점	3.69	수립
영산강	전남 담양군 용면 담양호 방수로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2-1	0.5	변경 수립
신흥천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250-3번지	전남 장흥군 용산면 월송천 합류점	3.42	수립
석남천	전남 장흥군 관산읍 성산리 산43-2번지	전남 장흥군 관산읍 고읍천 합류점	2.44	수립
회송천	전남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492-2	전남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324-21	1.35	수립
봉학천	전남 나주시 다도면 도동리 957-1	전남 나주시 다도면 도동리 705	2.02	변경 수립
길용천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178-1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2-50	0.50	변경 수립
장전천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송덕리 707-1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송전리 765-17	2.53	수립
삼두천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149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811	2.02	수립
신 천	전남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1643번지	전남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1787번지	1.39	수립
순천서천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326번지	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동천 합류점	8.70	재수립
칠암천	전남 영광군 범성면 용덕리 780-2번지선	전남 영광군 범성면 삼당리 937번지선	2.55	변경 수립

1. 하천기본계획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하천 구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등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 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및 보전에 이용되도록 당해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일관된 하천 관리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연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면적 (km ²)	연평균 강우량 (mm)	수자원 부존량 (백만m ³ /년)				손실량 (백만m ³ /년)
			부존량	유출량			
				평상시	홍수시	총유출량	
조성천	29.59	1483.40	43.89	11.27	13.93	25.20	18.69
봉덕천	7.32	1,538.14	11.26	1.72	4.94	6.66	4.60
무신천	1.77	1,538.14	2.72	0.42	1.20	1.61	1.11
가영천	2.80	1,476.00	4.13	0.78	1.60	2.38	1.75
미산천	8.51	1,538.1	13.09	2.44	5.00	7.45	5.64
영산강	82.00	1,380.6	113.21	64.43	22.91	41.52	48.78
신흥천	7.29	1,458.3	10.63	1.78	4.53	6.31	4.32
석남천	9.43	1,458.3	13.74	2.30	5.85	8.15	5.59
회송천	1.30	1372.40	1.78	0.39	0.63	1.01	0.77
봉화천	17.12	1494.30	25.58	6.22	8.71	14.93	10.65
길용천	10.08	1372.40	13.83	3.00	4.86	7.86	5.97
장전천	3.83	1494.30	5.72	1.39	1.95	3.34	2.38
삼두천	3.09	1510.30	4.67	1.23	1.44	2.67	1.99
신천	1.89	1,326.2	2.51	0.44	0.95	1.39	1.12
순천서천	45.20	1,538.1	69.53	10.61	30.52	41.13	28.40
칠암천	16.95	1,320.8	22.40	3.50	8.90	12.39	10.01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km ²)	유로연장 (km)	기본 홍수량 (m ³ /sec)	계획 홍수량 (m ³ /sec)
조성천	조성천 하구	29.59	8.82	677	680
	매현천 합류점	10.81	6.73	294	295
	철도교 지점	8.15	5.31	263	265
	조성교 지점	6.69	4.34	233	235
	농경지 배수로 합류점	5.42	3.54	203	205
봉덕천	황전천 합류점	7.32	5.65	159	159
	신대천 합류점	5.50	4.89	120	120
	별봉천 합류점	4.37	4.19	95	95
무신천	섬진강 합류점	1.77	2.84	48	48
	지류유입점	1.44	2.16	42	42
가영천	남해 합류점	2.80	3.55	93	93
	1취입보 지점	2.47	2.78	90	90
미산천	오곡천(지방) 합류점	8.51	5.19	207	207
	세천 합류점	6.66	3.71	177	177
	세천 합류점	4.23	2.88	117	117
	세천 합류점	1.00	1.59	30	30
영산강	영산강(국가) 합류점	82.00	19.36	738	740
	금성천 합류점	71.28	19.10	647	650
	세천 합류점	54.06	17.56	509	575
	담양댐 지점	47.73	13.27	571	575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km ²)	유로연장 (km)	기본홍수량 (m ³ /sec)	계획홍수량 (m ³ /sec)
신홍천	월송천 합류점	7.29	5.02	166	170
	원기천 합류후	4.57	2.45	143	145
	원기천 합류전	2.83	2.45	88	90
석남천	고읍천 합류점	9.43	5.57	240	240
	신평천 합류전	5.38	5.38	130	130
	성산세천 합류후	4.02	3.67	123	125
	성산세천 합류전	3.34	3.67	100	100
회송천	회송천 하구	1.30	2.46	33	33
	회송3교 지점	0.99	1.80	27	27
	무명천 합류전	0.67	1.38	20	20
봉학천	봉학천 하구	17.12	8.15	352	352
	무명천(꼭골) 합류전	14.72	7.25	318	318
	무명천(폭포수골) 합류전	11.23	6.29	253	253
	무명천(떡박골) 합류전	9.04	5.20	216	216
	진동소하천 합류전	7.70	4.65	190	190
	무명천(회매골) 합류전	6.61	4.15	168	168
	무명천(떡방골) 합류전	4.39	3.57	112	112
	무명천 합류전	1.53	1.90	41	41
길용천	와탄천(지방) 합류점	10.08	6.25	195	195
	구호천 합류전	7.70	4.98	168	168
	용암천 합류전	5.97	3.83	143	143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km ²)	유로연장 (km)	기본홍수량 (m ³ /sec)	계획홍수량 (m ³ /sec)
길용천	길용계 지점	5.56	2.99	142	142
장전천	송덕천(지방) 합류점	3.83	3.78	95	95
	장전5교 지점	2.30	2.90	60	60
	장전11교 지점	1.34	2.12	37	37
	농경지배수로 합류전	0.75	1.71	21	21
삼두천	삼두천 하구	3.09	2.96	102	102
	무명천 합류전	2.48	2.56	84	84
	무명천 합류전	1.23	1.91	42	42
	삼두계 지점	0.49	1.06	18	18
신천	남해 합류점	1.89	2.91	57	57
	지막1계	1.66	2.37	56	56
	지류 합류전	0.95	1.83	36	36
	지막2계	0.81	1.31	34	34
순천서천	순천동천(지방) 합류점	45.20	13.30	651	655
	선바위천 합류점	41.67	11.60	629	630
	운평천 합류점	28.34	8.80	519	520
	비월천 합류점	20.56	6.80	464	465
	개운천 합류점	16.56	5.58	414	415
	상대구천 합류점	9.60	4.51	266	270
칠암천	구암천합류점	16.95	6.85	391	391
	석교천합류전	14.31	6.35	354	354
	용현천합류전	10.99	5.45	283	283
	발막천합류전	8.84	5.34	246	246
	장곡천합류후	8.52	4.30	229	229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주요지점	계획규모 (년)	홍수량(m ³ /sec)		계 획 홍수위 (EL.m)	하 폭 (m)		비 고
			기본	계획		현재	계획	
조성천	조성천 하구	80	677	680	1.33	81	83	
	매현천 합류전	80	294	295	4.10	57	62	
	철도교 지점	80	263	265	9.83	36	34	
	조성교 지점	80	233	235	18.95	34	34	
	농경지 배수로 합류전	80	203	205	32.32	18	18	
봉덕천	황전천 합류점	80	159	159	44.64	11~88	11~88	
	신대천 합류전	80	120	120	58.88	5~29	15~29	
	별봉천 합류전	80	95	95	85.92	8~17	8~17	
무신천	섬진강 합류점	80	48	48	23.13	7~28	7~28	
	지류유입전	80	42	42	122.81	8~15	8~15	
가영천	남해 합류점	80	93	93	2.49	6~29	14~29	
	1취입보 지점	80	90	90	18.83	8~13	14	
미산천	하구 [오곡천(지방) 합류점]	80	207	207	82.65	28	30	
	세천 합류전	80	177	177	127.32	23	23	
	세천 합류전	80	117	117	170.09	24	24	
영산강	신대성교	80	571	575	79.19	60	60	
	방수로 하단	80	571	575	79.65	43	60	

하천명	주요지점	계획규모 (년)	홍수량(m ³ /sec)		계 획 홍수위 (EL.m)	하 폭 (m)		비 고
			기본	계획		현재	계획	
신흥천	월송천 합류점	80	170	170	25.21	12~39	37~39	
	원기천 합류전	80	90	90	43.47	8~23	19~23	
석남천	고읍천 합류점	80	240	240	28.37	23~66	24~66	
	신평천 합류전	80	130	130	30.02	16~35	20~35	
	성산세천 합류전	80	100	100	55.35	7~23	13~23	
회송천	회송천 하구	80	33	33	61.35	30	30	
	회송3교 지점	80	27	27	69.28	8	10	
	무명천 합류전	80	20	20	76.63	6	6	
봉학천	봉학천 과업종점	80	112	112	126.33	13	18	
	무명천 합류전	80	41	41	150.80	8	11	
길용천	와탄천(지방) 합류점	80	195	195	3.95	155	155	
장전천	송덕천(지방) 합류점	80	95	95	14.34	124	124	
	장전5교 지점	80	60	60	21.07	16	17	
	장전11교 지점	80	37	37	27.99	10	15	
	농경지배수로 합류전	80	21	21	33.96	13	13	
삼두천	삼두천 하구	80	102	102	3.02	13	20	
	무명천 합류전	80	84	84	11.12	16	18	
	무명천 합류전	80	42	42	26.08	8	12	
	삼두제 지점	80	18	18	51.58	4	8	

하천명	주요지점	계획규모 (년)	홍수량(m ³ /sec)		계 획 홍수위 (EL.m)	하 폭 (m)		비 고
			기본	계획		현재	계획	
신천	남해 합류점	80	57	57	3.18	5.1	15.0	
	지막1계	80	56	56	18.54	8.2	-	
	지류 합류전	80	36	36	30.52	10.2	-	
	지막2계	80	34	34	46.30	12.1	-	
순천서천	하구 [순천동천(지방) 합류점]	100	651	655	22.43	51	82	
	선비위천 합류점	80	629	630	32.37	81	81	
	운평천 합류점	80	519	520	44.58	48	48	
	비월천 합류점	80	464	465	56.86	42	42	
	개운천 합류점	80	414	415	65.20	42	42	
	상대구천 합류점	80	266	270	74.53	30	30	
칠암천	구암천합류점	80	391	391	3.80	44.3	57.0	
	석교천합류전	80	354	354	4.30	43.9	57.0	
	용현천합류전	80	283	283	5.03	39.1	52.0	
	발막천합류전	80	246	246	5.10	37.4	46.0	
	장곡천합류후	80	229	229	6.53	45.6	-	

5. 법 제44 조 제1항에 따른 보전·복원·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비고
조성천	-	No.0+000 ~ No.28+133	-	
	-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	
봉덕천	NO.4+100 ~ NO.13+090	NO.0+000 ~ NO.4+100	-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	
무신천	NO.2+032 ~ NO.5+050	NO.0+000 ~ NO.2+032	-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	
가영천	-	NO.0+000 ~ NO.5+070	-	
	-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	

하천명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비고
미산천	No.8+000 ~ No.13+154 No.15+123 ~ No.18+090	No.0+000 ~ No.8+000 No.13+154 ~ No.15+123	-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	
영산강	-	No.25+182 ~ No.28+082	-	
	-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	
신흥천	-	No.0+000 ~ No.17+120	-	
	-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	
석남천	-	No.0+000 ~ No.12+043	-	
	-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	

하천명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비고
회송천	No.6+035 ~ ㅍ6+150	No.0+000 ~ No.6+035	-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	
봉학천	-	No.25+000 ~ No.35+016	-	
	-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	
길용천	-	No.0+000 ~ No.4+100	-	
	-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	
장전천	No.11+009 ~ No.12+130	No.0+000 ~ No.11+009	-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	

하천명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비고
삼두천	-	No.0+000 ~ No.10+020	-	
	-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	
신천	No.4+54~ No.13+90	No.0~ No.4+54	-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	
순천서천	-	No.45+000~ No.87+000	No.0+000~ No.45+000	
	-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지구로 산책로,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 자연친화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칠암천	-	No.0~ No.51	-	
	-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 도서와 하천대장은 관계기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열람장소 : 전라남도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 및 해당 시·군)

하천명	해당사군청
조성천	보성군
봉덕천	순천군
무신천	구례군
가영천	고흥군
미산천	곡성군
영산강	담양군
신흥천	장흥군
석남천	장흥군
회송천	화순군
봉학천	나주시
길용천	영광군
장전천	강진군
삼두천	완도군
신천	진도군
순천서천	순천시
칠암천	영광군 고창군

전라남도 고시 제2016-71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법 인 명	등록번호	등 록 연월일	대표자	소 재 지	산림사업의 종 류	비고
(유)고천산림	전남2016-35	2016.02.25	김태환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길 12	나무병원	신규
(유)재안나무병원	전남2016-36	2016.02.29	박갑순	전남 보성군 용치면 일림로1002	나무병원	〃
(주)자연과사람	전남2016-37	2016.02.29	정은희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로 86-4	도시림 등 조성	〃

전라남도 고시 제2016-72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 공공하수도 설치내역

시 설 명	봉강 개룡·덕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광양시장				
사업목적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위 치	전남 광양시 조령리, 신룡리 일원				
처리용량 (하수관거)	40m ³ /일				
처리공법	APB_SBR공법				
처리구역면적	0.088km ²				
사업시행기간	2016. ~ 201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 소재지(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m ²)	편입면적(m ²)
	다			음	

※ 관계 도서 열람 장소 : 광양시 하수과(061-797-2821)

토지 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1	봉강면 조령리	160-5	도	264	5	황중연		
2	봉강면 조령리	160-4	도	89	3	전라남도		
3	봉강면 조령리	882-2	도	2,726	1	국유지		
4	봉강면 조령리	882-5	도	103	1	국유지		
5	봉강면 조령리	159-2	도	165	3	전라남도		
6	봉강면 조령리	221-1	도	235	6	전라남도		
7	봉강면 조령리	223-1	도	132	5	전라남도		
8	봉강면 조령리	225-1	도	347	10	광양시		
9	봉강면 조령리	226-1	대	179	5	전라남도		
10	봉강면 조령리	227-1	도	40	2	류복례		
11	봉강면 조령리	882-6	도	1,533	3	국유지		
12	봉강면 조령리	230-1	도	129	6	전라남도		
13	봉강면 조령리	870-1	도	218	1	국유지		
14	봉강면 조령리	232-1	도	469	13	광양군향교		
15	봉강면 조령리	232-6	도	125	1	정인구		
16	봉강면 조령리	232-3	답	1,003	1	정인구		
17	봉강면 조령리	881	도	82	5	국유지		
18	봉강면 조령리	870	도	35,565	82	국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19	봉강면 조령리	905-2	도	140	6	국유지		
20	봉강면 조령리	236-2	도	400	23	광양시		
21	봉강면 조령리	905	도	1,195	11	국유지		
22	봉강면 조령리	332-2	도	89	4	광양시		
23	봉강면 조령리	327-2	도	115	2	광양시		
24	봉강면 조령리	328-3	도	7	1	광양시		
25	봉강면 조령리	328-1	대	620	1	허윤석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340	
26	봉강면 조령리	329	대	212	3	허윤석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340	
27	봉강면 조령리	332-3	도	102	1	광양시		
28	봉강면 조령리	331-3	도	56	2	광양시		
29	봉강면 조령리	331-2	도	59	2	광양시		
30	봉강면 조령리	325-2	답	1,564	1	달성서씨 학유공파공광양 군골약면 황길리 기동종중	광양시 황길동 산51	
31	봉강면 조령리	312-3	답	17	1	정성기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330	
32	봉강면 조령리	312-2	도	50	5	박계언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33	봉강면 조령리	312-2	도	50	5	박계언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34	봉강면 신흥리	731-2	천	3,973	5	전라남도		
35	봉강면 신흥리	731-10	천	281	1	전라남도		
36	봉강면 신흥리	731	천	216,457	142	국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37	봉강면 신흥리	205-5	잡	7,817	12	신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광양시 봉강면 개룡길 24	
38	봉강면 조령리	196-10	도	208	5	이만석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166	
39	봉강면 조령리	879	도	718	15	국유지		
40	봉강면 조령리	196-11	답	23	3	이만석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166	
41	봉강면 조령리	195-2	도	109	9	광양시		
42	봉강면 조령리	195-1	대	245	2	공석룡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181	
43	봉강면 조령리	183-3	대	9	1	국유지		
44	봉강면 조령리	880	도	667	20	국유지		
45	봉강면 조령리	185	임	40	2	박한표		
46	봉강면 조령리	193-2	도	18	2	광양시		
47	봉강면 조령리	193-1	답	546	1	조용연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4-1 용종마을신대진아파트 204-401	
48	봉강면 조령리	210-3	도	7	2	서기석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181	
49	봉강면 조령리	210-2	도	178	3	광양시		
50	봉강면 조령리	210-1	답	2,803	1	서기석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229	
51	봉강면 조령리	209-1	답	1,636	8	기계유씨 순천종친회	순천시 덕월동 826	
52	봉강면 조령리	187	대	195	4	서영원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181	
53	봉강면 조령리	190	대	268	1	서판석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190	
54	봉강면 조령리	192-1	대	602	2	공석룡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192-1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55	봉강면 조령리	186	도	17	1	서정수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181	
56	봉강면 조령리	209-2	도	112	1	유기준외3명	순천시 덕월동 759	
57	봉강면 조령리	213-2	도	43	2	광양시		
58	봉강면 조령리	208-4	도	93	2	광양시		
59	봉강면 조령리	183-2	도	136	1	광양시		
60	봉강면 조령리	228-10	도	446	11	광양시		
61	봉강면 조령리	228-7	도	96	3	광양시		
62	봉강면 조령리	228-4	학	23	1	광양시		
63	봉강면 조령리	224	학	7,082	1	광양시		
64	봉강면 조령리	354-4	도	7	1	김영식외2인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429	
65	봉강면 조령리	354-3	도	46	4	김영식외2인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429	
66	봉강면 조령리	345-5	도	17	3	광양시		
67	봉강면 조령리	345-6	도	50	4	김영우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81	
68	봉강면 조령리	233-1	도	334	10	광양시		
69	봉강면 조령리	345-7	도	56	6	김영우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81	
70	봉강면 조령리	246	잡	1,280	7	정국유지기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2블럭1롯데 창덕에버빌아파트 102동 106호	
71	봉강면 조령리	242-1	답	4,188	4	박경환	여수시 양지1길5, 301동 203호 (미평동,선경아파트)	
72	봉강면 조령리	246-1	답	3,608	3	정국유지기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2블럭1롯데 창덕에버빌아파트 102동 106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73	봉강면 조령리	257	답	2,179	6	공일택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산70	
74	봉강면 조령리	261	답	3,474	6	이근평	여수시 주삼동 534	
75	봉강면 조령리	264-1	답	2,218	3	김중훈	광양시 광장로 120, 201동 708호(중동,태영2차아파트)	
76	봉강면 조령리	870-2	도	3,350	17	국유지		
77	봉강면 신룡리	731-1	천	288	1	전라남도		
78	봉강면 신룡리	742	구	278	7	국유지		
79	봉강면 조령리	301	답	3,815	6	박동열	창원시 동읍 봉곡리 773	
80	봉강면 조령리	300	답	1,931	1	김경옥	울산 남구 달동 1286-29	
81	봉강면 조령리	300-1	잡	2,161	27	신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광양시 봉강면 개룡길 24	
82	봉강면 조령리	870-5	유	23	1	국유지		
83	봉강면 신룡리	743-2	유	29	1	국유지		
84	봉강면 신룡리	33	잡	664	1	신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광양시 봉강면 개룡길 24	
85	봉강면 신룡리	32-1	답	83	2	박홍수	경기도 성남시 중동 가 375	
86	봉강면 신룡리	742-3	유	163	5	국유지		
87	봉강면 신룡리	31-4	답	137	5	전라남도		
88	봉강면 신룡리	31-3	답	300	9	광양시		
89	봉강면 신룡리	743	도	421	2	국유지		
90	봉강면 조령리	870-3	도	300	1	광양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91	봉강면 조령리	292-1	도	777	17	광양시		
92	봉강면 신통리	1-6	답	630	7	광양시		
93	봉강면 신통리	1	답	162	162	박인수	광양시 중동 1665신희아파트 212-310	
94	봉강면 신통리	333-1	대	274	1	강옥례	광양시 봉강면 신통리 333-1	
95	봉강면 신통리	333-2	도	26	1	이규범		
96	봉강면 신통리	738	도	1,154	22	국유지		
97	봉강면 신통리	330-2	도	53	3	양철인	광양시 봉강면 신통리 271	
98	봉강면 신통리	239-2	도	58	3	광양시		
99	봉강면 신통리	339-2	도	30	2	정병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4	
100	봉강면 신통리	338-3	도	26	1	양철인	광양시 봉강면 신통리 271	
101	봉강면 신통리	239-3	도	12	1	광양시		
102	봉강면 신통리	735	구	6,960	2	국유지		
103	봉강면 조령리	906	도	106	1	국유지		
104	봉강면 신통리	739	도	300	2	국유지		
105	봉강면 신통리	237-3	도	16	2	전라남도		
106	봉강면 조령리	320	임	20	1	백명수		
107	봉강면 조령리	358-6	도	89	4	이상백	광양시 봉강면 신통리 45	
108	봉강면 조령리	358-3	도	23	1	주진암	광양시 봉강면 신통리 693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109	봉강면 조령리	358-7	도	66	2	이상백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5	
110	봉강면 조령리	348-2	도	33	1	이영태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226	
111	봉강면 조령리	348-3	도	10	1	이영태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226	
112	봉강면 조령리	350	도	13	1	김봉구		
113	봉강면 조령리	351-3	전	13	1	신내수		
114	봉강면 조령리	345-3	도	63	1	광양시		
115	봉강면 신룡리	337-2	도	13	1	김경식외2명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428	
116	봉강면 신룡리	338-2	도	43	5	양철인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271	
117	봉강면 신룡리	338-1	대	663	1	홍장길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229-2	
118	봉강면 신룡리	108	전	403	2	김덕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3	
119	봉강면 신룡리	산148	임	20,529	21	김광수외3명	광양시 광양읍 대립2길 14, 401호	
120	봉강면 신룡리	105	전	192	6	이태영		
121	봉강면 신룡리	산146	임	24,417	10	이기로	순천시 용당동 570 동아아파트 102-712	
122	봉강면 신룡리	산143-2	임	1,488	3	김향자	순천시 조례동 1802 현대아파트 103-204	
123	봉강면 신룡리	745	도	145	3			
124	봉강면 신룡리	69	전	58	2	중촌룡기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363	
125	봉강면 신룡리	68	전	218	10	김향자	순천시 조례동 1802 현대아파트 103-204	
126	봉강면 신룡리	121	대	564	3	김맹수	광양시 금호로 41, 22동 101호 (금호동, 백합아파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127	봉강면 신통리	121-2	대	96	3	김영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149 (괴정동)	
128	봉강면 신통리	122-3	대	966	6	김영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149 (괴정동)	
129	봉강면 신통리	122	대	917	3	김영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149 (괴정동)	
130	봉강면 신통리	54	대	380	4	신철수	순천시 조례동 550 남양휴튼아파트 108-1503	
131	봉강면 신통리	76	대	145	3	김희현	광양시 봉강면 신통리 75	
132	봉강면 신통리	75	대	327	1	김창래	광양시 봉강면 신통리 75	
133	봉강면 신통리	74	대	337	4	박정자	광양시 봉강면 신통리 74	
134	봉강면 신통리	72	대	327	3	신덕심	광양시 봉강면 신통리 72	
135	봉강면 신통리	71	대	357	2	정옥례	광양시 봉강면 신통리 71	
136	봉강면 신통리	744	도	1,436	18	국유지		
137	봉강면 신통리	70	대	312	8	박명수	광양시 봉강면 신통리 61	
138	봉강면 신통리	70-2	대	313	5	정옥례	광양시 봉강면 신통리 71	
139	봉강면 신통리	산213	임	868	10	이순자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131-8	
140	봉강면 신통리	산213-1	임	322	4	광양시		
141	봉강면 신통리	산211-8	임	531	12	광양시		
142	봉강면 신통리	산212-1	임	9,719	6	박정수	광양시 봉강면 개룡길 43	
143	봉강면 신통리	70-1	대	198	1	배명환	목포시 안태길26번길 10-1 (용해동)	
144	봉강면 신통리	46	대	63	1	양동수	광양시 봉강면 신통리 47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145	봉강면 신룡리	41-1	도	71	1	광양시		
146	봉강면 신룡리	41	천	683	1	광양시		
147	봉강면 신룡리	39-2	천	123	1	국유지		
148	봉강면 신룡리	205-2	잡	569	4	전라남도		
149	봉강면 신룡리	205-3	잡	137	1	전라남도		
150	봉강면 신룡리	243	대	660	5	합방운	봉강면 부저리 587	
151	봉강면 신룡리	242-1	답	1,349	2	황용호	순천시 동외동 175-32	
152	봉강면 신룡리	240-1	답	1,531	5	제봉화	봉강면 신룡리 336	

전라남도 고시 제2016-73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관계인은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및 관할 시·군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일	사유	비고
		기점	종점	거리 (km)				
조성천	지방	전남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산 1-1	전남 보성군 조성면 용전리 2400-3	5.73	360,426	고시일	하천기본 계획수립	보성군 남해유입
봉덕천	〃	전남 순천시 황전면 봉덕리 752번지선	전남 순천시 황전면 황전천(지방)합류점	2.69	72,428.24	〃	〃	섬진강 하류권역
무신천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32번지선	전남 구례군 간전면 섬진강(국가)합류점	1.05	22,242.84	〃	〃	섬진강 하류권역
가영천	〃	전남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1329번지선	전남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가화해안	1.07	28,216.27	〃	〃	고흥군 남해유입
미산천	〃	전남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99-2번지선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곡천(지방) 합류점	3.69	141,305	〃	〃	섬진강 본류
영산강	〃	전남 담양군 담양댐 방수로 하단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2-1	0.50	28,674	〃	〃	영산강 상류
신흥천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250-3번지	전남 장흥군 용산면 월송천 합류점	3.42	150,146	〃	〃	섬진강 남해수계
석남천	〃	전남 장흥군 관산읍 성산리 산43-2번지	전남 장흥군 관산읍 고읍천 합류점	2.44	88,397	〃	〃	섬진강권역
회송천	〃	전남 회순군 춘양면 회송리 492-2	전남 회순군 춘양면 회송리 324-21	1.35	22,044	〃	〃	영산강권역
봉학천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도동리 957-1	전남 나주시 다도면 도동리 705	2.02	41,727	〃	〃	영산강권역
길용천	〃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178-1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2-50	0.50	28,721	〃	〃	영광군 서해유입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 구간			면적 (㎡)	결정일	사유	비고
		기점	종점	거리 (km)				
장전천	지방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송덕리 707-1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송전리 765-17	2.53	116,037	고시일	하천기본 계획수립	탐진강권역
삼두천	〃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149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811	2.02	47,971	〃	〃	완도군 남해유입
신 천	〃	전남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1643번지	전남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1787번지 (지막남해안합류)	1.39	33,755	〃	〃	영산강권역
순천서천	〃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326번지	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동천 합류점	8.70	754,733	〃	〃	이사천권역
칠암천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780-2번지선 (장곡소하천 합류점)	전남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937번지선 (구암천 합류점)	2.55	187,396	〃	〃	영산강권역
효곡천	〃	전남 구례군 간전면 효곡리 24	전남 구례군 간전면 효곡리 간문천 합류점	2.63	83,504	〃	〃	섬진강 하류권역
신평천	〃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812번지선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해안	3.23	121,408	〃	〃	고흥군 남해유입
평촌천	〃	전남 장흥군 대덕읍 산정저수지	전남 장흥군 대덕읍 대덕천 합류점	1.66	48,688	〃	〃	장흥군 남해유입
광 천	〃	순천시 주암면 율통천(소) 합류점	순천시 주암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7.30	345,561	〃	〃	보성강 하류권역
주암천	〃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535번지선	순천시 주암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10.69	725,966	〃	〃	〃
갈마천	〃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476번지선	순천시 주암면 주암천(지방) 합류점	1.81	44,990	〃	〃	〃
용촌천	〃	순천시 주암면 보령제 방수로	순천시 주암면 주암천(지방) 합류점	4.57	149,238	〃	〃	〃
장동천	〃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장동제방수로	순천시 주암면 용촌천(지방) 합류점	1.68	52,266	〃	〃	〃
백록천	〃	순천시 주암면 백록리 781번지선	순천시 주암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5.86	331,460	〃	〃	〃
유정천	〃	곡성군 석곡면 구봉리 봉전제방수로	곡성군 석곡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2.49	71,884	〃	〃	〃
온수천	〃	곡성군 석곡면 염곡리 742번지선	곡성군 석곡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9.34	375,249	〃	〃	〃
석곡천	〃	곡성군 삼기면 수산리 420번지선	곡성군 석곡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11.73	695,473	〃	〃	〃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 구간			면적 (㎡)	결정일	사유	비고
		기점	종점	거리 (km)				
연반천	지방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1075번지선	곡성군 석곡면 석곡천(지방) 합류점	2.52	25,958	고시일	하천기본 계획수립	보성강 하류권역
당월천	〃	곡성군 석곡면 방송제직하류	곡성군 석곡면 석곡천(지방) 합류점	1.35	43,510	〃	〃	〃
목사동천	〃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 41번지선	곡성군 목사동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7.04	325,485	〃	〃	〃
용봉천	〃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제직하류	곡성군 목사동면 목사동천(지방) 합류점	1.19	27,353	〃	〃	〃
죽곡천	〃	곡성군 죽곡면 봉정리 제직하류	곡성군 죽곡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5.81	312,765	〃	〃	〃
신평천	〃	곡성군 죽곡면 신평리 710번지선	곡성군 죽곡면 죽곡천(지방) 합류점	4.55	208,285	〃	〃	〃
동계천	〃	곡성군 죽곡면 원달사방댐 직하류	곡성군 죽곡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7.84	322,902	〃	〃	〃
고치천	〃	곡성군 죽곡면 고치리 81번지선	곡성군 죽곡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3.08	83,014	〃	〃	〃
동북천	〃	화순군 북면 송단제 방수로하단	보성군 문덕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48.40	12,459,468	〃	〃	보성강 주암댐권역
대덕천	〃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 786번지선	담양군 대덕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6.78	233,942	〃	〃	〃
남 천	〃	담양군 창평면 외동제 방수로하단	화순군 북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7.96	387,793	〃	〃	〃
길성천	〃	화순군 북면 용곡리 15번지선	화순군 북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8.03	235,138	〃	〃	〃
내북천	〃	화순군 북면 노치리 10번지선	화순군 북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8.11	283,677	〃	〃	〃
수리천	〃	화순군 북면 수리 788-1번지선	화순군 북면 내북천(지방) 합류점	1.37	28,940	〃	〃	〃
이서천	〃	화순군 이서면 무동제 방수로	화순군 이서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6.18	269,921	〃	〃	〃
장북천	〃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643번지선	화순군 이서면 이서천(지방) 합류점	3.06	95,861	〃	〃	〃
안심천	〃	화순군 이서면 안심제 방수로	화순군 이서면 이서천(지방) 합류점	3.62	106,927	〃	〃	〃
유천천	〃	화순군 동북면 유천제 방수로하단	화순군 동북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3.80	260,873	〃	〃	〃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 구간			면적 (㎡)	결정일	사유	비고
		기점	종점	거리 (km)				
가수천	지방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334번지선	화순군 동북면 유천천(지방) 합류점	6.94	273,568	고시일	하천기본 계획수립	보성강 주암댐권역
안성천	〃	화순군 동북면 안성리 640번지선	화순군 동북면 가수천(지방) 합류점	0.65	19,305	〃	〃	〃
울곡천	〃	화순군 동북면 신율리 23번지선	화순군 동북면 가수천(지방)합류점	3.23	47,010	〃	〃	〃
구암천	〃	화순군 동북면 구암리 921번지선	화순군 동북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0.88	21,531	〃	〃	〃
평촌천	〃	화순군 남면 내리 1123-1번지선	화순군 남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1.58	60,859	〃	〃	〃
오룡천	〃	화순군 남면 장전리 431-1번지선	화순군 남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2.71	62,025	〃	〃	〃
송암천	〃	화순군 남면 다산리 773번지선	화순군 남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2.25	63,348	〃	〃	〃
외남천	〃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497번지선	화순군 남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11.92	1,216,762	〃	〃	〃
고방천	〃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6번지선	화순군 한천면 외남천(지방) 합류점	0.73	12,320	〃	〃	〃
도치천	〃	화순군 한천면 반곡리 428-1번지선	화순군 한천면 외남천(지방) 합류점	0.48	3,540	〃	〃	〃
송산천	〃	화순군 한천면 정우리 23번지선	화순군 남면 외남천(지방) 합류점	3.53	112,674	〃	〃	〃
대곡천	〃	화순군 남면 대곡리 332번지선	화순군 남면 외남천(지방) 합류점	2.60	90,389	〃	〃	〃
내남천	〃	화순군 남면 유마리 266-2번지선	화순군 남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4.93	154,177	〃	〃	〃
죽산천	〃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600번지선	보성군 문덕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2.93	68,065	〃	〃	〃
한천천	〃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1448번지선	순천시 송광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2.57	41,655	〃	〃	〃
송광천	〃	순천시 외서면 반용리 252-6번지선	순천시 송광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14.26	802,162	〃	〃	〃
외서천	〃	순천시 외서면 신덕리 133번지선	순천시 외서면 송광천(지방) 합류점	5.43	155,453	〃	〃	〃
장안천	〃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466번지선	순천시 송광면 송광천(지방) 합류점	3.88	108,409	〃	〃	〃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 구간			면적 (㎡)	결정일	사유	비고
		기점	종점	거리 (km)				
월광천	지방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866번지선	순천시 송광면 장안천(지방) 합류점	0.92	14,938	고시일	하천기본 계획수립	보성강 주암댐권역
후곡천	〃	순천시 송광면 후곡리 638번지선	순천시 송광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0.49	24,390	〃	〃	〃
신평천	〃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30번지선	순천시 송광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2.46	59,360	〃	〃	〃
삼청천	〃	순천시 송광면 삼청리 702번지선	순천시 송광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2.85	51,750	〃	〃	〃
신성천	〃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102-1번지선	순천시 송광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0.65	12,851	〃	〃	〃
대광천	〃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1176번지선	순천시 주암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2.68	61,653	〃	〃	〃
보성강	〃	보성군 웅치면 봉산리 834-4번지선	보성군 문덕면 보성강(국가) 기점	70.97	15,125,910	〃	〃	보성강 상류권역
용반천	〃	보성군 웅치면 용반리 639-2번지선	보성군 웅치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2.19	99,380	〃	〃	〃
대산천	〃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담안제 여수로	보성군 웅치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4.06	186,395	〃	〃	〃
구암천	〃	보성군 웅치면 강산리 서동제 여수로	보성군 웅치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2.42	102,257	〃	〃	〃
석교천	〃	장흥군 장평면 북교리 796-1번지선	장흥군 장평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4.47	179,258	〃	〃	〃
배산천	〃	장흥군 장평면 반산리 외반제 여수로	장흥군 장평면 석교천(지방) 합류점	3.06	116,611	〃	〃	〃
용강천	〃	장흥군 장평면 등촌리 412번지선	장흥군 장평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3.07	103,541	〃	〃	〃
장평천	〃	장흥군 장평면 병동리 193-1번지선	장흥군 장평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10.78	863,734	〃	〃	〃
임천천	〃	장흥군 장평면 북흥제 여수로하단	장흥군 장평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5.77	311,821	〃	〃	〃
명동천	〃	장흥군 장평면 진산리 진산제 여수로	장흥군 장평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3.88	204,480	〃	〃	〃
대련천	〃	보성군 노동면 대련리 절련제 여수로	보성군 노동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3.09	110,906	〃	〃	〃
노동천	〃	보성군 노동면 학동리 갑동제 여수로	보성군 노동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7.82	351,558	〃	〃	〃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 구간			면적 (㎡)	결정일	사유	비고
		기점	종점	거리 (km)				
광곡천	지방	보성군 노동면 거석리 중의제 여수로	보성군 노동면 노동천(지방) 합류점	3.55	135,166	고시일	하천기본 계획수립	보성강 상류권역
봉화천	〃	보성군 응치면 봉선리 1262번지선	보성군 응치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9.70	575,466	〃	〃	〃
미력천	〃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717-4번지선	보성군 미력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4.54	164,635	〃	〃	〃
장동천	〃	보성군 미력면 화방리 장동제 여수로	보성군 미력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2.14	81,207	〃	〃	〃
검백천	〃	보성군 검백면 수남리 산 3번지선	보성군 검백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5.78	294,772	〃	〃	〃
올어천	〃	보성군 올어면 유신리 유신제 여수로	보성군 올어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8.07	609,954	〃	〃	〃
유정천	〃	보성군 복내면 장천리 장천제 여수로	보성군 복내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7.12	548,642	〃	〃	〃
복내천	〃	보성군 복내면 진봉리 진봉제 여수로	보성군 복내면 유정천(지방) 합류점	5.29	424,094	〃	〃	〃
화령천	〃	보성군 복내면 진봉리 873번지선	보성군 복내면 복내천(지방) 합류점	1.60	44,895	〃	〃	〃
일봉천	〃	보성군 복내면 일봉리 일봉제 여수로	보성군 복내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4.35	308,480	〃	〃	〃
문덕천	〃	보성군 문덕면 귀산리 귀산제 여수로	보성군 문덕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3.05	220,174	〃	〃	〃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폐천부지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 구간			면적 (㎡)	필지수	비고
		기점	종점	거리 (km)			
순천서천	지방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326번지	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동천 합류점	8.70	2,300	4	이사천 권역

전라남도 고시 제2016-74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관계인은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및 관할 시·군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적 (㎡)	결정일	사유	비고
		기점	종점	거리 (km)				
봉덕천	지방	전남 순천시 황전면 봉덕리 752번지선	전남 순천시 황전면 황전천(지방)합류점	2.69	3,319.39	고시일	하천기본 계획수립	섬진강 하류권역
신 천	〃	전남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1643번지	전남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1787번지 (지막남해안합류)	1.39	1,378	〃	〃	영산강권역
순천서천	〃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326번지	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동천 합류점	8.70	1,002	〃	〃	이사천권역
신평천	〃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402번지선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405-7번지선	0.29	9,268	〃	〃	고흥군 남해유입
광 천	〃	순천시 주암면 운룡천(소) 합류점	순천시 주암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7.30	50,773	〃	〃	섬진강 하류권역
주암천	〃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535번지선	순천시 주암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10.69	24,791	〃	〃	〃
갈마천	〃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476번지선	순천시 주암면 주암천(지방) 합류점	1.81	2,124	〃	〃	〃
용춘천	〃	순천시 주암면 보령제 방수로	순천시 주암면 주암천(지방) 합류점	4.57	5,865	〃	〃	〃
장동천	〃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장동제방수로	순천시 주암면 용춘천(지방) 합류점	1.68	1,227	〃	〃	〃
백록천	〃	순천시 주암면 백록리 781번지선	순천시 주암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5.86	277,092	〃	〃	〃
유정천	〃	곡성군 석곡면 구봉리 봉전제방수로	곡성군 석곡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2.49	10,773	〃	〃	〃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적 (㎡)	결정일	사유	비고
		기점	종점	거리 (km)				
온수천	지방	곡성군 석곡면 염곡리 742번지선	곡성군 석곡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9.34	6,522	고시일	하천기본 계획수립	섬진강 하류권역
석곡천	〃	곡성군 삼기면 수산리 420번지선	곡성군 석곡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11.73	12,212	〃	〃	〃
연반천	〃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1075번지선	곡성군 석곡면 석곡천(지방) 합류점	2.52	3,118	〃	〃	〃
목사동천	〃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 41번지선	곡성군 목사동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7.04	2,992	〃	〃	〃
용봉천	〃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제직하류	곡성군 목사동면 목사동천(지방) 합류점	1.19	3,346	〃	〃	〃
용봉천	〃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제직하류	곡성군 목사동면 목사동천(지방) 합류점	1.19	3,346	〃	〃	〃
죽곡천	〃	곡성군 죽곡면 봉정리 제직하류	곡성군 죽곡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5.81	3,481	〃	〃	〃
신평천	〃	곡성군 죽곡면 신평리 710번지선	곡성군 죽곡면 죽곡천(지방) 합류점	4.55	18,488	〃	〃	〃
동계천	〃	곡성군 죽곡면 원달사방댐 직하류	곡성군 죽곡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7.84	21,736	〃	〃	〃
고치천	〃	곡성군 죽곡면 고치리 81번지선	곡성군 죽곡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3.08	5,475	〃	〃	〃
동북천	〃	화순군 북면 송단제 방수로하단	보성군 문덕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48.40	18,561	〃	〃	보성강 주암댐권역
대덕천	〃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 786번지선	담양군 대덕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6.78	2,660	〃	〃	〃
길성천	〃	화순군 북면 용곡리 15번지선	화순군 북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8.03	20,166	〃	〃	〃
내북천	〃	화순군 북면 노치리 10번지선	화순군 북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8.11	4,657	〃	〃	〃
안심천	〃	화순군 이서면 안심제 방수로	화순군 이서면 이서천(지방) 합류점	3.62	9,456	〃	〃	〃
가수천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334번지선	화순군 동북면 유천천(지방) 합류점	6.94	1,301	〃	〃	〃
율곡천	〃	화순군 동북면 신율리 23번지선	화순군 동북면 가수천(지방)합류점	3.23	14,663	〃	〃	〃
오룡천	〃	화순군 남면 장전리 431-1번지선	화순군 남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2.71	1,272	〃	〃	〃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적 (㎡)	결정일	사유	비고
		기점	종점	거리 (km)				
외남천	지방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497번지선	화순군 남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11.92	4,736	고시일	하천기본 계획수립	보성강 주암댐권역
내남천	〃	화순군 남면 유마리 266-2번지선	화순군 남면 동북천(지방) 합류점	4.93	2,376	〃	〃	〃
한천천	〃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1448번지선	순천시 송광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2.57	2,443	〃	〃	〃
외서천	〃	순천시 외서면 신덕리 133번지선	순천시 외서면 송광천(지방) 합류점	5.43	5,953	〃	〃	〃
신평천	〃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30번지선	순천시 송광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2.46	2,899	〃	〃	〃
삼청천	〃	순천시 송광면 삼청리 702번지선	순천시 송광면 보성강(국가) 합류점	2.85	8,004	〃	〃	〃
보성강	〃	보성군 웅치면 봉산리 834-4번지선	보성군 문덕면 보성강(국가) 기점	70.97	326,215	〃	〃	보성강 상류권역
노동천	〃	보성군 노동면 학동리 갑동제 여수로	보성군 노동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7.82	10,405	〃	〃	〃
광곡천	〃	보성군 노동면 거석리 중의제 여수로	보성군 노동면 노동천(지방) 합류점	3.55	2,380	〃	〃	〃
미력천	〃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717-4번지선	보성군 미력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4.54	20,944	〃	〃	〃
검백천	〃	보성군 검백면 수남리 산 3번지선	보성군 검백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5.78	5,563	〃	〃	〃
올어천	〃	보성군 올어면 유신리 유신제 여수로	보성군 올어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8.07	58,835	〃	〃	〃
유정천	〃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장천제 여수로	보성군 북내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7.12	4,726	〃	〃	〃
북내천	〃	보성군 북내면 진봉리 진봉제 여수로	보성군 북내면 유정천(지방) 합류점	5.29	5,516	〃	〃	〃
일봉천	〃	보성군 북내면 일봉리 일봉제 여수로	보성군 북내면 보성강(지방) 합류점	4.35	3,435	〃	〃	〃

첨부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전라남도 고시 제2016-75호

수산물위판장 지정 고시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7호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판장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 1. 관리자 : 신안군수협조합장
- 2. 위치 및 규모

위판장 명 칭	관리자	소재지	시설규모(m ²)			위 판 장 시설명세	일련 번호	비고
			부지 면적	건 축 연면적	위판장 면 적			
신안군수협 송도활어 위판장	신안군 수산업 협동 조합장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570-30 (570-57, 58)	1,980	791.64	658.2	위판장, 연쇄점, 사무실, 식당	' 16-1	신규 지정

전라남도 고시 제2016-76호

수산물위판장 변경지정 고시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7호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판장의 소재지 및 시설규모가 변경된 위판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 위판장 변경지정 내용 】

지정번호	당 초			변 경			비 고
	위판장 명칭	소재지	시설규모 (㎡)	위판장 명칭	소재지	시설규모 (㎡)	
'08-21	영광군 수협 법성 위판장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482-23	580	영광군 수협 법성 위판장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1007-5	3,117.2	건물 신축에 따른 변경지정

전라남도 고시 제2016-77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영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를 고시합니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 운행허용 산업단지
 울촌제1일반산업단지(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78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9년에 지정한 사방지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어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동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1. 해 제 일 : 2016. 3. 4.
2. 해제 위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평리 산72-1외 489필지
3. 해제 면적 : 197,611㎡
4. 해제 사유 :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5. 기 타 : 사방지 해제 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산림산업과(061-286-6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사방지 지정해제 대상지 조사결과(2009년 지정분)

토 지 소 재 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합계		490필지		197,611				
여수	율촌	신평	산72-1	19,842	56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여수	율촌	신평	산72-2	19,842	2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여수	율촌	신평	산73	625	7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여수	율촌	신평	산70-1	6,180	2,071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여수	화양	화동	산252-2	992	94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여수	화양	화동	산341	14,396	124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여수	화양	화동	산342	12,156	459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여수	화양	화동	산341-1	298	44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여수	화양	화동	산342-1	198	1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여수	화양	화동	1910	810	1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여수	화양	화동	1911-1	546	104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여수	화양	화동	산254-4	2,609	162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여수	화양	화동	산340-2	621	34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여수	화양	화동	산341-2	1,007	19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여수	화양	화동	산341-3	10,283	67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여수	화양	화동	산340-1	1,388	30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순천	송광	장안	2346-2	24,228	1,942	산림유역관리사업	전남고시제09-60호 (2009.02.10)	지정목적달성	

토 지 소 재 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순천	송광	장안	866	73	3	산림유역관리사업	전남고시제09-60호 (2009.02.10)	지정목적달성	
순천	송광	장안	839	23	6	산림유역관리사업	전남고시제09-60호 (2009.02.10)	지정목적달성	
순천	송광	장안	840	1,053	19	산림유역관리사업	전남고시제09-60호 (2009.02.10)	지정목적달성	
순천	송광	장안	861	595	48	산림유역관리사업	전남고시제09-60호 (2009.02.10)	지정목적달성	
순천	외서	신덕	산138-1	676,909	376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순천	외서	신덕	산138-8	8,826	147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순천	외서	신덕	산173-7	496	13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순천	외서	신덕	824	1,395	1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순천	외서	월암	산119	27,868	98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순천	외서	월암	1124	582	10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순천	외서	월암	1128	1,055	123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순천	외서	월암	1241	57,732	511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순천		조곡	722-7	1,608	784	산사태예방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순천		조곡	582	883	80	산사태예방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순천		조곡	585	317	66	산사태예방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순천		조곡	588	740	110	산사태예방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순천		조곡	589	504	45	산사태예방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순천	상사	용계	978	57,861	2,049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토 지 소 재 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순천	상사	용계	524-2	4,618	18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순천	상사	용계	462	1,736	44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순천	상사	용계	산151-2	2,910	185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순천	승주	도정	811	744	46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순천	승주	도정	917	640	3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순천	승주	도정	산263-1	2,823	1,22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순천	승주	도정	935-3	1,094	14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순천	승주	도정	901	3,795	131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순천	승주	도정	935-2	32,608	149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순천	승주	도정	880-1	1,815	54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순천	별량	대룡	998	2,678	28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순천	별량	대룡	1056	834	172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순천	별량	대룡	1242	66,942	1,346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나주	산포	산제	산23-7	383,723	708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나주	산포	산제	498-1	3,874	1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나주	산포	산제	744-5	5,206	38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나주	남평	풍림	산40	324,464	1,127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나주	남평	풍림	2	2,231	48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토지소재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나주	남평	풍림	903	22,741	212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나주	노안	양천	산85-1	1,587	73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나주	노안	양천	산86	25,091	431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나주	노안	양천	산96	17,752	179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나주	다도	마산	1008	8,917	679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나주	다도	마산	704	1,881	27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나주	다도	마산	712	1,293	63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나주	다도	마산	711	539	16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나주	다도	마산	산20-1	16,165	319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나주	남평	풍림	산40-2	954	7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나주	남평	풍림	903	7,019	431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나주	남평	풍림	906	1,620	46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나주	남평	풍림	4	4,083	58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나주	남평	풍림	3	664	118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나주	남평	풍림	2	2,231	15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나주	다시	신광	산7	40,760	63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나주	다시	신광	산8	99,075	429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나주	다시	신광	산8-1	2,280	278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토지소재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나주	다시	신광	15-2	5,843	97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나주	다시	신광	산6	23,405	11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광양	다압	고사	산241-6	5,950	117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광양	다압	고사	741	2,463	12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광양	다압	고사	2194	49,215	793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광양	다압	금천	산233-1	21,690	8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광양	다압	금천	산234	12,694	201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광양	다압	금천	947-2	1,742	168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광양	다압	금천	2815	908,677	852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광양	진월	신아	102	1,018	140	산사태예방사방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광양	진월	신아	103	169	14	산사태예방사방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광양	진월	신아	104-2	46	12	산사태예방사방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광양	진월	신아	105-3	351	21	산사태예방사방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광양	진월	신아	107-1	344	45	산사태예방사방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광양	진상	어치1	산308	15,928,582	176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광양	진상	어치1	1103	896	14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광양	진상	어치1	1278	222,887	814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광양	진상	어치	586	6,520	12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토 지 소 재 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광양	진상	어치	산200	9,909	6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광양	진상	어치	1306	10,499	9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광양	진상	황죽	산229-1	88,165	131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광양	진상	황죽	산219	91,316	101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광양	진상	황죽	1638	82,648	92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광양	옥룡	동곡2	산134-22	401,685	96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광양	옥룡	동곡2	산134-23	3,305	64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광양	옥룡	동곡2	산134-24	3,305	79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광양	옥룡	동곡2	산140-1	4,157	43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광양	옥룡	동곡2	1205	390,918	851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광양	진상	황죽	산228-3	423,967	145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광양	진상	황죽	산223-3	66,121	25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광양	진상	황죽	산223-1	1,389	77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광양	진상	황죽	1648	7,719	296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광양	옥룡	동곡	1205	390,918	866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광양	옥룡	동곡	14	205	34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담양	대전	평장	산152-4	3,899	873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담양	대전	평장	산173-2	4,208	123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토지소재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담양	대전	평장	산175	26,380	14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담양	대전	평장	산177-1	7,308	161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담양	무정	성도	산100	11,405	9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담양	무정	성도	146	2,103	44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담양	무정	성도	723-6	10,067	1,033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담양	남면	정곡	산60	60,893	93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담양	남면	정곡	산128-1	102,645	39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담양	남면	정곡	584-6	15,607	13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담양	남면	정곡	587	899	12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담양	남면	정곡	632	6,790	661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담양	용면	용연	산10-27	499,896	2,425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60호 (2009.02.20)	지정목적달성	
담양	용면	용연	산10-26	2,907	297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60호 (2009.02.20)	지정목적달성	
담양	용면	용연	산11-1	1,729,454	765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60호 (2009.02.20)	지정목적달성	
곡성	오곡	미산	720-1	245	1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곡성	오곡	미산	724-2	2,017	67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곡성	오곡	미산	751-18	85,935	1,44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곡성	목사	공북	산28	8,628	149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곡성	목사	공북	60	119	9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토 지 소 재 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곡성	목사	공북	61	360	36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곡성	목사	공북	84-1	605	64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곡성	목사	공북	84-2	684	18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곡성	목사	공북	673	575	6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곡성	목사	공북	668	3,263	109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곡성	목사	공북	산57-3	3,074	12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곡성	목사	공북	115	1,392	54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곡성	목사	공북	667-10	4,293	302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184-1	66,424	13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산184-7	8,067	18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199-1	221	3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531	701	9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712	12,780	1,218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113	860	58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115-1	1,653	56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115-2	1,802	42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715	4,982	457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88	5,842	6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토지소재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곡성	고달	두가	96-1	2,695	22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97	922	9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687	13,355	1,224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산234	79,140	166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80	1,650	6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687	13,355	541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곡성	죽곡	신평	450	212	18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곡성	죽곡	신평	451	1,183	16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곡성	죽곡	신평	453	79	8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곡성	죽곡	신평	498	1,580	41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곡성	죽곡	신평	499	1,157	6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곡성	죽곡	신평	산133	3,868	44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곡성	죽곡	신평	산203-1	3,712	45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곡성	죽곡	신평	767	8,205	944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곡성	오곡	침곡	249	562	2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곡성	오곡	침곡	산22	348,893	45	사방댐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곡성	오곡	침곡	274-2	197,958	1,385	사방댐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곡성	신기	산106-1	18,835	393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토 지 소 재 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곡성	곡성	신기	산105	2,876	179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곡성	신기	951	949	87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곡성	신기	산103	63,570	42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곡성	신기	산103-1	1,488	178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곡성	신기	1079-31	1,939	649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곡성	석곡	연반	400	8,898	175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곡성	석곡	연반	산104-1	98,694	12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곡성	석곡	연반	산104-3	794	256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곡성	석곡	연반	1383-3	466	281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594	1,246	51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583	969	24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582	413	152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148	493	122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147	1,190	42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196	1,091	19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197	33,521	156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곡성	고달	두가	714	3,074	626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곡성	오산	선세	산1-1	4,321,778	715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토지소재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곡성	오곡	압록	산120-2	25,388	1,597	산사태사업	전남고시제09-360호 (2009.09.01)	지정목적달성	
곡성	오곡	압록	233	843	40	산사태사업	전남고시제09-360호 (2009.09.01)	지정목적달성	
곡성	죽곡	원달	959-1	174,420	770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64호(2009.11.26)	지정목적달성	
구례	간전	홍대	26	17	6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60호 (2009.02.10)	지정목적달성	
구례	간전	홍대	27	1,567	82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60호 (2009.02.10)	지정목적달성	
구례	간전	홍대	산106	23,008	27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60호 (2009.02.10)	지정목적달성	
구례	간전	홍대	산137	21,818	25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60호 (2009.02.10)	지정목적달성	
구례	간전	홍대	산138	2,876	629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60호 (2009.02.10)	지정목적달성	
구례	간전	홍대	산140-1	17,653	138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60호 (2009.02.10)	지정목적달성	
구례	간전	홍대	산140-6	34,720	1,285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60호 (2009.02.10)	지정목적달성	
구례	산동	둔사	산326	41,256	67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구례	산동	둔사	896	512	5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구례	산동	둔사	산358-6	4,165	53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구례	산동	둔사	930	59,237	332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구례	산동	위안	774	99,313	278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구례	용방	용정	747-6	63,032	479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구례	간전	효곡	127	4,638	88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구례	간전	효곡	산24-1	87,769	31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토 지 소 재 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구례	간전	효곡	762	200,152	1,197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구례	간전	효곡	190-1	8,826	2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구례	간전	효곡	191-1	23,008	196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구례	구례	논곡	736	2,357	2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구례	구례	논곡	737	264	22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구례	구례	논곡	738	843	63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구례	구례	논곡	738-1	612	4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구례	구례	논곡	849	30,615	1,549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구례	구례	논곡	662	684	1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구례	구례	논곡	672	1,045	45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구례	구례	논곡	699	268	15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구례	구례	논곡	699-1	506	26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구례	구례	논곡	842	16,135	1,129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구례	구례	논곡	681-1	969	8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구례	구례	논곡	696-1	802	13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구례	구례	논곡	842	16,135	1,214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구례	구례	원방	산12	100,165	232	산사태예방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구례	문척	죽마	산94	29,554	32	사방댐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토지소재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구례	문척	죽마	84	813	39	사방댐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구례	문척	죽마	산94-1	1,686	182	사방댐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구례	문척	죽마	산87	14,777	55	사방댐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구례	문척	죽마	90	357	39	사방댐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구례	문척	죽마	999	5,851	209	사방댐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고흥	대서	안남	산213-2	155,558	2,300	산사태예방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고흥	도양	봉암	2240-1	10,971	120	산지보전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고흥	금산	신전	산52	1,091	35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고흥	두원	용당	산52	2,083	30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고흥	두원	용당	산57	32,826	80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고흥	영남	양사	산150	279,009	711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고흥	영남	양사	산151	8,132	13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고흥	영남	양사	산152	2,400	364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고흥	영남	양사	산151-1	3,373	413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고흥	금산	어전	산231-1	25,483	1,294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고흥	금산	어전	산50-27	504	53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고흥	금산	어전	산50-28	236	15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고흥	금산	어전	산238	818	21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토 지 소 재 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고흥	금산	어전	436-10	2,678	64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고흥	금산	어전	436-47	694	33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고흥	포두	차동	산61-1	36,596	719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고흥	포두	차동	1457	208	208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고흥	포두	차동	산61-1	36,596	923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고흥	포두	차동	산61-2	992	171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고흥	포두	차동	산61-5	162	9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고흥	포두	차동	1488	7,868	234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고흥	동강	대강	1217	2,370	7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고흥	동강	대강	1218	760	8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고흥	동강	대강	1226	377	145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고흥	동강	대강	산103	23,802	139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고흥	동강	대강	1256	35,344	1,079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고흥	동강	대강	1208	3,286	58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고흥	동강	대강	1211	734	209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고흥	동강	대강	1216	8,760	10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고흥	동강	대강	1256	35,344	1,331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고흥	동강	대강	1256	35,344	1,961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토지소재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고흥	동강	대강	1207	1,388	21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고흥	동강	대강	1209-1	1,904	38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고흥	동강	대강	산66-1	893	38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고흥	고흥	등암	산15-1	6,051	422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고흥	고흥	등암	산33	7,934	43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고흥	고흥	등암	산34-1	122,480	365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고흥	고흥	등암	1611-43	8,232	333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보성	득량	삼정	산251	30,112	300	산사태예방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보성	득량	삼정	산252-2	32,132	1,000	산사태예방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보성	득량	삼정	162-3	1,780	1,500	산사태예방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보성	북내	일봉	산97-1	832,959	86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보성	북내	일봉	산140	4,861	68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보성	율어	선암	산32-3	82,332	40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보성	율어	선암	41	1,438	61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보성	율어	선암	1179	11,772	41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보성	율어	금천	1130	31,755	1,14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보성	율어	금천	389	747	16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보성	율어	금천	391	1,058	24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토 지 소 재 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보성	율어	금천	603	370	8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보성	별교	봉림	310	4,486	339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보성	별교	봉림	166	502	1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보성	별교	봉림	산8-12	16,883	51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보성	득량	정흥	산114	1,361	84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보성	득량	정흥	산203	794	416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보성	득량	정흥	산115	33,000	81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보성	겸백	수남	산190	298	298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보성	겸백	수남	산4	13,091	560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보성	겸백	수남	산2-3	793	220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보성	겸백	수남	산11	20,231	255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보성	회천	화죽	산104-4	14,385	614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보성	회천	화죽	1126-11	11,137	157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보성	회천	화죽	1126-10	3,501	51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보성	회천	화죽	산104-1	14,547	511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보성	회천	화죽	산105-2	35,440	121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보성	회천	화죽	산105	18,581	37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보성	회천	화죽	산106	49,910	30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토지소재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보성	회천	화죽	산107-1	22,413	161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보성	회천	화죽	산233	2,182	221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보성	보성	봉산	917	307	44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보성	보성	봉산	1323-4	5,873	514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보성	보성	봉산	929	1,012	125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보성	보성	봉산	912	463	5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보성	득량	비봉	산171	3,472	43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보성	득량	비봉	산73	4,363	357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보성	득량	비봉	366-2	4,354	76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보성	회천	영천	1-2	49,569	354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보성	별교	별교	산15-1	41,804	216	산사태예방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보성	율어	선암	1186	65,332	890	사방댐	전남고시 제09-464호(2009.11.26)	지정목적달성	
보성	율어	선암	695	714	10	사방댐	전남고시 제09-464호(2009.11.26)	지정목적달성	
보성	율어	선암	704	403	150	사방댐	전남고시 제09-464호(2009.11.26)	지정목적달성	
보성	율어	선암	684	810	65	사방댐	전남고시 제09-464호(2009.11.26)	지정목적달성	
회순	청풍	이만	229	360	99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회순	청풍	이만	산56	123,533	912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회순	청풍	이만	산40	74,579	1,46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토 지 소 재 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화순	청풍	이만	산29	106,810	16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화순	한천	오음	산1-1	1,864,959	1,000	산지사방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화순	남	유마3	319	1,127	45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화순	남	유마3	400	23,745	2,005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화순	남	유마3	402	119	3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화순	남	유마3	322-1	1,993	53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화순	이서	영평	산16-2	15,669	94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화순	이서	영평	산14	16,562	28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화순	이서	영평	93	209,335	84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화순	이서	영평	909	50,331	3,27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화순	남	유마1	산1-1	2,405,653	7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화순	남	유마1	400	23,745	82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화순	남	유마1	401	1,693	6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화순	남	유마2	산1-1	2,405,653	5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화순	남	유마2	400	23,745	1,21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화순	남	벽송	산116	70,017	19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화순	남	벽송	891	12,061	3,789	사방댐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화순	이양	증리	460	687	176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토 지 소 재 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회순	이양	증리	928	2,033	434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회순	이양	증리	산181-1	130,222	31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회순	이양	증리	459	298	123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회순	이양	증리	453	95	251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회순	도암	봉하	505	1,018	258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회순	도암	봉하	506	9,537	2,481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회순	남면	대곡	714	31,541	1,171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회순	남면	대곡	289	3,557	46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회순	남면	대곡	288	1,716	28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회순	회순	이십곡	산198	10,940	76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회순	회순	이십곡	산198-6	1,295	173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회순	회순	이십곡	산316-1	85,190	717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회순	한천	정우	산316-1	20,826	221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회순	춘양	양곡	산57	19,829	111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회순	도곡	천암	산103	8,826	560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회순	도곡	천암	산100	65,752	72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회순	도곡	원화	산115-2	24,977	120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회순	동북	신율	산112	28,760	958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토 지 소 재 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화순	동북	한천	산57	24,263	283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화순	동면	서성	산13-1	66,624	1,110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화순	동면	서성	산131	23,257	216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화순	동면	청궁	산57	62,253	1,695	산사태복구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장흥	대덕	신월	948-2	714	74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장흥	대덕	신월	산102-4	25	25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장흥	대덕	신월	955	4,608	11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장흥	대덕	신월	산102-5	6,089	1,573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장흥	대덕	신월	952	1,669	72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장흥	관산	용전	산147-11	629,746	1,712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장흥	안양	당암	산46-1	2,206,135	9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장흥	안양	당암	산46-11	9,424	95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장흥	안양	당암	산46-8	50,000	1,59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장흥	장동	만년	산71	155,558	126	산사태예방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장흥	장동	만년	392	377	70	산사태예방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장흥	장동	만년	393	2,658	10	산사태예방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장흥	장동	만년	399	1,772	32	산사태예방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장흥	장동	만년	769	3,792	938	산사태예방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토지소재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장흥	유치	대천	산198	233,157	3,160	산지보전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장흥	용산	운주	산65-2	1,013,800	551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장흥	용산	운주	산65-8	414,149	4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장흥	용산	운주	941-8	111,303	1,22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장흥	용산	운주	893-1	1,296	5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장흥	용산	운주	894	79	26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장흥	용산	운주	896	1,187	27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장흥	관산	부평	산108	3,669	39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장흥	관산	부평	산109-1	566,876	21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장흥	관산	부평	산110	32,529	518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장흥	장동	용곡	산101	2,031	771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장흥	장동	용곡	278	169	81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강진	칠량	명주	산49-1	3,625,686	55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강진	칠량	명주	22	331	137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강진	칠량	명주	산233	1,296	19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강진	칠량	명주	21	5,750	59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강진	강진	송덕	산51	12,992	1,32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강진	강진	송덕	200-5	11,628	54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토 지 소 재 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강진	도암	만덕	228	774	285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강진	도암	만덕	산58-1	6,466	79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강진	도암	만덕	853-3	4,019	714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해남	계곡	가학	산1	3,567,306	2,123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해남	계곡	가학	산1	3,567,306	2,123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해남	현산	덕흥	산133	30,446	891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해남	현산	덕흥	802	163,970	668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해남	송지	서정	산247	1,128,742	1,567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해남	마산	장촌	48	760	93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해남	마산	장촌	49	542	23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해남	마산	장촌	738	65,906	1,574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해남	북평	동해	산63-1	595	338	사방댐	전남고시제09-442호 (2009.11.10)	지정목적달성	
해남	북평	동해	산77-1	6,347	425	사방댐	전남고시제09-442호 (2009.11.10)	지정목적달성	
해남	북평	동해	산63	10,215	509	사방댐	전남고시제09-442호 (2009.11.10)	지정목적달성	
해남	송지	서정	산298-1	16,467	868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영암	금정	쌍호	산1-1	16,760	21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영암	금정	쌍호	360	1,300	145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영암	금정	쌍호	2	3,712	497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토 지 소 재 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영암	금정	쌍호	3	228	9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영암	신북	명동	산160-1	411,768	923	사방댐	전남고시제09-258호 (2009.06.01)	지정목적달성	
영암	영암	회문	산1	26,182	57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영암	영암	회문	산27	5,752	30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영암	영암	교동	430-11	11,399	1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영암	영암	농덕	산50-3	920,119	338	사방댐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영암	영암	농덕	산56	587,405	8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영암	영암	농덕	1213	34,903	620	사방댐	전남고시제09-282호 (2009.06.19)	지정목적달성	
영암	영암	한대	산12	284,628	3,249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영암	영암	한대	산136	1,396	132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영암	영암	한대	386	1,051	46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영암	영암	한대	387	175	83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영암	영암	한대	775	1,338	242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무안	청계	청천	산70-3	12,595	493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무안	청계	청천	산66	65,950	1,067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함평	대동	향교	산1-1	987,274	2,306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함평	대동	향교	산1-3	4,562	143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함평	해보	금계	산50-2	103,377	46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토 지 소 재 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함평	해보	금계		49,388	1,363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영광	대마	성산	33-5	9,799	251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영광	대마	성산	산22	24,595	1,22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영광	대마	성산	22	179,009	56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영광	대마	성산	26	15,372	36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영광	대마	성산	1313	36,604	220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영광	묘량	월암	1551-3	6,666	299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영광	묘량	월암	836	447	56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영광	묘량	월암	808	1,171	135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영광	묘량	월암	815-1	8,627	140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영광	묘량	월암	1548	4,789	667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영광	묘량	월암	813	145	27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영광	묘량	월암	807	433	43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영광	묘량	월암	814	367	36	사방댐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장성	서삼	대덕	산106	97,984	148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장성	서삼	대덕	산120	35,405	753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장성	서삼	대덕	산120-1	9,722	603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장성	북하	중평	715	1,015	533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토지소재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장성	북하	중평	산88-2	3,571	25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장성	북하	중평	산79	115,636	74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장성	북하	중평	산88	107,702	204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장성	북하	중평	산89	50,182	17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장성	북하	중평	228	1,769	468	사방댐	전남고시제09-151호 (2009.03.31)	지정목적달성	
장성	북일	문암	산204	14,281	167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장성	북일	문암	산205	35,239	18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장성	북일	문암	산220	32,826	161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장성	북일	문암	산220-1	2,976	633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장성	북일	문암	산221	18,942	366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장성	서삼	모암	산22	24,198	57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장성	서삼	모암	산24	35,603	70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장성	서삼	모암	515-3	958	164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장성	서삼	모암	산26	1,884	82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장성	서삼	모암	산28	12,000	26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장성	서삼	모암	산147	101,355	36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장성	서삼	모암	686-1	52,231	587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장성	동화	구룡	산31	85,785	406	사방댐	전남고시제09-442호 (2009.11.10)	지정목적달성	

토 지 소 재 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장성	동화	구룡	산32	57,917	104	사방댐	전남고시제09-442호 (2009.11.10)	지정목적달성	
완도	보길	부황	산97-1	48,945	1,780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완도	보길	부황	산100	9,719	355	사방댐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완도	보길	부황	산97-1	48,945	336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완도	보길	부황	산100	97,119	840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완도	보길	부황	산103	33,421	88	계류보전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완도	완도	중도	산102-8	1,388	380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완도	완도	중도	산102-13	8,430	585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완도	완도	중도	427-1	553	25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완도	완도	중도	430-9	2,532	45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완도	완도	중도	431	307	65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완도	완도	중도	433-1	5,185	155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완도	완도	중도	433-2	1,909	5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완도	완도	중도	433-3	926	45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완도	완도	중도	433-9	264	90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완도	완도	중도	1499	76	5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완도	완도	중도	400-2	43	5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완도	완도	중도	1476	22,132	75	계류보전	전남고시 제09-473호(2009.12.14)	지정목적달성	

토지소재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진도	임회	용호	1344	113,445	1,362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진도	임회	용호	산209	25,785	416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진도	임회	용호	1372	899	95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진도	의신	칠전	산5	16,066	107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진도	의신	칠전	산103-1	595	101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진도	의신	칠전	산103	9,620	361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진도	의신	칠전	179	3,841	39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진도	의신	칠전	산4	16,463	1,715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진도	임회	용호2	1259	545	84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진도	임회	용호2	1243	1,600	98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진도	임회	용호2	산173	25,983	106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진도	임회	용호2	1344	113,445	598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진도	임회	용호2	1242	281	135	사방댐	전남고시제09-224호 (2009.04.29)	지정목적달성	
진도	의신	사천	산10	8,926	121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진도	의신	사천	산11	6,737	1,207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진도	의신	사천	산12	10,847	47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진도	의신	사천	산20	33,078	402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진도	의신	사천	산20-2	6,349	2,194	산림유역관리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토 지 소 재 지				면적 (㎡)	사방지 지정			해제사유 (법조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사업종	고시번호 및 일자		
신안	비금	구림	785-54	27,956	9,200	해안방재림	전남고시제09-132호 (2009.03.19)	지정목적달성	
신안	암태	도창	산12	7,240	294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신안	암태	도창	산47	4,066	16	사방댐	전남고시제09-204호 (2009.04.08)	지정목적달성	
신안	압해	분매	89-8	9,710	458	해안침식지복구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신안	압해	분매	643-27	7,557	18	해안침식지복구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신안	압해	분매	공유수면	0	1,896	해안침식지복구	전남고시제09-318호 (2009.07.20)	지정목적달성	

전라남도 공고 제2016-22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공고) 규정에 의거 신규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현황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정보통신공사업 (제610240호)	(주)한영기전	이명재	전남 여수시 신기북5길 7 (신기동)	2016.3.3.	

전라남도 공고 제2016-230호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 공고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97(2015.12.30.))하여 개정내용을 반영한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16 - 162호. 2016.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1. 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1~10(설계용역), 별표2-1~8(건설사업관리용역), 별표3-1(정밀점검 및 정밀진단) : 게재 생략
 - ※ “전라남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공지사항” 및 “전라남도 홈페이지/실과 홈페이지(지역계획과)/자료실” 에 게재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별표2]에서 [별표4]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용역업자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 ① 용역업자 세부평가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사업분야별(도로, 하천, 항만,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 도시개발, 산림, 조경, 건축분야)로 각각 별표 (별표1-1~10(설계), 별표2-1~8(건설사업관리), 별표3-1(정밀점검 및 정밀진단))에 의하여 분야별로 적용한다.
- ②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세부평가기준(별표)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 이행 필요)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과도한 제한 및 당해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안전행정부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법 제5조 및 영 제17조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이 세부평가기준의 사업분야를 추가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타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전라남도에 위치한 시·군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⑤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영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 진위를 확인하고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업무중복도 평가항목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⑦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없는 가·감점 평가항목을 신설할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한다.

② 발주청은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2.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를 입찰공고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입찰참여 제한 참여업체수를 PQ평가점수 상위 10개 업체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97호(2015. 12. 30))』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2016. 1. 19))』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고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규정은 공고일 이후에 최초로 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공고한 설계 등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기타 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기준을 따른다.
- ④ 국토교통부 고시, 행정자치부 예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 ⑤ (적용특례) 이 규정 제3조제 1항 별표에 명시된 분야 이 외 분야인 경우, 별표의 유사한 분야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조의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자 평가 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⑦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공고 제2016-234호

발굴 매장문화재 소유자 유·무 확인 공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관내에서 발굴조사 하여 출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유·무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1. 소유자 유·무 확인 대상 발굴 매장문화재 : 다음
2. 공고기간 : 2016. 3. 10 ~ 2016. 3. 17
3. 발굴매장문화재 열람 장소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4. 소유권 주장 관련 자료제출

발굴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후 9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지사(참조 : 문화예술과장, 전화 061-286-5443, FAX 061-286-4772)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소유자 유·무 확인 대상 발굴 매장문화재

연번	유물명	수량	조사지역(유적명)	조사기관, 보관처	조사기간
1	백자저부편 등	3점 (1상자)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9 일원 (진도읍성)	전남문화재연구원	2015.11.2~2016.1.1
2	병 등	20점 (36상자)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505-2 일원 (나주 몽탄-동강 도로구간 내 유적)	대한문화재연구원	2014.12.10~2015.9.30
3	분청사기 접시 등	93점 (6상자)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산30일원 (영암 상월리 도요지)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4.9.23~12.5
4	기와 등	4점 (1상자)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20-2 (순천 송광사 후토기와.전 도요지)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4.12.4~2015.2.26
5	청자불상편 등	11점 (2상자)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산207-7 (강진 석문리 용혈암)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5.1.5~2.6
6	수기와 등	4점 (1상자)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739 일원 (장흥 천관사 주불전지 유적)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5.1.12~3.23
7	분청사기 발 등	8점 (1상자)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산24-1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2014-892>)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5.1.6~7.5
8	백자접시 등	19점 (6상자)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1 일원 (순천 송광사 보조암지 유적)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5.4.2~7.1
9	줄무늬병 등	17점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 (영암 구림리 요지<2015-174>)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5.4.1~7.16
10	백자편 등	5점 (1상자)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20-2 일원 (장성 입암산성 수증보 유적)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5.4.16~8.20
11	백자종지 등	4점 (4상자)	나주시 산정동 1-3 일원 (나주읍성 정비지 내 유적<2015-143>)	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15.6.26~11.2
12	석축 등	6점 (6상자)	순천시 용당동 714 일원 (순천 용당 도시개발지 내 유적)	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15.11.16~2016.1.21
13	단경호 구연부편 등	266점	곡성군 옥곡면 구성리 84-2 일원 (곡성 구성 독높이기사업지 내 유적)	가경고고학연구소	2013.3.13~2014.2.26

전라남도 공고 제2016-244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공고)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0

전라남도지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 현황

구 분	상 호	대표자	등록업종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합병 대상법인	(주)엔에스원	이남식	정보통신공사업 (제610169호)	전남 광양시 중마청룡길11
	한국경보(주)	이남식		
합병 후 존속법인	한국경보(주)	이남식	정보통신공사업 (제610169호)	전남 광양시 중마청룡길11

양도(분할합병) 수리일 : 2016. 3. 04.

목포시 고시 제2016-31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8호)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시 상동 86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8호)사업 【사업명 : 목포 동화주차빌딩 신축공사】의 건축규모 및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3. 10

목포시장

■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

구분 항 목	고 시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위 치 : 목포시 상동 869-3번지(우리은행 인근)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8호)사업 ○ 사업명칭 : 목포 동화주차빌딩 신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대지면적 : 1,549.80㎡ ○ 건축면적 : 1,242.21㎡ ⇒ 1,234.43㎡(감 7.78㎡) ○ 연 면 적 : 4,357.28㎡ ⇒ 4,991.86㎡(증 634.58㎡) ○ 주 용 도 : 주차장(4,357.28㎡) ⇒ 주차장(4,799.32㎡), 소매점(192.54㎡)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골조 ○ 층 수 : 지하1층/지상3층 ⇒ 지상5층 ○ 주차대수 : 163대 ⇒ 167대(일반형 89, 확장형 71, 장애인 7)	변 경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목포시 산정동 1393-1번지 ○ 성명 : (유)동화주택건설 대표 양권춘	
5.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일	○ 당 초 : 2015. 04. 02. ~ 2016. 03. 31. ○ 변 경 : 2015. 04. 02. ~ 2016. 06. 30.	변 경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목포시 상동 869-3번지(주차장, 1,549.80㎡)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 생략(목포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변 경
8. 실시계획(변경) 공람·공고 완료	○ 공고기간 : 2016. 02. 18. ~ 2016. 03. 03. ○ 공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9. 기타 문의	○ 전화 061-270-8414(목포시청 도시계획과)	

목포시 공고 제2016-215호

목포 도시계획시설(목포해양대학교/창고)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1. 목포시 죽교동 57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사업명 : 목포해양대학교 창고동 증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3. 10

목포시장

■ 실시계획(변경) 내용

구분	항 목	공 고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죽교동 57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목포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사업명칭: 목포해양대학교 창고동 증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175,088㎡ ○ 건축면적: 당초 25,359.17㎡ ⇒ 변경 25,602.17㎡(증 243㎡) ○ 연 면 적: 당초 79,134.59㎡ ⇒ 변경 79,377.59㎡(증 243㎡) ○ 급회사업분: 창고동 증축 - 건축면적 : 243㎡ - 연 면 적 : 243㎡ - 용 도 : 교육연구시설(창고) - 구 조 : 일반철골구조 - 층 수 : 지상 1층(1동)	변 경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목포시 해양대학로 91(죽교동) ○ 성 명 :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16. 03. ○ 준공예정일 : 2017.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다음	
	7. 실시계획(변경) 관계 도서	○ 게재 생략(목포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8. 실시계획 열람공고	○ 공람일자 : 2016. 03. 10. ~ 03. 24.(14일간) ○ 공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9. 기타 문의	○ 전화 061-240-7091 (목포해양대학교 사무국) ○ 전화 061-270-8414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토지조서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1	498-9	도로	2	2		목포시				
2	498-10	임야	60	60	광주시 서구 금호동 738-2우미@104-1404호	김문자				
3	498-95	도로	6,717	6		목포시				
4	562-2	잡종지	382	382		교육과학기술부				
5	562-3	전	1,633	397	남양주시 도농동2-1 부영그린타운304-204	전제원				
6	562-9	전	96	36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56-5101호	이정선				
7	562-22	전	1,253	1,253	목포시 죽교동 506-29번지	김광태	지분:1/4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가압류	
						김광철	지분:1/4			
						김행선	지분:1/4			
						김광문	지분:1/4			
8	562-38	학교	71	71		교육과학기술부				
9	562-56	전	53	25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56-5101호	이정선				
10	562-57	전	26	26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56-5101호	이정선				
11	562-61	전	79	10	목포시 죽교동 503번지	임병렬				
12	562-62	전	36	9	목포시 죽교동 503번지	임병렬				
13	562-67	도로	301	23		목포시				
14	562-69	도로	23	14	목포시 죽교동 503번지	임병렬				
15	562-75	전	12	12		국토해양부				
16	562-79	도로	40	15		목포시				
17	562-80	도로	26	26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56-5101호	이정선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18	562-81	전	1,344	905		교육과학기술부				
19	562-83	전	1,927	1,209	옥주군 임파면 술산리 464-2번지	이양구	지분:1/2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80-10번지	이경희	지분:1/2			
20	562-84	대	990	990		교육과학기술부				
21	562-93	전	16	16		교육과학기술부				
22	562-95	전	1	1	목포시 산정동1790-24 은하맨션502호	조광표	목포시 용당동 1095-6 번지	목포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근저당 설정	
23	562-96	전	271	271		교육과학기술부				
24	562-97	전	2,397	2,397		교육과학기술부				
25	564-21	전	15	11		목포시				
26	564-22	전	10	10		목포시				
27	564-28	도로	18	1		목포시				
28	565-1	도로	46	16	해안동1가 10	북전농사(주)				
29	567-1	도로	7	7		국토해양부				
30	568-1	도로	36	20		국토해양부				
31	571	학교	121,572	121,411		교육과학기술부				
32	571-87	학교	2,281	2,281		국토해양부				
33	571-89	도로	1,479	1,479		목포시				
34	571-92	잡종지	3,163	3,163		국토해양부				
35	571-94	도로	17	17		교육과학기술부				
36	571-95	도로	34	34		교육과학기술부				
37	571-98	잡종지	1,097	1,097		국토해양부				
38	665	도로	40	40		국토해양부				
39	665-2	도로	136	136		국토해양부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40	665-4	도로	994	89		국토해양부				
41	665-5	도로	6	5		국토해양부				
42	665-6	도로	36	5		국토해양부				
43	666	도로	253	61		국토해양부				
44	666-1	도로	1,625	43		국토해양부				
45	666-3	도로	35	35		국토해양부				
46	667	도로	2,162	922		국토해양부				
47	571-99	잡종지	3,224.8	3,221		교육과학기술부				
48	571-100	학교	40,561.3	32,194		교육과학기술부				
49	498-109	임야	388	117		기획재정부				
50	498-110	도로	720	197		기획재정부				
51	465-176	도로	1,261	10		기획재정부				
52	465-177	임야	2,137	302		산림청				
53	666-2	도로	11	8		국토해양부				
합계		53필지		175,088						

여수시 공고 제2016-416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 열람 공고

여수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10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여수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나. 명 칭 : 도시계획도로(중로1-21호선)개설 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중로 1-21호 : B=20m, L=414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삼부토건(주)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남금석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년월일 : 2016. 3.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 나. 준공예정년월일 : 201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 생략
7.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8. 공람기간 : 2016. 3. 10 ~ 2016. 3. 24(14일간)
9. 공람장소 :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고시 제2016-30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10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오천동 42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명 칭	종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규 모	주소	성명	
도시계획도로 (소로2-847호선) 개설사업	도로	소로 2-847	A = 2,221㎡ L = 225m B = 8-12m	순천시 가곡길 12(가곡동)	(주)개산 양선승	실시계획인가 ~ 2017. 12. 3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다음
4. 관계도서는 순천시 도시과(☎061-749-631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총계			35,990.7	2,221.0			
1	오천동	427 - 1	임	10,440.0	972.0	순천시 오산길 89(오천동)	양선승	
2	오천동	427 - 2	전	1,160.0	60.0	순천시 오산길 89(오천동)	양선승	
3	오천동	427 - 5	도	60.0	60.0	순천시 동외동 180	김창주	
4	오천동	427 - 6	도	294.0	294.0	순천시 동외동 180	김창주	
5	오천동	428 - 1	잡	886.0	40.0	순천시 오천동 432	김인천	
6	오천동	428 - 2	잡	36.0	15.0	순천시 오천동 432	김인천	
7	오천동	940	도	22,113.0	623.0		국(건설부)	
8	오천동	944	도	1,001.7	157.0		국(농림부)	

순천시 공고 제2016-331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합니다.

2016. 3. 10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위 치	명 칭	종류	규 모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면 적	연장 및 폭	주 소	성 명	
별량면 쌍림리 805-53	별량 상림~ 반곡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도로	중로 3-34	12,297㎡	L=745m(12m)	장명로 30	순천시장 (도로과장)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다음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순천시 도시과(☎061-749-631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별량면 봉림리	산22-12	임야	133	4	변야무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190-3	(합)합동상호 신용금고		근저당권	
2	별량면 봉림리	산22-14	임야	1,530	44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송강	순천시 연향동 1362-5				
3	별량면 봉림리	70	전	271	157	한승희	순천시 별량면 별량길 62				
4	별량면 봉림리	산21-9	임야	635	23	남홍백	순천시 별량면 동송리 372				
5	별량면 봉림리	70-1	전	140	58	남홍길	순천시 석현동 7 주공아파트 205-507				
6	별량면 쌍림리	728-3	전	102	78	채귀석	여수시 교동 205				
7	별량면 쌍림리	산108-1	임야	12,902	112	채귀석	여수시 교동 205				
8	별량면 쌍림리	728-2	전	879	170	채귀석	여수시 교동 205				
9	별량면 쌍림리	728-1	전	231	98	채귀석	여수시 교동 205				
10	별량면 쌍림리	728	전	853	15	채귀석	여수시 교동 205				
11	별량면 봉림리	60-4	도로	3	3	김양수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102				
12	별량면 봉림리	48-4	답	581	104	김영란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 298, 102동 302호				
13	별량면 봉림리	48-1	답	208	58	김영란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 298, 102동 302호				
14	별량면 봉림리	49-3	답	965	50	정후남	순천시 덕월3길 16, 다동 801호 (덕월동, 신보아파트)				
15	별량면 봉림리	47	전	76	55	정만복	순천시 석현동 183-11				
16	별량면 봉림리	46	전	521	184	정형남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70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7	별량면 쌍림리	723-2	전	344	3	김정심	순천시 별량면 상림길 163				
18	별량면 쌍림리	711-1	전	338	5	정영호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755	순천한고을 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19	별량면 봉림리	45	전	202	109	윤안숙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715				
20	별량면 쌍림리	711	전	142	38	정재홍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505				
21	별량면 봉림리	44	대지	119	45	김진식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44				
22	별량면 봉림리	42-3	대지	182	13	김진식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44				
23	별량면 봉림리	42-2	대지	264	28	조길영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42-2				
24	별량면 봉림리	43	대지	162	112	조길영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42-2				
25	별량면 봉림리	37-2	답	20	20	이행우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88				
26	별량면 봉림리	32-10	답	1,240	110	김두식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234				
27	별량면 봉림리	32-8	답	1,256	85	남의 차량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278				
28	별량면 봉림리	32-6	답	2,334	47	정명철	여수시 신월동 대주아파트 102동 1203호				
29	별량면 봉림리	32-5	답	2,093	18	황양진	순천시 덕월동 436-14				
30	순천시 봉림리	산24-3	철도 용지	1587	139	건설부					
31	순천시 봉림리	60-2	철도 용지	4565	82	건설부					
32	순천시 쌍림리	728-4	도로	149	96	승주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33	순천시 쌍림리	산108-8	도로	189	19	승주군					
34	순천시 봉림리	1244	도로	8149	2654	건설부					
35	순천시 봉림리	67-2	도로	830	753	건설부					
36	순천시 봉림리	66-3	도로	99	99	건설부					
37	순천시 봉림리	68	도로	284	60	건설부					
38	순천시 봉림리	60-12	도로	413	413	건설부					
39	순천시 봉림리	1242-2	구거	908	490	건설부					
40	순천시 봉림리	60-3	도로	625	625	건설부					
41	순천시 봉림리	48-3	도로	953	953	건설부					
42	순천시 봉림리	47-1	도로	504	489	건설부					
43	순천시 봉림리	46-1	도로	170	170	건설부					
44	순천시 쌍림리	805-6	도로	1097	674	건설부					
45	순천시 봉림리	1241-2	도로	2846	1335	건설부					
46	순천시 봉림리	1276-9	구거	542	240	농림부					
47	순천시 쌍림리	805-5	도로	962	438	건설부					
48	순천시 쌍림리	808-3	구거	1081	252	농림부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

일련 번호	물건의 표시		편입지장물 종 류	규격 및 수량		지장물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장물 소재지	지번		규격	수량	주 소	성 명	
1	별량면 봉림리	44-1	건물	조립식판넬	32.12㎡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44	김진식	
			가추	조립식판넬	5.75㎡			
			대문	철대(1.4*3.2)	4.48㎡			
			담장	블록(0.15*5.0*1.7)	8.5㎡			
			담장	(1.4*4+21*1.4)	35㎡			
			계단		1식			
			감나무		1주			
			소나무		12주			
			모과나무		1주			
			동백나무		3주			
			편백		1주			
			무화과나무		1주			
			자두		1주			
			석류		1주			
			황칠나무		1주			
			단풍		1주			
			치자		1주			
			목련		1주			
			비파		1주			
			괭괭이		2주			
			병꽃		1주			
			능소화		1주			
			보리수		1주			
			팔손이		1주			
			해당화		1주			
			블루베리		5주			
			꽃사과		1주			
			무궁화		2주			
			철쭉		4주			
			금목서		1주			
돈나무		1주						
단풍		1주						
화단	자연석	1식						
영업보상	상림기공	1식						
간판		2ea						

일련 번호	물건의 표시		편입지장물 종 류	규격 및 수량		지장물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장물 소재지	지번		규격	수량	주 소	성 명	
2	별량면 봉림리	42-4	동백나무		3주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42-2	조길영	
			감나무		5주			
			편백나무		3주			
			철쭉		30주			
			복숭아		1주			
			금목서		4주			
			팔손이		1주			
			울타리	돈나무라라칸샤	20m			
			남천		6주			
			석류		1주			
			무궁화		2주			
			대문기둥	블록 (0.4*0.6*2.2)	lea			
			대문	철재(2.8*2.1)	lea			
			담장	블록 (0.15*1.8*0.4)	7.2㎡			
			간판		lea			
			울타리	철조망	12m			
대문	철재(2.8*2.1)	1식						
벌통		11군						
3	별량면 봉림리	32-16	하우스	비닐하우스 (13.4*6.3)	84.42㎡	순천시 별량면 장기길 2	김승선	
			하우스	비닐하우스 (6.9*3.8)	22.8㎡			
			물통		lea			
			간이화장실		lea			
			기름탱크		1식			
			동산이전비		1식			
			관정	소형계량기 포함	1식			
			장옥		1식			
			소나무		1주			
4	별량면 봉림리	70-3	향나무		26주	순천시 별량면 별량길 62	한승희	
			사철		60m			
5	별량면 봉림리	산22-16	울타리	광나무사철	69m	순천시 연향동 1362-5	유한희 사송강	
6	별량면 봉림리	47-3	매실		3주	순천시 석현동 183-11	정만복	

일련 번호	물건의 표시		편입지장물 종 류	규격 및 수량		지장물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장물 소재지	지번		규격	수량	주 소	성 명	
7	별량면 봉림리	49-4	야왜나무		100주	순천시 덕월3길 16, 다동 801호 (덕월동, 신보아파트)	정후남	
8	별량면 봉림리	48-8	향나무		1주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 298, 102동 302호	김영란	
			황칠나무		16주			
9	별량면 봉림리	46-2	매실		40주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706	정형남	
10	별량면 봉림리	45-1	매실		6주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715	윤인숙	
11	별량면 봉림리	70-4	살구나무	50년	1주	순천시 석현동7 주공아파트 205-507	남홍길	
			감나무	20년	4주			
			단풍	35년	1주			
			사철	5년	2주			
			동백나무	20년,15년	2주			
			백일홍	10년	20주			
			매실	29년	4주			
			느티	30년,5년	11주			
			향나무	30년,5년	1주			
			사철		2주			
			관정	중형	1식			
			장옥	판넬 15*2	1식			
			동백	25년생	5주			
			동백	25년생	14주			
12	별량면 쌍림리	728-8	간판	우리종합건설	1식	순천시 별량면 반곡길 39	남상기	
			자귀나무		2주			
			감나무		5주			
			석류		218주			
			산수유		104주			
			매실		248주			
			복숭아		5주			
			뽕나무		112주			
			드릅		3주			
			모과		27주			
			추백		3주			
			배		3주			
			철쭉		56주			

일련 번호	물건의 표시		편입지장물 종 류	규격 및 수량		지장물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장물 소재지	지번		규격	수량	주 소	성 명	
12	별량면 쌍림리	728-8	백일홍	R10:100주, R2:1000주	1100주	순천시 별량면 반곡길 39	남상기	
			피라칸샤		10주			
			취퐁나무		211주			
			돈나무		1주			
			아왜나무		12주			
			소나무		28주			
			취퐁나무		30주			
			동백나무		4주			
			백일홍		10주			
			후박나무		12주			
			감나무		12주			
			사철		3주			
			매실		3주			
			남천		9주			
13	별량면 봉림리	산108-9	소나무		2주	여수시 교동 205	채귀석	
			편백		1주			

나주시 고시 제2016-23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271-2번지 일원 국립나주박물관 자재창고 신축 및 야외체험학습장 조성공사를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협의로 처리된 나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10

나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27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나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 명 칭 : 국립나주박물관 자재창고 신축 및 야외체험학습장 조성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역사문화시설용지	소 계	17,224	17,224	
	박물관	6,390	6,390	
	야외공연마당	2,747	2,747	
	잔디마당 야외전시장	8,013	8,013	
	체험시설	74	74	
공공시설용지	소 계	10,732	11,297	증 565m ²
	관리동	205	770	증 565m ²
	주차장	4,135	4,135	
	도로	1,198	1,198	
	산책로 및 순환도로	5,194	5,194	
녹지시설용지	소 계	46,316	45,751	감 565m ²
	습지생태원	330	330	
	녹지	9,377	9,377	
	조성녹지	36,609	36,044	감 565m ²
합 계		74,272	74,272	

○ 건축계획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본관동	지하2층	5,092.84	5,092.84	
	지하2층(중층)	113.97	113.97	
	지하1층	4,074.04	4,074.04	
	지상1층	1,725.00	1,725.00	
옥외화장실		72.85	72.85	
경비실		20.94	20.94	
자재창고		65.00	240.00	증 175m ²
아외체험장		60.72	60.72	
합 계		11,225.36	11,400.36	증 175m 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립나주박물관장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47(국립나주박물관 내)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15. 4. 29.

○ 준공예정일

- 당 초 : 2015. 12. 30.

- 변 경 : 2016. 12.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게재생략(변경없음)

7. 인가조건

가. 준공예정일 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 완료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편입토지 중 일부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는 향후 문화시설(국립나주 박물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전 관리전환 하고,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하시기 바랍니다.(권장)

8.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나주시 도시과 및 건축허가과 비치)

9.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0. 변경사유 : 자재창고 증축 및 이축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도시과(061-339-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고시 제2016-24호

나주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나주시 대호동 252번지 일원 동신대학교 조성사업의 나주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과 관련하여 “나주IC~동신대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등에 따른 부지면적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과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10

나주시장

1.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나주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 칭

- 당 초 : 동신대학교(학생기숙사 신축 등)

- 변 경 : 동신대학교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면 적 : 606,893㎡ → 602,423㎡

○ 규 모

구분	당초		변경		변경 후		비고
	동수	건축연면적	동수	건축연면적	동수	건축연면적	
건물	34	138,757.15	1	611.19	35	139,368.34	■기 인가 건축물 (학생생활관(4)) 면적 정정 : △163.21㎡ ■경미한 사항 건축허가 (산학협력관(2)) : 774.40㎡
시설물	5	79,487.80		-	5	79,487.80	
합계	39	218,244.95	1	611.19	40	218,856.1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 해인학원 이사장 문기정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252번지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2011. 9. 9. ~ 2015. 12. 31.
- 변 경 : 2011. 9. 9. ~ 202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7. 인가조건 : 게재생략

8. 변경사유

- 나주IC~동신대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및 국유지 매입의 분할 및 등 록전환에 따른 측량오차로 부지면적 변경
- 원활한 학교시설 조성 및 토지매입을 위한 준공예정일 연장

II. 도시관리계획(학교, 조성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2	동 신 대학교	대학교	나주시 대호동 252번지선	606,893	-4,470	602,423	건설부고시 제342호 1986.8.6	

○ 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총괄 조서

시설명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06,893	△4,470	602,423	100.0	
교육연구 시설용지	86,336	△945	85,441	14.2	종합대학본관 외 31개소
체육시설 용 지	93,594	-	93,594	15.5	체육관 외 5개소
교통시설 용 지	88,887	△398	88,489	14.7	도로 및 주차장
휴게시설 용 지	11,953	-	11,953	2.0	기동호수공원 및 연못
녹지용지	326,073	△3,127	322,946	53.6	조경녹지

- 세부시설 조서 : 게재생략(도시과 비치)

○ 학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동신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부지 축소 - 606,893㎡ → 602,423㎡ (△4,4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지 매입(6필지)의 분할 및 등록전환에 따른 측량오차 정정(129㎡) ■ “나주C-동신대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제척(4,34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항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III. 기 타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
3.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관계도서는 나주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1-339-8975(도시계획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시	동			당초	변경후	당초	변경후	증·감	주 소	성 명	
1	1	나주	대호	49-12	도	37,114	37,114	45	12	-33		국(건설부)	지방도편입 부지 제척
2	2	나주	대호	141	학	64,377	64,377	64,377	64,377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3	3	나주	대호	141-9	학	1,567	1,567	1,567	1,567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해 인학원	
4	4	나주	대호	174	학	169	169	169	169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5	5	나주	대호	176	학	1,604	1,604	1,604	1,604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6	6	나주	대호	177	학	78,025	78,025	78,025	78,025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7	7	나주	대호	181-1	도	20	20	4	4	-		나 주 시	
8	8	나주	대호	182-3	도	3	3	3	3	-	나주시 대호동 182	한 재 술	
9	9	나주	대호	182-4	도	17	17	17	17	-	나주시 대호동 739	이 판 압	
10	10	나주	대호	189	학	2,853	2,853	2,853	2,853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11	11	나주	대호	191	학	1,917	1,917	1,917	1,917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12	12	나주	대호	191-2	학	1,464	1,464	1,464	1,464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13	13	나주	대호	191-3	학	1,137	1,137	1,137	1,137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14	14	나주	대호	195	대	238	238	73	73	-	나주시 대호동 195	정 승 원	
15	15	나주	대호	195-1	전	182	182	182	182	-	나주시 대호동 195	정 승 원	
16	16	나주	대호	199	답	3,511	3,511	3,511	3,511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17	17	나주	대호	205	대	704	704	704	704	-	나주시 대호동 205	정 만 홍	
18	18	나주	대호	208	학	823	823	823	823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19	19	나주	대호	210	답	2,949	2,949	2,949	2,949	-	나주시 대호동 205	정 만 홍	
20	20	나주	대호	216	학	1,427	1,427	1,427	1,427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21	21	나주	대호	216-1	학	553	553	553	553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22	22	나주	대호	220	학	1,689	1,689	1,689	1,689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23	23	나주	대호	222-1	학	1,484	1,484	1,484	1,484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시	동			당초	변경후	당초	변경후	증·감	주소	성명	
24	24	나주	대호	225	학	835	835	835	835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25	25	나주	대호	225-1	도	489	489	66	66	-	나주시 대호동 194	한영례	
26	26	나주	대호	225-2	학	2	2	2	2	-		국(건설부)	
27	27	나주	대호	241-1	도	47	47	14	14	-		나주시	
28	28	나주	대호	247	전	76	76	76	76	-	광주시 서구 양동 306-38	김해김씨 시중공과대 총회	사용승락
29	29	나주	대호	248	유	5,264	5,252	5,264	5,252	-12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지방도편입 248-3분할 및 제척
30	30	나주	대호	252	학	167,771	163,530	167,771	163,530	-4241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지방도편입 252-28분할 및 제척
31	31	나주	대호	252-1	학	250	250	91	91	-		국(건설부)	
32	32	나주	대호	252-9	학	8,389	8,389	8,389	8,389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33	33	나주	대호	252-10	학	2,555	2,555	2,555	2,555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34	34	나주	대호	252-11	학	3,358	3,358	3,358	3,358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35	35	나주	대호	252-12	학	218	218	218	218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36	36	나주	대호	252-13	학	10,629	10,629	10,629	10,629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37	37	나주	대호	252-14	학	345	345	345	345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38	38	나주	대호	252-15	학	20,928	20,928	20,928	20,928	-	나주시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39	39	나주	대호	252-16	학	763	763	763	763	-	나주시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40	40	나주	대호	252-17	학	12,300	12,300	12,300	12,300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41	41	나주	대호	252-18	학	36,876	36,876	36,876	36,876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42	42	나주	대호	252-19	학	2,732	2,732	2,732	2,732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43	43	나주	대호	252-20	학	734	734	734	734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44	44	나주	대호	252-21	학	88,468	88,468	88,468	88,468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시	동			당초	변경후	당초	변경후	증·감	주 소	성 명	
45	45	나주	대호	252-24	학	167	167	167	167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해인학원	
46	46	나주	대호	252-25	학	39	39	39	39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해인학원	
47	47	나주	대호	252-26	학	192	192	192	192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해인학원	
48	50	나주	대호	262-2	대	770	770	770	770	-	광산군 비아면 쌍암리 183	김 인 주	
										-	해남군 황산면 방수리 850	김 장 식	
										-	광주시 서구 양동 317-1	김 만 재	
49	51	나주	대호	262-5	대	694	694	694	694	-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524	김 은 철	
										-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487	김 희 욱	
										-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595	김 병 학	
										-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519	김 희 준	
										-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530	김 덕 모	
										-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520	김 해 관	
50	52	나주	대호	262-10	대	86	86	86	86	-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524	김 은 철	
										-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487	김 희 욱	
										-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595	김 병 학	
										-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519	김 희 준	
										-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530	김 덕 모	
										-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520	김 해 관	
51	53	나주	대호	276-1	학	397	397	397	397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해인학원	
52	54	나주	대호	277-6	전	175	175	175	175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1157 반포아파트 49-106	김 만 석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시	동			당초	변경후	당초	변경후	증·감	주소	성명	
53	55	나주	대호	227-7	전	893	893	893	893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1157 반포아파트 49-106	김만석	
54	56	나주	대호	284-4	구	496	496	11	11	-		국 (농림수산부)	
55	57	나주	대호	285-3	구	291	291	9	9	-	광주시 서구 쌍촌동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56	58	나주	대호	389-4	구	33	33	33	33	-	나주시 과원동 81-2	나주농지 개량조합	
57	59	나주	대호	392-2	구	231	231	46	46	-	광주시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58	60	나주	대호	586-1	학	823	823	823	823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59	61	나주	대호	586-2	학	555	555	555	555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60	62	나주	대호	588	학	2,635	2,635	2,635	2,635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61	63	나주	대호	597	학	472	472	472	472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62	64	나주	대호	597-3	학	640	640	640	640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63	65	나주	대호	600	묘	526	526	526	526	-	나주시 안창동 452	나규환	
64	66	나주	대호	600-1	학	307	307	307	307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65	67	나주	대호	603-1	학	456	456	456	456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66	68	나주	대호	605	학	261	261	261	261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67	69	나주	대호	606	묘	202	202	202	202	-	나주시 중앙동 37	나채순	
68	70	나주	대호	620	묘	456	456	456	456	-	(1914.10.15 사정)	김남평	미등기
69	71	나주	대호	623-1	묘	1,428	1,428	916	916	-	광주시 동구 충장로 4가 27-4	김양춘	
70	72	나주	대호	625	학	6,438	6,438	6,438	6,438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71	73	나주	대호	626	묘	417	417	244	244	-	(1915.10.15 사정)	박재현	미등기
72	74	나주	대호	636	전	337	337	25	25	-	나주시대호동75 현대아파트 102-303	김금옥	
73	75	나주	대호	654	답	162	162	162	162	-	나주시 대호동 57	노병석	
74	76	나주	대호	657-4	전	162	162	27	27	-	나주시 송월동 1100	나주시	
75	77	나주	대호	662	학	1,531	1,531	1,531	1,531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시	동			당초	변경후	당초	변경후	증·감	주 소	성 명	
76	78	나주	대호	663-1	학	823	823	823	823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77	79	나주	대호	663-2	학	142	142	142	142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78	80	나주	대호	665-6	학	777	777	777	777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79	81	나주	대호	665-7	학	1,769	1,769	1,769	1,769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80	82	나주	대호	665-8	도	13	13	13	13	-	당초:	국(건설부)	국유지 매입 및 지목변경
					학					-	변경:	학교법인해 인학원	
81	83	나주	대호	670-2	학	2,063	2,063	2,063	2,063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82	84	나주	대호	686	전	856	856	856	856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83	85	나주	대호	687	전	1,329	1,329	1,329	1,329	-	나주시 대호동 205	박 선 례	27분의6
										-	나주시 산정동 1-1	정 명 희	27분의1
										-	나주시 대호동 205	정 명 철	27분의4
										-	나주시 대호동 205	정 관 순	27분의4
										-	나주시 대호동 205	정 명 보	27분의4
										-	나주시 대호동 205	정 명 미	27분의4
										-	나주시 대호동 205	정 성 민	27분의4
84	86	나주	대호	695-5	전	40	40	40	40	-	나주시 대호동 695-5	서 문 찬	
85	87	나주	대호	697-2	도	30	30	10	10	-	나주시 교동 21	최 계 훈	
86	88	나주	대호	697-4	답	417	417	417	417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87	89	나주	대호	698-1	도	66	66	66	66	-	당초:	국(건설부)	국유지매입 및지목변경.
					학					-	변경:	학교법인 해인학원	
88	90	나주	대호	699-3	도	224	224	7	7	-		금성시	
89	91	나주	대호	699-5	도	162	162	2	2	-		금 성 시	
90	92	나주	대호	700-1	도	13	13	13	13	-	서울 강동구 길동 391-5	손 덕 삼	
91	93	나주	대호	701-1	도	152	152	11	11	-		금 성 시	
92	94	나주	대호	706-1	도	792	792	12	12	-		나 주 시	
93	95	나주	대호	990-1	도	49	49	49	31	-18		국(건설부)	지방도편입 부지 제척.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시	동			당초	변경후	당초	변경후	증·감	주소	성명	
94		나주	대호	994	구	3,595	115	3,409	0		국(건설부)	994-8분할	
	96	나주	대호	994-8	학	0	3341	0	3341	-68	학교법인 해인학원	국유지994 에서 분할매입	
95		나주	대호	994-4	구	26,812	24,555	832	0		국(건설부)	994-9분할	
	97	나주	대호	994-9	학	0	1852	0	832	-	학교법인 해인학원	국유지 994-4에서 분할매입	
96	98	나주	대호	986	구	11,683	11,683	5	5	-	국 (농수산부)		
97	99	나주	대호	산97	임	1,438	1,438	419	419	-	나주시 노안면 양평리 252	진주강씨설 당공파문중	
98	100	나주	대호	산102-2	임	2,479	2,479	2,253	2,253	-	나주시 대호동 194	나 채 선	
99	101	나주	대호	산111	임	83	83	83	83	-	나주시 대호동 737	하산낙원	
100	102	나주	대호	산113-1	임	347	347	243	243	-		국(건설부)	
101		나주	대호	산114-8	구	207	0	207	0		당초	국 (농림수산부)	용도폐지 되어 252-29로 등록전환
	48	나주	대호	252-29	학	0	158	0	158	-49	변경:	학교법인 해인학원	국유지산 114-8에서 분할매입
102		나주	대호	산117-1	구	90	0	90	0		당초	국 (농림수산부)	용도폐지 되어 252-30로 등록전환
	49	나주	대호	252-30	학	0	78	0	78	-12	변경:	학교법인 해인학원	국유지산 117-1에서 분할매입
103	103	나주	대호	산118-2	임	397	397	397	397	-	나주시 남내동	최 진 석	
104	104	나주	대호	산121-1	임	7,869	7,869	7,869	7,869	-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191	함평이씨광 서공문중	
105	105	나주	대호	산123	임	893	893	893	893	-	광주 서구 양동 306-38	김해김씨 시중공파대 종회	
106		나주	대호	산128-1	도	23	23	9	0	-9		국(국세청)	지방도편입 부지 제척
107		나주	대호	산130-1	도	33	33	1	0	-1		국(건설부)	지방도편입 부지 제척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시	동			당초	변경후	당초	변경후	증·감	주 소	성 명	
108		나주	대호	산138-1	도	198	198	27	0	-27	나주시 대호동 252	강 상 우	지방도편입 부지 제척
109	106	나주	대호	산145-1	임	4,661	4,661	4,661	4,661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1157 반포아파트 49-106	김 만 석	
110	107	나주	대호	산147	임	15,769	15,769	15,769	15,769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111	108	나주	대호	산150	임	99	99	99	99	-	나주시 송촌동 199	전주이씨양 동공파문건 공문중	
112	109	나주	대호	산151-1	임	1,488	1,488	1,488	1,488	-		국(산림청)	
113	110	나주	대호	산151-2	임	595	595	595	595	-		국(산림청)	
114	111	나주	대호	산154	임	4,364	4,364	3,910	3,910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해 인학원	
115	112	나주	대호	산155-2	임	793	793	793	793	-	나주시 남외동 55	김 영 창	
										-	나주시 남내동 111	김 영 윤	
										-	나주시 서내동 91-2	김 영 화	
116	113	나주	대호	산157	임	1,488	1,488	1,488	1,488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117	114	나주	대호	산158-2	임	1,587	1,587	1,431	1,431	-	나주시 노안면 도산리 110	양성이씨일 시중파창휘 문중	
118	115	나주	대호	산159	임	344	344	344	344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119	116	나주	대호	산161	묘	1,385	1,385	1,385	1,385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120	117	나주	대호	산161-1	임	196	196	196	196	-	나주시 대호동 252	학교법인 해인학원	
121	118	나주	대호	산169-1	임	606	606	8	8	-	여수시 중화동 1131	방 원 익	
										-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541	방 석 진	
122	119	나주	대호	산172-1	임	27,174	27,174	167	167	-	나주시 안창동 산91	광주정씨능 파정공파은 수공문중	
123	120	나주	대호	산210-1	구	2,517	2,517	244	244	-		국 (농림수산부)	
합 계 : 당초 123필지 변경 120필지						718,058	713,200	606,893	602,423	-4,470			

지장물건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동수	구조	면적 (㎡)	용도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사항
	시	동						주소	성명	
16	나주	대호	205	1	시멘트블럭조	5.00	주택	대호동 205	정만홍	
				1	시멘트블럭조 스레트	61.56	창고			
				1	시멘트블럭조 스레트	41.16	창고 및 변소			
				1	시멘트블럭조 스레트	12.30	창고			
계			7동			120.02			1명	

나주시 고시 제2016-25호

나주 도시계획시설(시장,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나주시 삼도동 1388-3번지 일원 성북5일·금계상설시장 통합이설사업의 나주 도시계획시설(시장, 녹지)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편입 토지 정정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6. 3. 10

나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전남 나주시 삼도동 1388-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당 초 : 나주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 변 경 : 나주 도시계획시설(시장, 녹지)사업

○ 명 칭 : 성북5일·금계상설시장 통합이설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면 적(m ²)			건 축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27,338.4	감)36	27,302.4 □ 시 장 : 25,875.4 □ 완충녹지 : 1,427.0	○ 건축면적 : 4,922.75 ○ 연면적 : 4,622.69 ○ 건축물수 : 11개동	-	○ 건축면적 : 4,922.75 ○ 연면적 : 4,622.69 ○ 건축물수 : 11개동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나주시장

○ 주 소 : 나주시 시청길 22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09. 4. 10.

○ 준공예정일

- 당 초 : 2013. 3. 31.

- 변 경 : 2016.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도시과 및 경제교통과에 비치)
8. 인가조건 : 게재생략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경제안전건설국 도시과(061-330-4945) 및 경제교통과(061-339-8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당초	변경	변경 후	주소	성명	형태	주소	소유자	
1	삼도동	1386-2	답	1736	1736	0	1736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2	삼도동	1386-7	답	567	567	0	567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3	삼도동	1386-6	답	1397	1397	0	1397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4	삼도동	1386-3	답	1913	1913	0	1913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5	삼도동	1386-4	답	887	887	0	887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6	삼도동	1388-23	답	822	822	0	822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7	삼도동	1388-2	답	1901	1901	0	1901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8	삼도동	1388-3	답	787	787	0	787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9	삼도동	1388-4	답	1940	1940	0	1940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10	삼도동	1388-5	답	998	998	0	998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11	삼도동	1388-6	답	909	909	0	909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12	삼도동	1388-7	답	2311	2311	0	2311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13	삼도동	1388-8	답	1719	1719	0	1719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14	삼도동	1388-9	답	2979	2979	0	2979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15	삼도동	1388-10	답	1031	1031	0	1031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16	삼도동	1450	도로	1000	829	0	829	-	국 (농수산부)				
17	삼도동	1449	구거	506	427.4	0	427.4	-	국 (농수산부)				
18	삼도동	1451	구거	1299	764	0	764	-	국 (농수산부)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당초	변경	변경 후	주소	성명	형태	주소	소유자	
19	삼도동	1388-24	답	2150	2150	0	2150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20	삼도동	1386-26	답	47	47	0	47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21	삼도동	1386-27	답	235	235	0	235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22	삼도동	1386-28	답	149	149	0	149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23	삼도동	1386-47	답	21	21	0	21	나주시 송월동 1100	공(나주시)				10분의7
								나주시 중앙동 1-3	한수내	압류	-	광주광역시 남구	10분의3
24	삼도동	1386-5	답	149	149	△1	148	-	재정경제부				
25	삼도동	1386-30	답	52	52	0	52	-	재정경제부				
26	삼도동	1386-25	수	246	246	0	246	-	국(건교부)				
27	삼도동	1386-29	수	151	151	△20	131	-	국(건교부)				
28	삼도동	1386-48	수	64	64	△9	55	-	국(건교부)				
29	삼도동	1386-31	수	76	76	0	76	-	국(건교부)				
30	삼도동	1386-32	수	6	6	△6	0	-	국(건교부)				
31	삼도동	1386-45	수	10	10	0	10	-	국(건교부)				
32	삼도동	1386-46	답	65	65	0	65	-	공(나주시)				
합 계				28123	27,338.4	△36	27,302.4						

나주시 고시 제2016-26호

나주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나주시 이창동 765번지 “영산포풍물시장 어물전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나주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10

나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전남 나주시 이창동 76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나주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 명 칭 : 영산포풍물시장 어물전 아케이드 설치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건 축 연 면 적(㎡)			건 물 동 수		
	기 시행	금회 시행	계	기 시행	금회 시행	계	기 시행	금회 시행	계
8,063.60	1,753.08	925.04	2,678.12	1,753.08	925.04	2,678.12	26	1	2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나주시장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건축허가 기간에 준함
6. 사용할 토지조서
 - 전남 나주시 이창동 765번지(공유지-나주시)
7. 인가조건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 완료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나주시 도시과, 경제교통과, 건축허가과 비치)
9.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도시과(061-339-8975) 및 경제교통과(061-339-8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고시 제2016-28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나주시 대호동 512-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나주시 고시 제2016-221호)으로 의제 협의된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6. 3. 10

나주시장

1. 나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다음
2. 나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건축허가과(☎061-339-7792), 도시과(☎061-339-897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칠전마을	나주시 대호동 512-1번지 일원	-	증 54,549	54,549	대지조성사업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결정사유
1	칠전마을	나주시 대호동 512-1번지 일원	54,5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조성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5호에 의거 도시의 기능미관 및 제반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자연녹지지역	54,549	-	54,549	100.0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01	12	국지도로	207	대호동 463-15	소로2-01 대호동 517-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01	8	국지도로	615	중로3-01 대호동 463-13	소로2-02 대호동 464-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02	8	국지도로	189	중로3-01 대호동 463-15	중로3-01 대호동 517-11	일반도로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01	6	국지 도로	82	중로3-01 대호동 463-14	소로3-06 대호동 463-14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02	6	특수 도로	19	소로2-01 대호동 517-11	대호동 517-7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03	2	특수 도로	47	소로2-01 대호동 517-12	소로2-02 대호동 517-12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04	2	특수 도로	25	소로2-01 대호동 517-3	대호동 517-3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05	2	특수 도로	24	소로2-01 대호동 517-3	대호동 463-4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06	2	특수 도로	15	소로3-01 대호동 463-14	소로2-01 대호동 463-4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07	2	특수 도로	19	소로2-01 대호동 463-4	대호동 986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08	2	특수 도로	23	중로3-01 대호동 512-1	소로2-01 대호동 512-1	보행자 전용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	중로 3-01호선	○ 노선신설 - 폭 : 12m, 연장 : 207m	○ 주택단지 내부도로 계획에 따른 노선신설
신설	-	소로 2-01호선	○ 노선신설 - 폭 : 8m, 연장 : 615m	○ 주택단지 내부도로 계획에 따른 노선신설
신설	-	소로 2-02호선	○ 노선신설 - 폭 : 8m, 연장 : 189m	○ 주택단지 내부도로 계획에 따른 노선신설
신설	-	소로 3-01호선	○ 노선신설 - 폭 : 6m, 연장 : 82m	○ 주택단지 내부도로 계획에 따른 노선신설
신설	-	소로 3-02호선	○ 노선신설 - 폭 : 6m, 연장 : 19m	○ 주택단지 보행자도로 계획에 따른 노선신설
신설	-	소로 3-03호선	○ 노선신설 - 폭 : 2m, 연장 : 47m	○ 주택단지 보행자도로 계획에 따른 노선신설
신설	-	소로 3-04호선	○ 노선신설 - 폭 : 2m, 연장 : 25m	○ 주택단지 보행자도로 계획에 따른 노선신설
신설	-	소로 3-05호선	○ 노선신설 - 폭 : 2m, 연장 : 24m	○ 주택단지 보행자도로 계획에 따른 노선신설
신설	-	소로 3-06호선	○ 노선신설 - 폭 : 2m, 연장 : 15m	○ 주택단지 보행자도로 계획에 따른 노선신설
신설	-	소로 3-07호선	○ 노선신설 - 폭 : 2m, 연장 : 19m	○ 주택단지 보행자도로 계획에 따른 노선신설
신설	-	소로 3-08호선	○ 노선신설 - 폭 : 2m, 연장 : 23m	○ 주택단지 보행자도로 계획에 따른 노선신설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별첨(계재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합 계	33,984		-	33,984	
A1	10,188	-1	대호동 463-15 일원	431	단독주택
		-2	대호동 463-15 일원	426	단독주택
		-3	대호동 463-15 일원	599	단독주택
		-4	대호동 463-15 일원	505	단독주택
		-5	대호동 463-15 일원	529	단독주택
		-6	대호동 464-4 일원	509	단독주택
		-7	대호동 576-2 일원	923	단독주택
		-8	대호동 576-2 일원	532	단독주택
		-9	대호동 517-12 일원	529	단독주택
		-10	대호동 517-11 일원	520	단독주택
		-11	대호동 517-11 일원	561	단독주택
		-12	대호동 517-11 일원	488	단독주택
		-13	대호동 517-11 일원	520	단독주택
		-14	대호동 517-11 일원	470	단독주택
		-15	대호동 517-11 일원	469	단독주택
		-16	대호동 517-11 일원	457	단독주택
		-17	대호동 517-3 일원	749	단독주택
		-18	대호동 517-3 일원	489	단독주택
		-19	대호동 517-3 일원	482	단독주택
A2	4,058	-1	대호동 463-4 일원	453	단독주택
		-2	대호동 463-4 일원	438	단독주택
		-3	대호동 463-4 일원	432	단독주택
		-4	대호동 463-4 일원	425	단독주택
		-5	대호동 463-4 일원	450	단독주택
		-6	대호동 463-14 일원	463	단독주택
		-7	대호동 463-14 일원	467	단독주택
		-8	대호동 463-12 일원	478	단독주택
		-9	대호동 463-12 일원	452	단독주택
A3	6,048	-1	대호동 464-4 일원	518	단독주택
		-2	대호동 517-12 일원	530	단독주택
		-3	대호동 517-11 일원	514	단독주택
		-4	대호동 517-11 일원	583	단독주택
		-5	대호동 517-11 일원	537	단독주택
		-6	대호동 517-11 일원	446	단독주택
		-7	대호동 517-11 일원	447	단독주택
		-8	대호동 517-11 일원	570	단독주택
		-9	대호동 517-11 일원	513	단독주택
		-10	대호동 517-12 일원	482	단독주택
		-11	대호동 576 일원	455	단독주택
		-12	대호동 464-4 일원	453	단독주택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A4	5,085	-1	대호동 463-15 일원	486	단독주택
		-2	대호동 464-4 일원	506	단독주택
		-3	대호동 512-5 일원	481	단독주택
		-4	대호동 512-5 일원	481	단독주택
		-5	대호동 512-5 일원	508	단독주택
		-6	대호동 512-5 일원	508	단독주택
		-7	대호동 512-5 일원	481	단독주택
		-8	대호동 512-5 일원	481	단독주택
		-9	대호동 463-15 일원	514	단독주택
		-10	대호동 463-15 일원	639	단독주택
A5	10,524	-1	대호동 463-14 일원	494	단독주택
		-2	대호동 463-14 일원	511	단독주택
		-3	대호동 463-14 일원	534	단독주택
		-4	대호동 463-14 일원	561	단독주택
		-5	대호동 463-14 일원	513	단독주택
		-6	대호동 463-14 일원	482	단독주택
		-7	대호동 463-14 일원	511	단독주택
		-8	대호동 463-14 일원	493	단독주택
		-9	대호동 464-3 일원	473	단독주택
		-10	대호동 464-3 일원	481	단독주택
		-11	대호동 463-14 일원	480	단독주택
		-12	대호동 463-14 일원	482	단독주택
		-13	대호동 464-1 일원	507	단독주택
		-14	대호동 464-1 일원	503	단독주택
		-15	대호동 464-1 일원	532	단독주택
		-16	대호동 512-5 일원	503	단독주택
		-17	대호동 512-5 일원	525	단독주택
		-18	대호동 512-1 일원	479	단독주택
		-19	대호동 517-3 일원	481	단독주택
		-20	대호동 517-3 일원	481	단독주택
		-21	대호동 517-3 일원	498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지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B	3,081	-1	대호동 517-3 일원	486	단독주택, 판매
		-2	대호동 512-1 일원	511	단독주택, 판매
		-3	대호동 512-5 일원	512	단독주택, 판매
		-4	대호동 512-5 일원	505	단독주택, 판매
		-5	대호동 464-1 일원	530	단독주택, 판매
		-6	대호동 464-1 일원	537	단독주택, 판매

3) 기타용지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합 계	5,483	-	-	5,483	
C	1,062	-1	대호동 512-6 일원	1,062	커뮤니티센터
D	4,421	-1	대호동 576-2 일원	467	완충녹지
		-2	대호동 517-11 일원	3,710	완충녹지
		-3	대호동 463-14 일원	137	완충녹지
		-4	대호동 463-15 일원	107	완충녹지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공 통	공 통	배치	•주민 개방감확보 및 보행연결 축 확보, 채광을 고려 배치	
		형태	•지붕: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경사형 지붕 또는 평지붕으로써 조형적 형태의 지붕으로 계획권장 과도한 장식은 지양 •담장: 가로경관 향상 위하여 높이 1.5m이하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권장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색채	•외벽의 색깔은 원색의 사용을 지향하고 자연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접주택지와의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게 연계되도록 색채 사용	
단독주택 용지	A1~A5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공간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율	•100%이하	
		높이	•3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 (A4) (도면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용지	B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공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율	•100%이하
		높이	•3층 이하
		건축선	-
		공동이용 시설	C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3층 이하		
녹지용지	D	용도	•녹지시설(완충녹지)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차장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위 치(가구)	계 획 내 용	비 고
부설 주차장	A1~A5 B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각 획지별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는 최소 2대 이상을 설치한다. ②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니주시 주차장조례’에 의거 산정하되 최소2대 이상으로 한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이용시설

2) 대지내 통로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위치(가구)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 통로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지정(B=2m) - 보행 및 녹지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여 상시개방 한다. 	단독주택 용지 내

3) 획지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 원활한 건축행위를 유도코자 획지계획으로 계획하되 향후 나대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획지의 합병은 주택용지의 규모·형태를 고려하여 ‘인접한 1획지’에 한하여 가능
- 획지의 분할은 허용하지 않음(획지 합병 후 원필지 규모로 환원은 허용)

4) 본 결정(변경)도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 본 결정(변경)도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따르며, 관계부서(기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보고서(계획설명서)

- 게재생략 : 나주시 건축허가과 및 도시과 비치

나주시 공고 제2016-262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서류 열람 공고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3-94번지 일원 금천연동마을회관~전남과학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2류21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16. 3. 10

나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3-9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2류216호선)사업

○ 명 칭 : 금천연동마을회관~전남과학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면 적 : 1,351㎡

○ 규 모 : L=145m, B=8m

규 모				사용 형태	가능	연장(m)			기 점	중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전체 연장	기시행 연 장	금회시행 연 장			
소로	2	216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646	501	145	오강리 183-94	오강리 184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나주시장(도시과)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6.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도시과 비치)
8.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9. 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 나주시 도시과 : ☎ 061-339-8975, 8983 Fax 061-339-2826

편입용지 조서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토 지	면 적(m ²)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 고
주 소	번 지			총	편입	주 소	성 명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3-37	도	사유지	228	228.0	금천면 오강리444	한 학 례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3-94	답	사유지	1,617	66.0	금천면 오강리183	박 정 유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3	답	사유지	2,485	116.0	금천면 오강리183	박 정 유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3-38	대	사유지	73	2.0	금천면 오강리183	박 정 유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3-35	대	사유지	248	3.0	금천면 오강리171	나 영 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3-34	도	사유지	119	119.0	금천면 오강리171	김 순 애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3-1	대	사유지	116	58.0	금천면 오강리183	박 정 유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3-33	도	사유지	66	66.0	금천면 오강리171	김 성 봉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3-3	과	사유지	9,244	66.0	금천면 오강리195	정 연 순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4-2	전	사유지	228	228.0	금천면 오강리 171	나 영 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3-7	대	사유지	256	5.0	금천면 오강리195	정 연 순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67-10	도	국유지	1,050	4.0		나 주 시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3-32	도	사유지	36	36.0	금천면 오강리171	김 성 봉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4-3	도	사유지	136	136.0	금천면 오강리 171	노 소 녀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4-21	과	국유지	71	20.0		나 주 시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4	과	사유지	1,750	54.0	서울 동작구 사당로6길 5 (사당동)	윤 현 속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4-14	전	사유지	169	6.0	서울 동작구 사당로6길 5 (사당동)	윤 현 속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4-8	도	사유지	23	23.0		나 삼 성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4-4	전	사유지	20	20.0	금천면 오강리 171	노 소 녀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4-15	과	사유지	2,000	95.0	금천면 오강리184	박 동 석	
	20필지			19,935	1,351			

지장물 조서

소 재 지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3-94답			도면번호	1
소유자	주 소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3				
	성 명	박정유				
지장물 내용 및 수량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 위	수 량	비 고
창 고(지붕)		조립식	(10*9.0)*0.15	m ³	13.50	
벽체		조립식	((10+9+10) * 5.0) * 0.15	m ³	21.75	
바닥		콘크리트	(10*9.0)*0.2	m ³	18.00	
1.조립식		m ³			35.25	
2.슬래브		m ³				
3.슬레이트		m ³				
4.기와		m ³				
5.바닥		m ³			18.00	
계					53.25	
소 재 지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4-15과			도면번호	2
소유자	주 소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4				
	성 명	박동석				
지장물 내용 및 수량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 위	수 량	비 고
창 고(지붕)		슬레이트	(8.0*6.0)*0.15	m ³	7.20	
1.조립식		m ³				
2.슬래브		m ³				
3.슬레이트		m ³			7.20	
4.기와		m ³				
5.바닥		m ³				
계					7.20	

소재지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4과			도면번호	3
소유자	주소	서울 동작구 사당로6길 5(사당동)				
	성명	윤현숙				
지장물 내용 및 수량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창고지붕		슬레이트	$(12*9) * 0.15=$	m ³	16.20	
창고벽체		블록	$((12+12+9+9+) * 2.7) * 0.15=$	m ³	17.01	
바닥		콘크리트	$(12*9) * 0.2=$	m ³	4.20	
담장		블록	$(14*1.5) * 0.15$	m ³	3.15	
1.블록		m ³			20.16	
2.슬래브		m ³				
3.슬레이트		m ³			16.20	
4.기와		m ³				
5.마당		m ³			4.20	
계					40.56	
소재지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83-7대			도면번호	4
소유자	주소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95				
	성명	정연순				
지장물 내용 및 수량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담장		블록	$(20*1.7) * 0.15$	m ³	5.10	
1.블록		m ³			5.10	
2.슬래브		m ³				
3.슬레이트		m ³				
4.기와		m ³				
5.마당		m ³				
계					5.10	

구례군 고시 제2016-6호

구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6. 3. 10

구례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구례군 용방면 용방로 3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명	구분	명칭	규 모	사업기간	비고
구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	교육, 연구시설	구례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A=31,603㎡	2016. 3. ~ 2016. 1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례군수(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리 1)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6. 3. 7. ~ 준공예정일 : 2016. 1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다음
6. 관계도서 : 실음생략(구례군청 도시경제과(061-780-2482))비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 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합 계				32,184	31,603			
1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24-15	대	3,244	3,244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2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24-18	답	2,200	2,200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3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24-19	답	1,550	1,550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4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24-20	답	2,964	2,964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5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24-29	답	1,555	1,555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6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24-32	답	1,591	1,591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7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24-33	답	510	510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8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24-34	대	578	578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9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24-35	잡	1,067	1,067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10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25-13	답	1,170	1,170	구례군 용방면 두동길 12-22	김삼아	
11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25-14	답	680	68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92	조현자	
12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25-15	답	1,730	1,730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205번길	유기환	
13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25-16	답	3,000	3,000	구례군 구례읍 사동길 12-15 서울시 양천구 새곡1길 5	김형주 김진홍	
14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25-17	답	3,000	3,000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15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25-18	답	3,000	3,000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16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25-19	답	3,000	3,000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17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31-36	구	1,035	45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18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31-42	구	310	3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화순군 고시 제2016-26호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16. 3. 10

화순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115-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화순 군계획시설사업
 - 명 칭
 - 당 초 : 화순읍 도시계획도로(소로1-54호선) 개설사업
 - 변 경 : 전남기술과학고 진입로 개설공사(소로1-54호선)
3. 면적 및 규모 : 2,471㎡(연장: 257m, 폭: 10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성 명 : 화 순 군 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도시과(☎061-379-3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가.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권리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회순	회순	신기	105-3	전	3	3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92번길 28, 109동 1501호 (마전동, 검단아이파크아파트)	하현미	서울 노원구 덕릉로71길 30, 101동 2204호	홍복표	근저당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길 59	하귀임			
2	회순	회순	신기	105-2	전	14	14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92번길 28, 109동 1501호 (마전동, 검단아이파크아파트)	하현미	서울 노원구 덕릉로71길 30, 101동 2204호	홍복표	근저당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길 59	하귀임			
3	회순	회순	신기	95-4	전	94	94	회순군 회순읍 실고길 31	박연숙	광주 북구 두암동 568-5	광주농협 협동조합	근저당
4	회순	회순	신기	90-4	답	44	44	광주시 남구 백양로17번길 1	박용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광주지점)	대한보증 보험(주)	가압류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광주지점)	신용보증 기금	가압류
										서울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15층	한국리스 여신(주)	가압류
										광주 동구 대인동 7-12 (서부지점)	(주)광주은행	가압류
										서울 중구 다동 33	(주)정리금융 공사	가압류
										회순군 회순읍 동현길 23	회순군	압류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1 (광주전남지사)	한국주택 금융공사	가압류

2. 편입 지장물 조서(변경 및 추가)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권 리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1	화순 신기 105-2	담장	조적 1.5h	1식	인천광역시서구 완정로92번길28, 109동 1501호 (마전동,검단 아이파크아파트)	하현미	서울 노원구 덕릉로71길 30, 101동 2204호	홍복표	근저당
		가추	철파이프스레트	38m					
		문주	콘크리트	1주					
		담장	철파이프스레트	1식					
		울타리	철파이프	1식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길 59	하귀임			
		철대문		14㎡					
		문주	콘크리트	5㎡					
2	화순 신기 95-4	담장	벽돌 1.5h	64.5m	화순군 화순읍 실고길 31	박연숙	광주 북구 두암동 568-5	광주농협 협동조합	근저당
		철대문	철재(2짝)	1식					
		철대문	철재(1짝)	1식					
		바닥	보도블럭	14㎡					
		바닥	콘크리트	5㎡					
		우체통		1식					
		드림		5주					
		석류나무		6주					
		감나무		5주					
		자두나무		1주					
		팽팡이나무		4주					
		소나무		3주					
		은목서		1주					
		철쭉		40주					
		천리향		1주					
		장미		5주					
		매실나무		15주					
		광나무울타리		45m					
		개나리울타리		30m					
동백		1주							
눈향		1주							
3	화순 신기 90-4	컨테이너	3*9	1식	광주시 남구 백양로17번길 1	박용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광주지점)	대한보증 보험(주)	가입류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광주지점)	신용보증 기금	가입류
							서울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15층	한국리스 여신(주)	가입류
							광주 동구대인동 7-12 (서부지점)	(주)광주 은행	가입류
							서울 중구 다동 33	(주)정리 금융공사	가입류
							화순군 화순읍 동현길 23	화순군	압류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1 (광주전남지사)	한국주택 금융공사	가입류

장흥군 고시 제2016-18호

장흥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1. 장흥·관산·대덕읍 일원에 결정되어 있는 장흥군계획시설 중 2015년 장흥군 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 등 총 30개 시설에 대해 해제 및 변경을 위하여 장흥 군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광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2. 결정 고시된 장흥 군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및 고시합니다.

2016. 3. 10

장흥군수

1. 장흥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광장)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장흥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광장)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장흥군청 경제정책과(061-860-04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소로	2	155	8	국지도로	447	중로 3-1	소로 3-29	일반 도로		1970.08.03	
폐지	소로	3	65	6	국지도로	490	소로 3-15	-	일반 도로		1970.01.01	
폐지	소로	2	55	8	특수도로	26	대로 3-3	소로 2-59	일반 도로		1970.08.03	
기정	소로	2	59	8	국지도로	487	소로 2-55	소로 2-62	일반 도로		1970.08.03	
변경	소로	2	59	8	국지도로	368	소로 1-18	소로 2-62	일반 도로			연장 축소
폐지	소로	2	69	8	국지도로	339	중로 1-1	소로 2-77	일반 도로		1994.05.13	
폐지	소로	2	77	8	국지도로	42	대로 3-3	소로 2-76	일반 도로		1994.05.13	
폐지	소로	2	76	8	국지도로	630	소로 2-77	소로 2-81	일반 도로		1994.05.13	
폐지	소로	1	19	10	집산도로	390	중로 1-2	소로 1-22	일반 도로		1978.08.10	
폐지	소로	1	20	10	집산도로	300	중로 1-3	소로 1-19	일반 도로		1978.08.10	
폐지	소로	1	21	10	집산도로	215	소로 1-22	중로 3-3	일반 도로		1985.04.12	
폐지	소로	2	11	8	국지도로	119	중로 1-3	소로 2-51	일반 도로		1978.08.10	
폐지	소로	2	26	8	국지도로	227	소로 1-22	중로 3-3	일반 도로		1978.08.10	
폐지	소로	2	31	8	국지도로	225	소로 1-22	중로 3-3	일반 도로		1978.08.10	
폐지	소로	2	36	8	국지도로	178	중로 3-3	소로 3-34	일반 도로		1978.08.10	
폐지	소로	2	51	8	국지도로	150.5	중로 3-3	소로 3-34	일반 도로		1985.04.12	
폐지	소로	1	12	10	집산도로	162	소로 2-34	소로 2-42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34	8	국지도로	310	중로 1-3	소로 1-12	일반 도로		1978.08.10	
폐지	소로	2	42	8	국지도로	262	소로 2-34	소로 1-12	일반 도로		2000.01.01	
폐지	소로	2	39	8	국지도로	87	중로 1-2	소로 1-16	일반 도로		1985.04.12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소로	2	95	8	국지도로	155	중로 3-8	소로 2-93	일반 도로		1996.07.19	
폐지	소로	2	97	8	국지도로	110	중로 3-8	옥당천 373임	일반 도로		1972.08.23	
폐지	소로	2	146	8	국지도로	317	소로 2-141	소로 2-138	일반 도로		1978.05.04	
폐지	소로	2	112	8	국지도로	864	중로 2-2	중로 2-2	일반 도로		1978.12.29	
폐지	소로	2	109	8	국지도로	195	소로 2-112	소로 2-106	일반 도로		1978.05.04	
폐지	소로	2	113	8	국지도로	75	소로 2-111	소로 2-114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123	8	국지도로	310	중로 2-2	중로 3-16	일반 도로		1978.05.04	
폐지	중로	2	137	8	국지도로	132	중로 3-12	소로 2-136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143	8	국지도로	305	중로 3-12	-	일반 도로		1978.05.04	

(나) 도로 결정 사유서

변 경 전 도로 명	변 경 후 도로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55	-	■노선폐지	■향후 도로 정비가 필요하나 연장을 감안할 때 5년 내 개설이 불가능함에 따라 미집행 해소 차원에서 폐지
소로3-65	-	■노선폐지	■정수장 폐지로 개설이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
소로2-55	-	■노선폐지	■하나로마트 단지 내 도로임에 따라 폐지
소로2-59	-	■노선축소 (487m → 368m, 감 119m)	■하나로마트 진입구간 도로이나 이미 대체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음에 따라 연장 축소
소로2-69	-	■노선폐지	■장흥읍 교회 단지 내 도로가 계획되어 개설이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
소로2-77	-	■노선폐지	■시가지에서 장흥대로의 진입도로이나 옆에 대체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폐지
소로2-76	-	■노선폐지	■현재 부동천 정비를 통한 제방길이 개설중이나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폐지함이 바람직함
소로1-19	-	■노선폐지	■하천정비현황 · 언덕 등을 고려하여 폐지 후 재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폐지
소로1-20	-	■노선폐지	■하천정비현황 · 언덕 등을 고려하여 폐지 후 재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폐지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21	-	■노선폐지	■하천정비현황 · 언덕 등을 고려하여 폐지 후 재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폐지
소로2-11	-	■노선폐지	■하천정비현황 · 언덕 등을 고려하여 폐지 후 재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폐지
소로2-26	-	■노선폐지	■하천정비현황 · 언덕 등을 고려하여 폐지 후 재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폐지
소로2-36	-	■노선폐지	■하천정비현황 · 언덕 등을 고려하여 폐지 후 재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폐지
소로2-51	-	■노선폐지	■하천정비현황 · 언덕 등을 고려하여 폐지 후 재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폐지
소로1-12	-	■노선폐지	■미집행 해소 및 건축물 입지 현황 등 주변 개설도로에 따른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검토되어 폐지
소로2-34	-	■노선폐지	■미집행 해소 및 건축물 입지 현황 등 주변 개설도로에 따른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검토되어 폐지
소로2-42	-	■노선폐지	■미집행 해소 및 건축물 입지 현황 등 주변 개설도로에 따른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검토되어 폐지
소로2-39	-	■노선폐지	■미집행 해소 및 주변 현황, 주변 개설도로에 따른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검토되어 폐지
소로2-95	-	■노선폐지	■미집행 해소 및 주변 현황, 주변 개설도로에 따른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검토되어 폐지
소로2-97	-	■노선폐지	■미집행 해소 및 주변 현황, 주변 개설도로에 따른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검토되어 폐지
소로2-146	-	■노선폐지	■미집행 해소 및 주변 현황, 주변 개설도로에 따른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검토되어 폐지
소로2-112	-	■노선폐지	■현재 마을진입로가 협소하여 도로정비가 필요하나 도로 연장 · 예산확보가능성을 고려할 때 5년 내 개설이 불가함에 따라 미집행 해소 차원에서 폐지
소로2-109	-	■노선폐지	■미집행 해소 및 건축물 입지 현황 등 주변 개설도로에 따른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검토되어 폐지
소로2-113	-	■노선폐지	■미집행 해소 및 건축물 입지 현황 등 주변 개설도로에 따른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검토되어 폐지
소로2-123	-	■노선폐지	■미집행 해소 및 건축물 입지 현황 등 주변 개설도로에 따른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검토되어 폐지
소로2-137	-	■노선폐지	■미집행 해소 및 건축물 입지 현황 등 주변 개설도로에 따른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검토되어 폐지
소로2-143	-	■노선폐지	■미집행 해소 및 건축물 입지 현황 등 주변 개설도로에 따른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검토되어 폐지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1,989	증428	2,352		
변경	1	주차장	장흥읍 건산리 703-3일원	1,989	증428	2,352	-	

(나)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주차장 면적 증가 - 증428㎡	■결정된 주차장구역과 지적경계가 상이하여 주차장 경계를 지적 경계에 맞추어 변경

2. 공간시설

(1) 광장

(가)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15,000	감696	14,304		
변경	2	광장	교통광장	장흥읍 평화리 375-2일원	15,000	감696	14,304	1885. 04.12	

(나) 광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광장	■교통광장 일부 폐지 -감696㎡	■교통광장 조성계획 부지로 일부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어 경계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일부 폐지

해남군 고시 제2016-43호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2-27, 소2-26, 소3-13, 소1-50, 소2-2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해남군 읍내리 25-3지 일원에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2-27, 소2-26, 소3-13, 소1-50, 소2-2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 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6항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10

해남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 25-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 명 칭 : 도시계획도로 소2-27, 소2-26, 소3-13, 소1-50, 소2-25호선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사업시행자 : 해남군수
4.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2016. 3. 3.)
 - 준공예정일 : 2016. 12. 31.
5. 사업규모
 - (소로2-27, 소로2-26, 소로3-13, 소로1-50, 소로2-25호선)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시행	소로	2	27	8-10m 미만	국지도로	160	읍내리 26-8	읍내리 12-2	일반 도로	
결정 시행	소로	2	26	8-10m 미만	국지도로	132	성내리 17-15	읍내리 21-1	일반 도로	
결정 시행	소로	3	13	8m 미만	국지도로	116	성내리 16-9	성내리 7-4	일반 도로	
결정 시행	소로	1	50	10-12m 미만	국지도로	66	읍내리 12-2	읍내리 9-1	일반 도로	
결정 시행	소로	2	25	8-10m 미만	국지도로	190	수성리 245-26	읍내리 34-1	일반 도로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2-27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계							
1	읍내리	25-3	대	69	27	최** 외2	
2		26-8	도	68	38	해남군	
3		26-5	대	10	3	최** 외2	
4		25-4	대	46	18	오**	
5		25-5	대	50	13	민**	
6		25-1	대	46	11	김**	
7		24-2	대	155	60	김**	
8		32-1	도	17	17	장**	
9		42-2	대	126	1	박**	
10		27-1	대	88	3	임**	
11		88-1	도	4,975	1,045	국, 국토부	
12		45-6	도	306	11	해남군	
13		24-3	도	43	43	해남군	
14		8-1	도	772	10	해남군	
15		14-1	도	36	36	김** 외1	

○ 토지조서 2-27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16	성내리	20	대	1,173	45	농협은행	
17		17-15	도	267	32	해남군	
18		17-22	대	203	15	대흥새마을금고	
19		18-4	대	192	13	농협은행	
20		17-6	대	159	1	임**	
21		19-4	대	254	23	김**	
22	읍내리	24-1	대	123	26	김**	
23		24-3	도	43	4	해남군	
24		88-1	도	4,975	531	국, 국토부	
25		31-2	대	786	8	정용빌딩	
26		23-6	대	172	12	박* 외1	
27		16-6	대	189	7	명**	
28		16-7	대	208	12	명**	
29		33	대	335	9	장** 외1	
30		22-2	대	99	6	김**	
31		20-2	대	200	2	김**	
32		8-1	도	772	30	해남군	
33		34-1	대	370	15	김**	

○ 토지조서 3-13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34	성내리	5-2	도	2,064	164	해남군	
35		7-19	도	413	356	해남군	
36		53-1	도	6,138	77	국, 국토부	
37		53-13	도	24	22	김**	
38		53-12	잡	98	2	김**	
39		15-30	도	652	253	해남군	
40		16-3	대	149	6	국, 기재부	

○ 토지조서 1-50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41	읍내리	12-2	대	74	12	홍** 외1	
42		8-1	도	772	376	해남군	
43		88-1	도	4,975	224	국, 국토부	
44		11-3	대	17	16	박**	
45		11-7	도	38	38	해남군	
46		10-1	대	17	17	이**	

○ 토지조서 2-25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47	수성리	245-26	도	132	113	국, 국토부	
48	읍내리	8-1	도	772	347	해남군	
49		7-1	도	296	296	해남군	
50		1-7	도	298	11	해남군	
51		16-18	대	3	1	해남군	
52		9-8	대	3	3	해남군	
53		88-1	도	4,975	935	국, 국토부	

무안군 고시 제2016-26호

무안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악주민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공사와 관련한 무안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10

무안군수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칭 : 남악주민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체육시설 : 9,845.3㎡ 중 2,551.4㎡
 - ※ 국토계획법 제87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에 따른 부분 시행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무안군수
 - 주 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체육시설사업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17.2.28.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7. 기타 사항은 무안군청 체육시설사업소(061-450-40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성명	주소	권리 구분	성명	주소
1	삼향읍 남악리	2612	공	9,845.3	2,551.4	무안군				

무안군 공고 제2016-162호

무안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창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무안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10

무안군수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 58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 명칭 : 창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1	409	10	국지도로	33	중로2-403	소로1-409	일반도로

※ 국토계획법 제87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에 따른 부분 시행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무안군수
 - 주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안전총괄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인가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7. 열람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6. 3. 10. ~ 2016. 3. 23. (14일간)
 - 장소 : 무안군청 안전총괄과(061-450-5823)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성명	주소	권리 구분	성명	주소
소 계				1,592	335					
1	망운면 목동리	584-1	답	72	51	장상효	현경면 동산리 850			
2	망운면 목동리	584-2	답	81	66	장상효	현경면 동산리 850			
3	망운면 목동리	677	구	1,324	103	국 (농림축산식 품부)				
4	망운면 목동리	583-18	대	68	68	무안군				
5	망운면 목동리	583-17	대	47	47	무안군				

무안군 공고 제2016-172호

무안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해제 도시계획도로(지방도805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무안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10

무안군수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87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 명칭 : 해제 도시계획도로(지방도805호선) 확포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중로	3	501	12	보조간선도로	241	중로2-501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 국토계획법 제87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에 따른 부분 시행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무안군수
 - 주 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지역개발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인가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7.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6. 3. 10. ~ 2016. 3. 23. (14일간)
 - 장 소 : 무안군청 지역개발과(061-450-5767)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번호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해제	양매	859-1	도	203	153		무안군			
2	해제	양매	863-1	도	13	11		무안군			
3	해제	양매	867-2	도	17	1		국토교통부			
4	해제	양매	873-2	도	555	555		무안군			
5	해제	양매	874-7	도	52	49		무안군			
6	해제	양매	876-3	도	96	69		무안군			
7	해제	양매	876-9	도	49	49		무안군			
8	해제	양매	876-10	도	22	22		무안군			
9	해제	양매	873-7	대	759	44	해제면 양매리 873-7	연립주택			대지권
10	해제	양매	873-8	대	766	39	해제면 양매리 873-8	연립주택			대지권
11	해제	양매	874-4	대	637	9	해제면 양매리 874-4	연립주택			대지권
12	해제	양매	874-5	대	721	37	해제면 양매리 874-5	연립주택			대지권
13	해제	양매	877-2	도	56	2		무안군			
14	해제	양매	858-4	도	122	122	목포시 용당동 955-64	김엽중			
15	해제	양매	858-5	도	43	37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754	김준기			
16	해제	양매	858-7	도	516	165	목포시 용당동 955-64	김엽중			
17	해제	양매	858-12	전	723	2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642	김도중			
18	해제	양매	858-14	답	320	34	무안군 해제면 봉대로 67	박성주	해제면 양매리 1062	해제신협	근저당권
19	해제	양매	859	답	720	8	광주 서구 양동 359-17	조광진			
20	해제	양매	860	답	1,359	3	서울 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71-3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21	해제	양매	864-12	도	23	9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864	이종렬			
22	해제	양매	866-1	대	32	1	무안군 청계면 해안로 603-6	김영진			

번호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3	해제	양매	867-3	대	278	25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274,1112호 (남악 도청프라자)	김영진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869	해제 단위농협	근저당권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869	박상문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166, 204동1201호	김여진	근저당권
24	해제	양매	867-4	임	99	99	무안군 해제면 입수리 302	김항복			
25	해제	양매	867-5	도	30	30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867-1	오화란			
26	해제	양매	867-6	대	159	38	무안군 해제면 867	박상문	서울 구로구 시흥동 514-5	기아산업 주식회사	가압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아세아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	근저당권 2건
27	해제	양매	867-13	도	6	3	무안군 해제면 입수리 302	김항복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869	박상문			
28	해제	양매	873-1	전	1,871	30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산58-1	윤광렬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회	근저당권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873-16	무안축협	근저당권
29	해제	양매	873-4	대	145	33	무안군 해제면 양간로 113	김하석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915-3	해제신협	근저당권
30	해제	양매	873-6	대	53	5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598	윤광렬			
31	해제	양매	873-9	대	144	35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873-9	김미숙			
32	해제	양매	873-12	대	320	65	인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102블럭 1롯데 풍림아이원아파트 823-1102	권덕순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18-1	무안군 산림조합	근저당권

번호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3	해제	양매	873-13	대	29	2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46-31	강명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압류
									무안군	무안군	압류
									해제면 양매리 869	해제단위 농협	근저당권
34	해제	양매	873-14	대	18	18	인천 서구 당하동 310-3 한미빌라 바-101	권덕순			
35	해제	양매	874-1	전	639	3	목포시 용당동 1050-27	김진성			
36	해제	양매	874-2	도	205	205	목포시 용당2동 955번지 160호	김엽중			
37	해제	양매	874-8	도	16	6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 미도맨션 211-702	김소남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11-702	조영자			
							무안읍 성남리 811-6 서리아파트 101동 604호	고정순			

○ 지장물 조서

번호	읍면	리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해제	양매	866-1	단층점포	스라브	151.5	해제면 입수리 302	김항복			
2	해제	양매	867-6	단층점포	스라브	149.4	해제면 양매리 867	박상문	서울 구로구 시흥동 514-5	기아산업 주식회사	가압류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5	아세아 자동차 주식회사	근저당권 2건
3	해제	양매	873-13	점포 및 주택(2층)	슬라브	38.3	서울 광진구 구의동 46-3	강명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국민건강 보험공단	압류
									해제면 양매리 869	해제단위 농협	근저당권
4	해제	양매	873-6	주택	스레트	61.5	해제면 양매리 598	윤광렬			
5	해제	양매	873-12	소매점	칼라강판	189.4	인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102블록 1롯데 풀림아이원아파트 823-1102	권덕순	해제면 덕산리 370	윤준영	전세권
									무안읍 성남리 814-10	무안군 산림조합	근저당권
6	해제	양매	873-4	단층공장 단층주택	스레트	149.9	해제면 양매리 산14	김택중	해제면 양매리 447-1	해제신협	근저당권
							해제면 양매리 598	윤광렬			
7	해제	양매	873-9	점포 및 주택	슬라브	105.7	해제면 양매리 873-9	김미숙			

장성군 고시 제2016-11호

장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장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그 인가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6. 3. 10

장성군수

1. 실시계획인가 고시 요지

사업시행지의 위치	종류	도시계획 시설 명	사업의 명칭	사업규모	사업 시행자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장성읍 영천리	도로	대로3-5	장성역 ~ 청운고가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L=257m B=25m	장성군수 (장성읍 영천로 200)	'16. 3 ~ '17.12.31
장성읍 영천리	도로	중로1-9 중로1-12 소로1-28 소로2-51 소로2-105	주공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L=788m B=8 ~ 20m	장성군수 (장성읍 영천로 200)	'16. 3 ~ '17.12.31
장성읍 단광리	도로	중로1-14	고려시멘트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L=718m B=14 ~ 24m	장성군수 (장성읍 영천로 200)	'16. 3 ~ '17.12.31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다음

3. 실시계획인가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장성군청 경관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 기타사항

⇒ 상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경관도시과(☎061-390-7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조서

○ 공사명 : 장성역~청운고가간 도시계획도로(대로3-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22필지		6,882	2,682							
1	장성	영천	1273-78	대	463	138		장성읍 제봉로 2	오영례				
2	장성	영천	1273-81	전	307	167		회순군 회순읍 신기리 405-3 부영6차아파트603-1108	서한석				
3	장성	영천	1273-279	전	227	192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108-2	심현섭				
4	장성	영천	1273-277	전	187	170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73-277	김광수	장성 축협	영천리 1273-112	근저당	
5	장성	영천	1273-51	대	188	34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73-277	김광수				
6	장성	영천	1273-313	전	159	159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321	김길만				
7	장성	영천	1273-273	전	270	223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73-204	김행자				
8	장성	영천	1273-212	전	50	18		장성군 황룡면 445-5	기억도				
9	장성	영천	1273-283	대	2	2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39	장성농협				
10	장성	영천	1273-62	대	27	27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23	공갑식	장성 농협	영천리 1039	지상권	
11	장성	영천	1273-60	대	572	181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23	공갑식	장성 농협	영천리 1039	지상권	
12	장성	영천	1273-428	대	115	115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12	김행자				
13	장성	영천	1273-45	대	387	92		장성군 장성읍 청운2길 27	김영조				
14	장성	영천	1184-5	대	230	37		고창군 고창읍 노동리 145-3	양묘순				
15	장성	영천	1184-43	대	363	191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184-43	최희문				
16	장성	영천	1184-49	대	279	279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7	장성	영천	1184-41	대	379	197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21-34 ,202동806호 영천휴먼시아	선계광				
18	장성	영천	1184-8	대	1,318	43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184-8	장성군 산림조합				
19	장성	영천	1184-4	대	669	162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478-1	강연임				
20	장성	영천	1184-45	대	113	113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184-8	장성군 산림조합				
21	장성	영천	1472-1	답	392	104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132-9	이계남				
22	장성	영천	1473-17	잡	185	38		장성군 장성읍 청운1길 25	정우성외2 인				

지장물건 조서

○ 공사명 : 장성역~청운고가간 도시계획도로(대로3-5)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단위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15건											
1	장성	영천	1273-81	창고	철재	동	1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405-3 부영아파트 603-1108	서한석						
				담장	블럭조	식	1								
				대문	콘크리트	식	1								
				울타리	철재	m	34								
				입간판	철재	개	1								
2	장성	영천	1273-279	비닐하우스	철재	동	1	장성읍 영천리 1108-2	심현섭						
3	장성	영천	1273-277	주택	시멘트 블럭	m ²	125	장성읍 영천리 1273-277	김광수						
				공장	시멘트 블럭	m ²	143								
				창고	스레트	m ²	32								
				화장실	스레트	m ²	12								
				담장	블럭조	식	1								
				대문	콘크리트	식	1								
4	장성	영천	1273-273	창고	스레트	m ²	6	장성읍 영천리 1273-204	김행자						
5	장성	영천	1273-428	주택	조적조 스라브	m ²	167	장성읍 영천리 1273-204	김행자						
				창고	조적조 스라브	m ²	21								
				대문	조적조 스라브	m ²	2								
				창고	조립식 판넬	m ²	12								
				담장	블럭조	식	1								
				대문	콘크리트	식	1								
6	장성	영천	1184-5	사무실	조적조 스라브	m ²	52	고창군 노동리 145-3	양묘순						
7	장성	영천	1273-78	상가	조립식 판넬	m ²	84	장성읍 제봉로 2	오영례						
				웬스	메쉬웬스	m	15								
8	장성	영천	1273-313	담장	블럭조	식	1	장성읍 영천리 1321	김길만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단위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9	장성	영천	1184-49	출입문	대리석	식	1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자바라	스테인레스	식	1								
				보안등	스테인레스	조	2								
				안내판	스테인레스	조	2								
				화단	대리석	식	1								
				단풍나무	H=25	주	10								
				철쭉	H=25	주	2								
				등근소나무	H=10	주	4								
10	장성	영천	1184-45	창고	철재	동	1		장성읍 영천리 1184-8	장성군 산림조합					
				출입문	조적조	식	1								
				자바라	스테인레스	식	1								
				소나무	H=6.0	주	1								
				등근소나무	H=10	주	1								
				담장	블럭조	식	1								
11	장성	영천	1273-60	웬스	메쉬웬스	m	41		장성읍 역전로 123	공감식					
12	장성	영천	1184-43	입간판	철재	개	1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184-43	최희문					
13	장성	영천	1184-43	창고	철재	동	1		장성읍 문화로 21-34, 202동806호 영천휴먼시아	선계광					
				입간판	철재	개	1								
14	장성	영천	1184-4	비닐하우스	철재	동	1		장성읍 기산리 478-1	강연임					
				입간판	철재	동	1								
				웬스	철재	m	38								
				담장	블럭조	식	1								
15	장성	영천	1473-17	창고	철재	동	1		장성읍 청운1길 25	정우성의2인					

토지 조서

○ 공사명 : 주공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중로1-9, 중로1-1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23필지		42,058	8,605							
1	장성	영천	1455-6	답	2,519	1,928		장성읍 단광리 573	박남조				
2	장성	영천	1455-7	답	383	97		장성읍 영천리 573	박남복				
3	장성	영천	1456-7	답	3,002	91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1304 이룸마을 대방노블랜드 111-2301	김재균				
4	장성	영천	1456-6	답	3,002	1,9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한신아파트 125-1001	김상남				
5	장성	영천	1457-7	답	3,002	1,913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77	김규사				
6	장성	영천	1457-8	답	3,002	109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367	서애순	비아 농협	광주 광산구 장신로 153	근저당 지상권	
7	장성	영천	1458-7	답	1,361	93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35-6	장종삼				
8	장성	영천	1458-16	답	2,058	1,267		장성군 장성읍 내기길 37-11	임미자	장성 농협	장성읍 영천로 183	근저당	
9	장성	영천	1459- 121	답	406	393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59-114	한정임	황룡 농협	장성읍 월평리 128-2	근저당 지상권	
10	장성	영천	1459-4	답	1,787	16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93-1	서승중				
11	장성	영천	1459-8	답	1,891	9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1 만현마을8단지 두산위브아파트 808-1702	김상국	서광주 농협	광주시 서구 광천동 60-7	근저당	
12	장성	영천	1459-69	답	16	1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1 만현마을8단지 두산위브아파트 808-1702	김상국				
13	장성	영천	1457-6	답	3,002	47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08	김영만				
14	장성	영천	1457-5	답	3,002	38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67-19	류종선	장성 농협	장성읍 영천리 1039	근저당 지상권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15	장성	영천	1457-4	답	1,345	16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73-229	김정자	장성 농협	장성읍 영천리 1039	근저당	
16	장성	영천	1457-3	답	1,656	18		장성군 황룡면 뱃나들이로 188-1	박문주	농협 은행	서울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	
17	장성	영천	1457-2	답	1,008	10		장성군 황룡면 뱃나들이로 188-1	박문주				
18	장성	영천	1457-1	답	3,550	31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131	오현석외 2인	황룡 농협	장성읍 월평리 128-2	근저당	
19	장성	영천	1458-25	답	65	58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9포일동)	한국농어 촌공사				
20	장성	영천	158-26	답	549	24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9포일동)	한국농어 촌공사				
21	장성	영천	1458-3	답	757	90		광주 광산구 월계동 755-2 첨단대우아파트 104-503	배효성 외1	장성 농협	장성읍 영천리 1039	근저당	
22	장성	영천	1458-4	답	2,385	99		광주 광산구 월계동 755-2 첨단대우아파트 104-503	배효성 외1	장성 농협	장성읍 영천리 1039	근저당	
23	장성	영천	1458-5	답	2,310	108		광주 북구 중흥동 323-1 모아타운 103-206	권행자 외2	이승석			

지장물건 조서

○ 공사명 : 주공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중로1-9, 중로1-12)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단위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8건										
1	장성	영천	1456-6	비닐하우스		동	4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주공아파트 204동505호	함막래				
				양파		m ²	570							
				딸기		m ²	570							
				배추		m ²	570							
				토마토		m ²	570							
				감나무	10년생	주	2							
2	장성	영천	1459-5	감나무	3년생	주	2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33	장종순				
3	장성	영천	1459-121	석류나무	3년생	주	1		장성읍 영천리 1459-114	한정임				
				무궁화	5년생	주	210							
				매실나무	10년생	주	5							
				대추나무	10년생	주	3							
				장미	3년생	주	5							
				뽕나무	7년생	주	1							
				포도나무	3년생	주	1							
				소나무	20년생	주	103							
				도라지		m ²	124							
				양파		m ²	37							
4	장성	영천	1459-4	황칠나무	3년생	주	280		광주 북구 자미로45 (신안동)1-905호	이덕우				
				매쉬웬스		m	48							
5	장성	영천	1459-89	대추나무	5년생	주	2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39	김택중				
				상수도	16mm	식	1							
6	장성	영천	1459-89	동백나무	3년생	주	5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41	정일청				
				조경석		개	1							
				조경수		주	14							
7	장성	영천	1459-90	컨테이너	3×6m	동	1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41	정일청				
				처마	판넬	m ²	20							
8	장성	영천	1517	소형관정	φ50mm	공	2		장성군 황룡면 뱃나드리로 188-1	박문주				
				뽕나무	10년생	주	18							

토지 조서

○ 공사명 : 고려시멘트 앞 도시계획도로(중로1-1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53필지		14,612	6,476							
1	장성	단광	656-19	도	112	47		장성읍 단광리 578-1	김경례				
2	장성	단광	660-10	도	66	28		서울특별시 중구 도동 1가 3-106	한국도로 공사				
3	장성	단광	661-8	도	39	39		서울특별시 중구 도동 1가 3-106	한국도로 공사				
4	장성	단광	660-11	도	10	4		서울특별시 중구 도동 1가 3-106	한국도로 공사				
5	장성	단광	661-9	도	16	16		서울특별시 중구 도동 1가 3-106	한국도로 공사				
6	장성	단광	660-4	대	331	190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64	홍길석				
7	장성	단광	573	대	893	630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72-1	김용남외4				
8	장성	단광	574-8	대	49	1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327	박광현				
9	장성	단광	574-9	대	123	28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24	유중운				
10	장성	단광	572-3	대	116	58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75	김종선				
11	장성	단광	572-4	대	56	56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72	김정례				
12	장성	단광	572-11	대	46	36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72-6	정정남				
13	장성	단광	572-7	대	99	86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72-6	정정남				
14	장성	단광	572-14	대	103	51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72-8	이예순				
15	장성	단광	571-3	대	193	118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68-1	이상생				
16	장성	단광	570-4	대	209	168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660-4	홍길석				
17	장성	단광	569-3	대	139	46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69-1	삼기동 새마을회				
18	장성	단광	568-2	대	89	89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669	이상생				
19	장성	단광	568-4	대	101	11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68-1	이상생				
20	장성	단광	566-3	대	192	192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42	곽정오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21	장성	단광	527-1	장	112	72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24	고려 시멘트				
22	장성	단광	567-1	대	26	26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836	김순권				
23	장성	단광	566-6	대	45	40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68-1	이상생				
24	장성	단광	566-1	대	134	5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68-1	이상생				
25	장성	단광	562-3	대	314	202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62-3	정재순				
26	장성	단광	562-10	대	66	66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62-3	정재순				
27	장성	단광	562-8	대	298	51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2-1 하남제일파크 102-1211	박규숙				
28	장성	단광	560-6	대	132	6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60-6	이상옥				
29	장성	단광	560-3	대	179	16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2-1 하남제일파크 102-1211	박규숙				
30	장성	단광	560-2	도	36	36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63	영정신우 형문				
31	장성	단광	558-1	대	304	249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58-1	서연실				
32	장성	단광	558-3	대	298	189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232-6 쌍문동	김경배				
33	장성	단광	557-3	대	251	139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24	고려 시멘트				
34	장성	단광	552-1	도	122	1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 공사				
35	장성	단광	553-3	도	425	3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 공사				
36	장성	단광	534-3	장	1,263	39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24	고려 시멘트				
37	장성	단광	534-1	대	63	50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24	고려 시멘트				
38	장성	단광	535-10	도	383	36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 공사				
39	장성	단광	535-7	도	258	25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 공사				
40	장성	단광	535-5	도	871	45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 공사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41	장성	단광	535-9	도	144	1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42	장성	단광	537-5	도	282	1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43	장성	단광	537-2	도	872	64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44	장성	단광	511-5	대	1,327	7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45	장성	단광	537-6	잡	266	15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46	장성	단광	511-6	답	132	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47	장성	단광	511-7	도	17	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48	장성	단광	537-4	도	1,507	55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49	장성	단광	508-2	도	235	10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50	장성	단광	539-1	도	218	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51	장성	단광	508-3	도	493	23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52	장성	단광	482-67	전	145	7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011 운암산 아이파크 109동-803호	김선실				
53	장성	단광	482-4	대	412	35		장성군 장성읍 하서대로 743	(주)도경물산				

지장물건 조서

○ 공사명 : 고려시멘트 앞 도시계획도로(중로1-14)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규 격	단위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5건											
1	장성	단광	656-19	감나무		주	2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78-1	김경례					
				대추나무		주	2								
				동백나무		주	2								
2	장성	단광	660-4	차고	철골조판넬	m ²	72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660-4	홍길석					
				상가	블록합석	m ²	84								
				건물	적벽돌합석	m ²	120								
				화장실	블록스레트	m ²	12								
				비닐하우스		m ²	8								
				감나무		주	3								
				동백나무		주	3								
				철죽		주	1								
				장미		주	1								
				도시가스		식	1								
				출입문		식	2								
3	장성	단광	573	상가	시멘트합석	m ²	116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73	김용질					
				건물	시멘트합석	m ²	75								
				화장실	시멘트합석	m ²	10								
				출입문	철문	식	1								
4	장성	단광	573	건물	목조합석	m ²	54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 162	유숙자					
				창고	블록스레트	m ²	10								
				화장실	블록스레트	m ²	8								
				출입문	철문	식	1								
5	장성	단광	573	건물	목조합석	m ²	120		장성군 장성읍 청운1길 15, 508호 신일아파트	김행순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단위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6	장성	단광	573	건물	블록합석	m ²	40		서울 강서구 화곡동 922-7	김영희					
				건물	블록합석	m ²	32								
				철문		식	1								
				도시가스		식	1								
7	장성	단광	574-8	창고	블록스레트	m ²	8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327	박광현						
				출입문	철문	식	1								
8	장성	단광	574-9	건물	블록합석	m ²	36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24	유종운						
				출입문	철문	식	1								
				도시가스		식	1								
				석류나무		주	1								
				감나무		주	2								
				동백나무		주	2								
				소나무		주	1								
				철용화		주	2								
				백일홍		주	1								
				단풍나무		주	1								
				자귀나무		주	3								
				모과나무		주	1								
				함박꽃나무		주	1								
9	장성	단광	572-4	건물	블록합석	m ²	32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72	김정례						
				건물	블록합석	m ²	10								
				출입문	철문	식	1								
10	장성	단광	572-3	건물	블록합석	m ²	32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75	김종선						
				출입문	철문	식	1								
				감나무		주	1								
11	장성	단광	572-7	차고	철골조판넬	m ²	30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72	김길수						
				창고	블록스레트	m ²	24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단위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관리의 종류및 내용		
12	장성	단광	572-14	건물	판넬합석	m ²	65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72-8	이예순					
				출입문	웬스	식	1								
				장미꽃		주	5								
13	장성	단광	572-3	담장	웬스	m ²	20.4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68-1	이상생					
				출입문	웬스	식	1								
14	장성	단광	570-4	건물	적벽돌합석	m ²	100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660-4	홍길석					
				출입문	알루미늄	식	1								
				도시가스		식	1								
				석류나무		주	1								
				대추나무		주	1								
				배나무		주	1								
				단풍나무		주	2								
15	장성	단광	569-3	백일홍		주	1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69-1	삼기1동마을					
16	장성	단광	568-2	건물	목조합석	m ²	54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68-1	이상생					
17	장성	단광	566-3	건물	목조합석	m ²	48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42	곽정오					
				건물	목조합석	m ²	40								
				화장실	블록스레트	m ²	8								
				대추나무		주	1								
				동백나무		주	1								
				무화과		주	1								
				블루베리		주	11								
				오기피		주	1								
				도시가스		식	1								
				cctv		개소	1								
				출입문	철재	식	1								
18	장성	단광	566-6	건물	블록스레트	m ²	24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68-1	이상생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단위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19	장성	단광	566-2	건물	목조합석	m ²	60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65	유성춘	장성 교육구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33	가압류	
			대추나무		주	1								
			cctv		개소	1								
20	장성	단광	562-3	건물	블록스레트	m ²	44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62-3	정재순				
			건물	블록스레트	m ²	4								
			cctv		개소	1								
21	장성	단광	560-3	건물	블록스레트	m ²	73		광주 남구 백운동46-1 현대아파트 103동1003호	차경림				
			건물	블록스레트	m ²	4								
			출입문	철재	식	1								
22	장성	단광	560-6	건물	블록합석	주	27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60-6	이상옥				
23	장성	단광	558-1	건물	블록합석	m ²	36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63	이옥송				
			건물	블록스레브	m ²	55								
			비닐하우스		m ²	12								
			석류나무		주	1								
			자두나무		주	1								
			감나무		주	1								
			블루베리		주	4								
			오가피		주	3								
			난		주	15								
			철재		주	1								
			출입문	철재	식	1								
24	장성	단광	558-3	건물	목조합석	m ²	56		서울 도봉구 노해로 232-6	김경배				
			출입문	철재	식	1								
			모과나무		주	1								
			매화나무		주	1								
			감나무		주	2								
			밤나무		주	1								
			탱자나무		주	1								
			단풍나무		주	2								

완도군 고시 제2016-13호

군내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전라남도 고시 제2015-369호(2015.12.1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완도군 공고 제 2016-76호(2016.2.18)로 사업시행 계획(안) 및 실시계획 인가(안)을 주민공람 공고한 군내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의한 사업 시행계획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관계도서는 완도군 지역개발과(550-56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3. 10

완도군수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사업의 명칭

- 종 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명 칭 : 군내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완도읍 군내리 650-1 일원
- 면 적 : 86,446㎡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완도군수
- 주 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16.3.(시행인가일) ~ 2018.12.31

마.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2016. 2. 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다음

사.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주거용지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제2종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단, 불허용도 제외)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주거용지	용도	불허용도	•공장, 발전시설, 공동주택(아파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15m 이하
		층수		•제2종일반주거지역 : 4층 이하

아. 법 제65조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시설명	폭원	도로연장	소공원/ 주차장 면적	비고
소로(국)1-2호선	B=8.0m(6.0m)	L=95.5m		
소로(국)2-2호선	B=8.0m(6.0m)	L=225.6m		
소로(국)3-5호선	B=6.0m(4.0m)	L=306.5m	A=1,754.0㎡	소공원(20) 주차장(26,27)
소로(특)3-42호선	B=4.0m(2.0m)	L=153.6m	A=978.1㎡	경관녹지(9) 주차장(23)
소로(특)3-43호선	B=4.0m(2.0m)	L=129.7m		
소로(특)3-45호선	B=4.0m(2.0m)	L=171.1m	A=195.6㎡	주차장(2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전용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구/읍/면	동/리					주소	성명	
소로(국) 완1-2										
1	완도	완도	군내	736-5	대	83.0	4.0	736-5	대한상이군경회 완도군분회 외 2인	
2	완도	완도	군내	736-4	대	139.0	1.0	650-1	완도군	
3	완도	완도	군내	1202	도	2,068.0	100.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부	
4	완도	완도	군내	736-6	대	106.0	106.0	서울 서초구 우면동 225-19	완도군외 1인	
5	완도	완도	군내	1202-5	대	18.0	18.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6-1	기획 재정부	
6	완도	완도	군내	750-1	도	43.0	43.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 교통부	
7	완도	완도	군내	1202-6	대	88.0	85.0	650-1	완도군	
8	완도	완도	군내	759-1	도	46.0	46.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 교통부	
9	완도	완도	군내	1202-7	대	107.0	100.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6-1	기획 재정부	
10	완도	완도	군내	1176	구	385.0	45.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부	
11	완도	완도	군내	762-2	도	334.0	1.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20-5	지식 경제부	
12	완도	완도	군내	761-1	도	23.0	23.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 교통부	
13	완도	완도	군내	761-2	대	36.0	34.0	명고옥시중구로 옥정 53	영목장	
14	완도	완도	군내	1174	도	14,186.0	101.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부	
15	완도	완도	군내	1202-4	대	57.0	1.0	650-1	완도군	
16	완도	완도	군내	738-3	대	43.0	21.0	650-1	완도군	
17	완도	완도	군내	738-1	도	73.0	64.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 교통부	
18	완도	완도	군내	749-2	대	157.0	11.0	650-1	완도군	
19	완도	완도	군내	1202-17	대	6.0	5.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6-1	재정 경제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전용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구/읍/면	동/리					주소	성명	
20	완도	완도	군내	750-3	대	193.0	7.0	750	지광성	
21	완도	완도	군내	750-2	대	83.0	6.0	서울시 중랑구 상봉로 89-7(면목동)	정명자	
22	완도	완도	군내	750-5	대	26.0	6.0	729-4	정현식	
23	완도	완도	군내	1202-9	도	413.0	4.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부	
24	완도	완도	군내	757	대	569.0	25.0	726	최민임	
25	완도	완도	군내	760	대	417.0	7.0	760	황선아	
26	완도	완도	군내	1202-16	도	1,323.0	20.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부	
27	완도	완도	군내	1176-2	구	190.0	13.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부	
소로(국) 완2-2										
1	완도	완도	군내	738-3	대	43.0	15.0	650-1	완도군	
2	완도	완도	군내	738-1	도	73.0	9.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 교통부	
3	완도	완도	군내	749-2	대	157.0	19.0	650-1	완도군	
4	완도	완도	군내	748-1	도	11.0	2.0	전라남도 순천시 인제동 126-1	이시학	
5	완도	완도	군내	747-1	대	152.0	31.0	747-1	김청자	
6	완도	완도	군내	745	대	225.0	56.0	광주 광산구 신가동 926-7 다가구주택 101	조용숙 외 1인	
7	완도	완도	군내	649-1	대	307.0	19.0	649-1	박광자	
8	완도	완도	군내	647	대	430.0	38.0	647	김덕원 외 1인	
9	완도	완도	군내	646	전	179.0	4.0	1088-9	문장울	
10	완도	완도	군내	645-2	대	430.0	14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	경찰청	
11	완도	완도	군내	643-4	대	277.0	5.0	650-1	완도군	
12	완도	완도	군내	641-6	대	102.0	3.0	부산 수영구 광일로 19-7(광안동)	박미희	
13	완도	완도	군내	641-2	대	198.0	12.0	완도읍 장보고대로 44	오재철	
14	완도	완도	군내	631-5	대	126.0	3.0	광주 광산구 운남동 387-22 삼성@ 118-1503	박애정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전용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구/읍/면	동/리					주소	성명	
15	완도	완도	군내	631-2	대	131.0	8.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본오3동 1112-38 202호	김복도	
16	완도	완도	군내	631-3	대	99.0	8.0	800	정정순	
17	완도	완도	군내	633-1	대	122.0	1.0	1157 동아하이빌@ 101-407	오은엽	
18	완도	완도	군내	1202-4	대	57.0	14.0	650-1	완도군	
19	완도	완도	군내	1202	도	2068.0	945.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부	
20	완도	완도	군내	650-1	대	9053.0	210.0	650-1	완도군	
21	완도	완도	군내	662	대	649.0	12.0	650-1	완도군	
22	완도	완도	군내	662-1	도	62.0	4.0	650-1	완도군	
23	완도	완도	군내	641-7	대	119.0	20.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43	농림 수산부	
24	완도	완도	군내	630	대	220.0	33.0	611	김대두	
25	완도	완도	군내	629-2	대	433.0	19.0	629-2	김정례	
26	완도	완도	군내	629-1	대	179.0	69.0	보길면정자리 387-1	김필승	
27	완도	완도	군내	621-1	대	165.0	52.0	부산 동래구 명륜로 103번길 6, 901호 (명륜동, 위너비타)	김용현	
28	완도	완도	군내	620-3	대	205.0	40.0	광주 동구 남문로 754번길 16-1(학동)	서육엽	
소료(국) 원3-5 (주차장26,27 소공원20 포함)										
1	완도	완도	군내	674	도	64.0	6.0	726-1	신복길	
2	완도	완도	군내	708	대	168.0	42.0	완도읍 가용리 18-1 무등@ 102동 401호	오병수	
3	완도	완도	군내	707	대	152.0	42.0	702	김점애	
4	완도	완도	군내	706	대	291.0	65.0	706	최정식	
5	완도	완도	군내	1177	도	4483.0	97.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부	
6	완도	완도	군내	702	대	450.0	70.0	702	김정자	
7	완도	완도	군내	701	대	179.0	83.0	인천 남동구 만수동 950-5 만수다세대주택 마-302	추창호	
8	완도	완도	군내	698-1	대	255.0	40.0	광주 북구 일곡동 816-3동아@ 103-304	박지송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전용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구/읍/면	동/리					주소	성명	
9	완도	완도	군내	855	임	31822.0	133.0	650-1	완도군	
10	완도	완도	군내	698-3	대	122.0	16.0	광주 북구 일곡동 816-3동아@ 103-304	박지송	
11	완도	완도	군내	515-1	도	398.0	65.0	650-1	완도군	
12	완도	완도	군내	515-3	전	235.0	3.0	650-1	완도군	
13	완도	완도	군내	515	전	1183.0	8.0	689	최수임	
14	완도	완도	군내	515-2	도	19.0	19.0	650-1	완도군	
15	완도	완도	군내	503-3	대	215.0	105.0	650-1	완도군	
16	완도	완도	군내	503-6	대	69.0	12.0	504-3	김동문	
17	완도	완도	군내	503-5	대	50.0	4.0	504-6	김철홍	
18	완도	완도	군내	503-1	대	195.0	16.0	503-1	이무신 외 1인	
19	완도	완도	군내	502-1	전	1620.0	1392.0	650-1	완도군	
20	완도	완도	군내	503-2	대	126.0	1.0	군산시 장미동 41-1	심순옥 외 5인	
21	완도	완도	군내	502-3	전	86.0	1.0	522	최득수	
22	완도	완도	군내	499-1	대	168.0	15.0	504-4	김계호	
23	완도	완도	군내	492-1	대	80.0	24.0	492-1	심해자	
24	완도	완도	군내	502-2	전	159.0	24.0	완도읍 청해진남로78번길12	천현비	
25	완도	완도	군내	492-16	전	17.0	4.0	650-1	완도군	
26	완도	완도	군내	492-17	전	122.0	39.0	650-1	완도군	
27	완도	완도	군내	492-3	전	324.0	176.0	650-1	완도군	
28	완도	완도	군내	492-18	전	61.0	2.0	650-1	완도군	
29	완도	완도	군내	492-13	전	100.0	100.0	완도읍 청해진남로 78번길 9	강승일	
30	완도	완도	군내	492-12	대	372.0	11.0	492-12	양배수	
31	완도	완도	군내	492-4	구	122.0	111.0	650-1	완도군	
32	완도	완도	군내	492-15	수	15.0	15.0	650-1	완도군	
33	완도	완도	군내	943	학	25440.0	8.0	무안군 상향읍 남악리 1467	전라남도(교육감)	
34	완도	완도	군내	492-19	대	197.0	5.0	492-19	당산리경로당	
35	완도	완도	군내	492-2	수	484.0	484.0	650-1	완도군	
36	완도	완도	군내	492-14	전	83.0	3.0	713	천성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전용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구/읍/면	동/리					주소	성명	
37	완도	완도	군내	492-8	수	7.0	7.0	650-1	완도군	
38	완도	완도	군내	488-1	전	132.0	5.0	650-1	완도군	
39	완도	완도	군내	492-22	전	132.0	116.0	650-1	완도군	
40	완도	완도	군내	492-20	전	158.0	36.0	650-1	완도군	
41	완도	완도	군내	1180	구	116.0	22.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부	
42	완도	완도	군내	501-4	대	106.0	5.0	완도읍 군내리 713	박영남	
43	완도	완도	군내	501-14	도	47.0	47.0	650-1	완도군	
44	완도	완도	군내	501-3	전	224.0	39.0	501-3	박순례	
45	완도	완도	군내	1178-2	도	600.0	120.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부	
46	완도	완도	군내	501-2	도	36.0	3.0	501-3	박순례	
47	완도	완도	군내	535-1	도	50.0	4.0	535	오금동	
48	완도	완도	군내	534-1	대	40.0	22.0	650-1	완도군	
49	완도	완도	군내	533-1	도	410.0	7.0	650-1	완도군	
50	완도	완도	군내	534-3	도	10.0	9.0	694	김정임	
51	완도	완도	군내	501-12	대	198.0	17.0	501-12	박용배	
52	완도	완도	군내	501-1	답	109.0	54.0	531	유창원	
53	완도	완도	군내	1176-4	구	3444.0	55.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부	
54	완도	완도	군내	676	대	172.0	6.0	715	강선수	
55	완도	완도	군내	675	대	284.0	8.0	660	김순란	
56	완도	완도	군내	1202	도	2068.0	77.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부	
소로(특) 원3-42(주차장23,경관녹지9 포함)										
1	완도	완도	군내	655-3	도	74.0	27.0	650-1	완도군	
2	완도	완도	군내	671-1	대	132.0	69.0	671-1	이동임	
3	완도	완도	군내	655-1	대	101.0	101.0	650-1	완도군	
4	완도	완도	군내	656-1	대	266.0	266.0	656-1	최동석	
5	완도	완도	군내	671-2	대	228.0	173.0	672-2	곽미자	
6	완도	완도	군내	656-4	대	68.0	68.0	59-7	박월배 외 2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전용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구/읍/면	동/리					주소	성명	
7	완도	완도	군내	654-2	대	63.0	63.0	650-1	완도군	
8	완도	완도	군내	671-3	대	40.0	3.0	완도읍 청해진남로 59번길 3	서장수	
9	완도	완도	군내	654-3	대	203.0	203.0	650-1	완도군	
10	완도	완도	군내	668-1	대	19.0	19.0	부산 영도구 청학동 58-11	한경자	
11	완도	완도	군내	657-1	대	221.0	221.0	657	강민홍	
12	완도	완도	군내	657-2	대	172.0	172.0	657-2	김병연	
13	완도	완도	군내	663-2	대	172.0	112.0	690	이수연	
14	완도	완도	군내	662-1	도	62.0	4.0	650-1	완도군	
15	완도	완도	군내	672-1	도	10.0	10.0	609	박덕술	
16	완도	완도	군내	1202	도	2068.0	198.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부	
17	완도	완도	군내	671-4	도	17.0	17.0	650-1	완도군	
18	완도	완도	군내	670	대	397.0	35.0	완도읍 청해진남로 59번길 3	서장수	
19	완도	완도	군내	609	대	192.0	14.0	인천 계양구 작전동 915-1 까치마을 태화@ 604동 1101호	유화영	
20	완도	완도	군내	610-2	대	165.0	17.0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2-1 관악드림타운 147-2116	박정자	
21	완도	완도	군내	610-1	대	536.0	2.0	610	고영호	
22	완도	완도	군내	669-2	대	155.0	41.0	669	이수미	
23	완도	완도	군내	669-1	대	304.0	20.0	669	이수미	
24	완도	완도	군내	666	대	195.0	13.0	611	김남식	
25	완도	완도	군내	625	대	307.0	9.0	625	조정웅	
26	완도	완도	군내	626	대	188.0	2.0	광주 남구 백운1동 461-1 목우@ 309	한동선	
27	완도	완도	군내	665	대	245.0	42.0	665	김양순	
28	완도	완도	군내	626-1	대	119.0	5.0	248-2	이종선	
29	완도	완도	군내	663-5	대	90.0	27.0	304-11	조희선	
30	완도	완도	군내	627-1	대	229.0	1.0	627-1	박정남	
31	완도	완도	군내	663-3	대	145.0	9.0	365	허경자	
32	완도	완도	군내	630	대	220.0	5.0	611	김대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전용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구/읍/면	동/리					주소	성명	
소로(특) 완3-43										
1	완도	완도	군내	1179	도	69.0	32.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부	
2	완도	완도	군내	699-1	대	169.0	1.0	699-1	한옥희	
3	완도	완도	군내	699-2	대	228.0	3.0	699-2	장일익	
4	완도	완도	군내	681	대	228.0	38.0	1393	홍정례	
5	완도	완도	군내	1177	도	4483.0	42.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부	
6	완도	완도	군내	691-1	대	26.0	8.0	515-3	김용원	
7	완도	완도	군내	691-2	대	36.0	9.0	691	박기하	
8	완도	완도	군내	690	대	175.0	4.0	경기 수원 장안구 파장동 430-3 대주연립 나-102	추군민	
9	완도	완도	군내	1176-4	구	3444.0	380.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건설부	
소로(특) 완3-45(주차장28 포함)										
	완도	완도	군내	639-1	대	238.0	87.0	고금면 상정리 154	유광운	
	완도	완도	군내	380	전	545.0	29.0	644	조초동	
	완도	완도	군내	644-1	대	261.0	28.0	644-2	조안근	
	완도	완도	군내	산163-6	임	6074.0	162.0	163-1	서연심 외 2인	
	완도	완도	군내	377-1	대	428.0	93.0	382-3	이완수 외 1인	
	완도	완도	군내	377-3	도	32.0	21.0	382-3	이완수 외 1인	
	완도	완도	군내	648-2	전	112.0	26.0	734	김옥연 외 2인	
	완도	완도	군내	376-1	전	96.0	96.0	376-1	곽갑홍	
	완도	완도	군내	375-5	대	390.0	14.0	완도읍 청해진남로 35번길 20	김남수	
	완도	완도	군내	375-2	대	251.0	10.0	782-61	이순자	
	완도	완도	군내	376	전	396.0	20.0	부산 북 금곡동 71-1-102	박철현	
	완도	완도	군내	372-2	대	609.0	281.0	완도읍 청해진남로 35번길 20-2	이동훈	